ISSN 1739-5593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5년 제3호

국제협력동향

KOICA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3호

한국국제협력단

목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Ⅰ. 논단

1. 개발조사와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교 및 개선과제 ····· 11
신의철 _ 한국국제협력단 개발사업1부장

2.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감소효과와 시사점 ····· 24
정우용 _ 한국국제협력단 조달팀장

Ⅱ. 개발협력동향

1. OECD/DAC 및 국제기구 원조 동향
- UNESCAP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추진현황 ····· 35
- 제14차 남남협력 고위급회의 결과보고 ····· 38
- 제2차 G77+중국 정상회의 개최결과 ····· 42
- 개발재원 고위급대화 ····· 46
-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 국제감사 ····· 49

2. 공여국 원조 동향

1) 선진국 개발원조 개관
- 미국 ····· 53
- 네덜란드 ····· 72

2) 공여국 원조 동향
- 스웨덴 ODA 정책 ····· 89
- 뉴질랜드 ODA 예산확대 계획 ····· 92
- 對필리핀 EU의 원조동향 ····· 93
- 對페루 USAID 협력사업 현황 ····· 95
- 對페루 JICA 협력사업 현황 ····· 98

3. 수원국 원조동향
- 과테말라에 대한 대외원조 현황 ····· 101
- 방글라데시 원조수원액 감소 및 Good Governance 부각 ····· 103
- 필리핀 개발포럼 후속회의 결과 ····· 105
-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 원탁회의 결과 ····· 108
- 베트남 중간년도 원조공여국회의 결과보고 ····· 110
- 스리랑카 개발포럼(원조공여국회의) 2005 결과보고 ····· 113

Ⅲ. 기타

1. 지역연구 ····· 121
- 스리랑카 원조동향 소개 **정영선** _ 지원사업 3팀 직원

2. 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소개 ····· 129
- UNHCR **박재현** _ 전 UNHCR 스리랑카 난민보호팀장

3. 개발NGO 소개 ····· 136
- 굿네이버스 **안승진** _ 굿네이버스 국제협력부장

I. 논단

개발조사와 프로젝트형사업의 비교 및 개선과제

신 의 철 / 개발사업 1부장

서 언

KOICA의 국제협력업무와 관계있는 사람들은 개발조사와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유래나 개념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기회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사업의 유래와 개념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협력단이 개발사업추진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 및 결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이 협력단 직원 외에도 협력단의 개발조사와 프로젝트형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Ⅰ.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의 유래

우리나라 개발조사의 법적근거는 1980년 제정된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제4항 1호의 해외 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기술용역의 제공이라는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발조사는 건설부가 실시해온 무상건설기술용역 제공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즉 건설부에서 해외기술용역진출을 확대하고 후속공사의 수주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국산기자재 수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건설기술 용역제공사업을 추진한 것이 우리나라 개발조사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협력단 설립이전에는 이렇게 건설부에서 무상건설기술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외무부, 과기처, 체신부, 경제기획원에서 개발조사라는 이름으로 무상기술용역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었다. 1991년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창립되어 여러 부처의 무상원조사업을 통합 추진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법에는 무상건설기술용역의 제공과 개발조사의 지원이 동시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동법에서 무상기술용역은 개발조사와 다름이 없으므로 2001년 무상기술용역이란 용어

가 삭제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프로젝트형 사업은 1978년 네팔에 잠업시험연구소 지원을 시작으로 주로 농업, 수산업, 직업훈련분야에서 농림부, 과기처 등 타부처에서 추진하여 왔다. 한국국제협력단 창립 초창기인 1991년에는 프로젝트형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기자재 공여와 같은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하기보다는 각종 협력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젝트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협력단은 1992년부터 프로젝트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1992년 4건의 사업을 착수한 이래, 매년 사업을 확대하여 2004년에는 34건의 신규사업을 착수한 바 있다.

Ⅱ.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의 정의

1. 개발조사의 정의

과거에는 개발조사의 정의를 건설 쪽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조사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 및 계획에 대해 조사단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종합개발계획,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 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개발조사의 정의가 확대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제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주는 등 기술 또는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연구용역이란 용어가 추가된 것은 개발조사가 건설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개발조사사업 분야별 추진사례

- 도로건설 : 베트남 N-18국도 개량타당성조사 ('93-'94)
- 자원개발 : 중국 복건성 광물자원개발조사 ('94-'97)
- 에너지 : 필리핀 바탄/말라야 가스터빈발전소 복합화력전환사업 ('93-'94)
- 환경 : 요르단 폐수처리 확장 타당성조사('95-'96)
- 연구사업 : 인니 석탄성형기술개발사업 ('95-'98)

〈개발조사사업 분야별 실적('91~'04)〉

구분	합계	운송	에너지	수자원	농림수산	공업	광물자원	환경보호	도시개발	기타
건수	62	12	10	7	2	3	13	2	6	7
비율	100%	20%	16%	11%	3%	5%	21%	3%	10%	11%

2. 프로젝트형 사업의 정의

한국국제협력단법에는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프로젝트란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쓰이므로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연수생초청이나 전문가파견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기 때문이다. 협력단에서 정의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은 한마디로 목표달성을 위

한 복합적 행위의 추진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에서 프로젝트형 사업의 정의는 '개도국의 경제 · 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물자 · 자금 및 시설의 지원 등 물적협력수단과 연수생의 초청 · 전문인력의 파견 등 인적협력수단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하드웨어(건축, 기자재공여)와 소프트웨어(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컨설팅)적 요소를 패키지화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이 프로젝트사업 위주로 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 설립초기까지 기자재공여나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등의 사업이 상호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은 프로젝트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1992년 4건의 프로젝트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4년 현재는 5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협력단 전체 사업비의 29%를 점하고 있다.

□ 프로젝트형 사업 분야별 추진사례

- 직업훈련 : 베트남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 ('97-'01)
- 의료보건 : 한비친선병원 건립사업('99-'01)
- 공공행정 :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01-'03)
- IT : 이집트 공산품 품질관리시스템구축사업 ('01-'04)
- 환경 : 중국 황사 공동관측망 구축사업('03-'05)

〈프로젝트 분야별 실적('91~'04)〉

구분	합계	교육	직업훈련	보건	식수공급	공공행정	경제개발	기타 사회 인프라	IT	농림수산	기타
건수	223	23	38	43	4	8	6	14	38	39	10
비율	100%	10%	17%	19%	2%	4%	3%	6%	17%	17%	5%

3. 개발조사와 프로젝트형 사업의 개념 비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발조사와 프로젝트형 사업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지만 개발조사는 소프트웨어(컨설팅) 위주의 지원이며, 프로젝트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컨설팅)를 결합하여 지원하되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 오류

과거 협력단 설립이전에는 개발조사를 건설부에서 주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조사는 건설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아국업체가 후속공사를 수주해야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있는 반면, 프로젝트형 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조사도 그 사업자체로서 수원국에 컨설팅 형태로 지원하여 수원국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 가능한 사업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건설부에서 무상건설기술용역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를 생각하고 개발조사사업이 우리 기업의 EDCF 연계로서 해외건설수주가 안되면 효과가 없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류라 할 수 있다.

협력단의 개발조사가 EDCF와 연계된 사례를 보면 1991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완료된 개발조사사업 54건 중 EDCF 연계사업은 5건이며, 현재 5건의 사업에 대해 수원국이 EDCF를 이미 신청하였거나 신청 준비중으로 전망되므로 전체 54건 중 18%(10건)가 연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외에 필리핀 바탄말라야 발전소사업은 우리기업이 EDCF 연계가 아니라 수원국이 자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개발조사사업의 결과를 수원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위해 자체 활용하는 등 사업효과는 컸다고 볼 수 있다.

개발조사사업은 후속공사를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컨설팅 제공을 통한 수원국 발전 지원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수원국 정부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EDCF 연계율만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업의 잠재적인 영향력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오류로 개발조사와 프로젝트형 사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프로젝트형 사업이라고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베트남 산업오염방지기술지원사업('03-'05),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능력배양사업('04-'05), 미얀마 정보통신개발 마스터플랜수립사업('04-'05)은 모두 컨설팅 위주의 사업으로서 개발조사로 분류되어야 한다.

〈개발조사와 아국업체 해외진출 연계 사례〉

구 분	사 업 명	비 고
EDCF 연계 (5건)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 설계('93-'94/730천불) 베트남 N-18국도 개량 타당성조사('93-'94/558천불) 요르단 폐수처리장 확장 타당성조사 사업('95-'96/974천불) 캄보디아 캄포트-트라팡로포간 도로 개보수 실시설계 ('01-'02/574천불) 예멘 통신망현대화사업('99-'00/197천불)	현대엔지니어링이 시행, EDCF : 15백만불 (주)대우가 시행, EDCF : 24백만불 코오롱건설, 삼성물산 공동시행, EDCF : 9백만불 '03.2.4 차관계약체결(1,700만불) 예멘 정부 EDCF 신청, EDCF 지원 확정
EDCF 기신청 또는 신청준비중 (5건)	네팔 칸티국도 개량 타당성조사('98-'99/580천불)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 설계('00-'01/663천불) 라오스 타드살렌 소수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96-'97/183천불) 캄보디아 크랑폰리강유역 다목적 수자원개발 타당성조사 ('04-'05/740천불) 인니 마나도 우회도로건설 2단계 타당성조사및 실시설계 ('04-'05/500천불) ※ 사업 진행중인 사업임.	네팔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네팔 정부 EDCF 기신청('02) 라오스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캄보디아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인니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아국기업 관련공사 수주 (1건)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타당성조사 ('93-'94/374천불)	필리핀 발주 전력사업 3건 직접수주 효과 공사비 : 10.8억불

Ⅳ.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종합 비교

개발조사와 프로젝트형 사업은 개념 및 사업추진 절차가 유사하나 지원형태와 사후관리의 용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Ⅴ.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 규모 변화 추이

한국국제협력단 사업비는 1991년 2,280만불에서 2004년 1억 7,770만불로 약 8배 증가하였다. 최초로 프로젝트형 사업이 시작되던 1992년 프로젝트형 사업예산은 67만불이었으며 2004년에는 5천만불에 달해 7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사업비의 29%를 점유하여 협력단에서 프로젝트형 사업을 가장 중요한 협력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발조사는 1992년 120만불에서 2004년 370만불로 불과 3배 증가하였으며, 1992년 전체 사업비중 4%에서 2004년 2% 점유로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는 개발조사사업의 가시적 기대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공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불충분 및 사업발굴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종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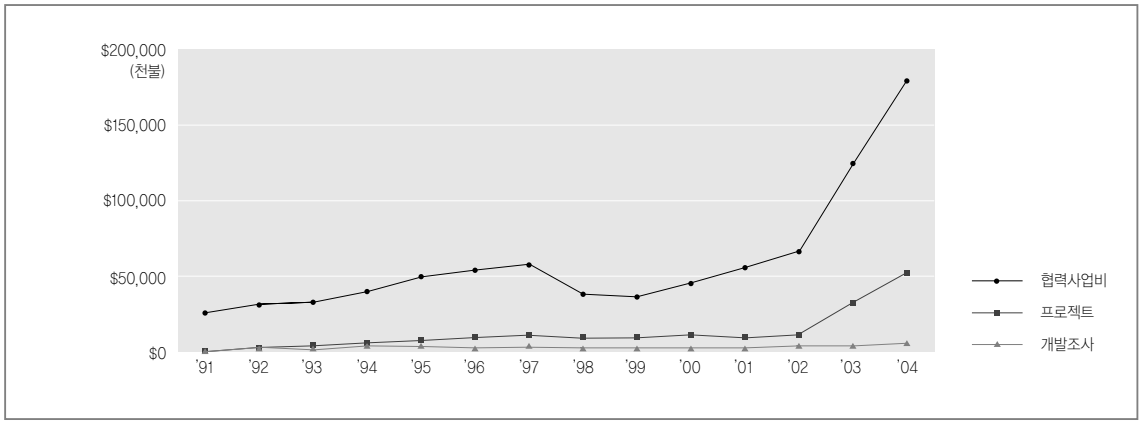
구 분	개발조사	프로젝트형 사업
지원형태	컨설팅 위주의 지원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
추진절차	사전조사 – 실시협의 – 용역업체선정 – 사업실시	개발조사와 동일
성과	연수생초청훈련, On the Job Training, 영문결과보고서	건축물, 장비 등 하드웨어
장단점	수원국 능력배양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사업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음	사업효과가 가시적이며 사업종료시 홍보효과가 큼
사후관리	성과품이 소프트웨어이므로 사후관리업무량이 거의 없음	건축물 및 장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연도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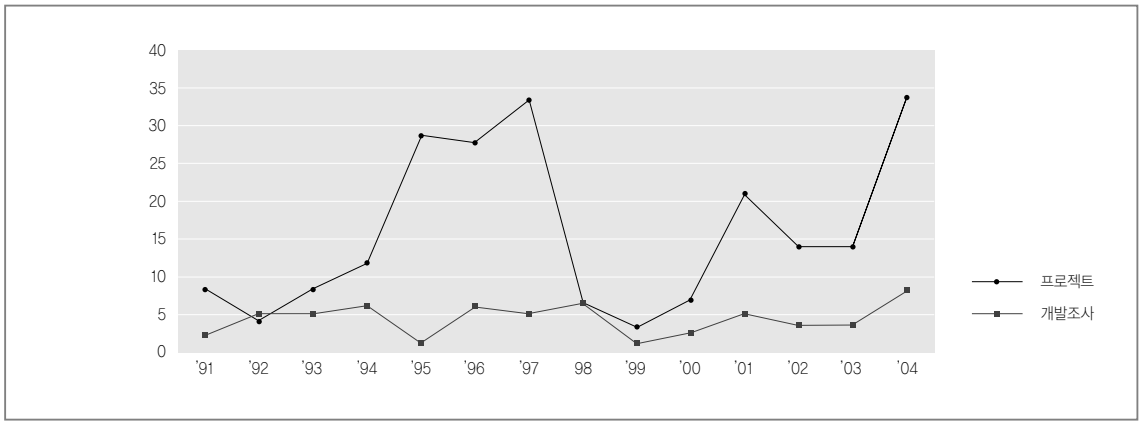
구분			합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협력사업비 (A)			819,005	22,840	29,386	30,448	38,295	49,228	53,741	55,473	38,442	37,930	45,353	54,010	62,070	124,089	177,700
프로젝트	건수	전체	–	8	6	13	21	43	57	70	54	27	20	33	36	41	52
		신규	223	8	4	8	12	29	28	34	7	3	7	21	14	14	34
	예산 (천불) (B)		191,867	784	673	3,112	6,030	10,040	11,740	14,445	11,799	11,389	14,540	10,565	12,653	33,100	50,997
	점유율 (B/A)		23%	3%	2%	10%	16%	20%	22%	26%	31%	30%	32%	20%	20%	27%	29%
개발조사	건수	전체	–	2	7	13	16	12	12	12	15	10	8	9	10	7	13
		신규	62	2	5	5	6	1	6	5	7	1	3	5	4	4	8
	예산 (천불) (C)		32,892	46	1,255	2,607	3,624	3,138	1,566	3,128	1,837	1,727	1,847	1,857	3,196	3,276	3,788
	점유율 (C/A)		4%	0%	4%	9%	9%	6%	3%	6%	5%	5%	4%	3%	5%	3%	2%

※ '91년도 실적 8건은 타 부처에서 실시한 사업임.
※ 프로젝트 신규사업 건수 중 이라크 · 아프간 사업은 '02년 2건, '03년 3건, '04년 5건임.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연도별 실적('91~'04 예산) 변동〉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연도별 실적(건수) 변동〉



Ⅵ. 업무추진 능력개선 사례

1. Outsourcing 확대

1) CM제도 도입

KOICA의 프로젝트형 사업에는 현지건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다. KOICA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건축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사전조사, 실시협의, 입찰,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단은 학교나 병원 등 건축프로젝트에 대한 수요요청서를 수원국으로부터 접수하면 수요요청서에 있는 대로 사업비를 반영하고 건축전문가와 함께 기초자료 수집 및 수원국과의 사업계획 협의를 위해 현지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사전조사시 건축전문가(주로 설계전문가)와 길어야 1주일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건축단가를 조사하고 건물의 규모를 정하게 된다. 사전조사 때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수원국과의 실시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내에서 건물의 규모, 기자재 제공 범위,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의 규모를 ROD(Record of Discussion)체결을 통하여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축비가 맞지 않아 유찰되면서 결국 건축비를 인상하거나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사전조사시 건축규모와 단가를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또한 건축전문가와 협력단 직원은 가장 저렴한 단가를 기준으로 건축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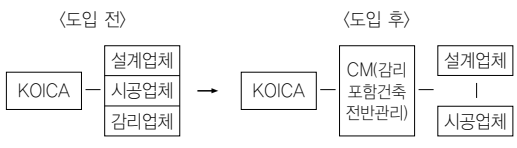
시공과정에서도 통상 감리를 고용하지만 감리의 역할은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만 체크할 뿐 문제발생시 스스로 해결하거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병원건축의 경우에는 병원설비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하며, 수원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및 설계부터 시공을 염두에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건축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건축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협력단으로서는 건축관리용역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단은 공기관으로서 최초로 2003년부터 건축업무에 CM(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CM제도 도입을 두고 혹자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CM제도를 도입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감리비용이 CM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려만큼 비용이 상승되지 않으며, 공사기간의 단축, 예기치 않은 건축비용 상승요인 예방 등을 고려하면 비용측면에서도 오히려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M을 활용한 사례를 보면, 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인도네시아 스포츠센타 건립사업, 필리핀 IT 훈련원 건립사업 등이다. 이렇게 CM을 활용하여 건축을 시행한 사업들은 도중에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없이 무사히 완료되었다.

〈CM제도 도입 전후 사업수행체계 비교〉



2) PMC제도 창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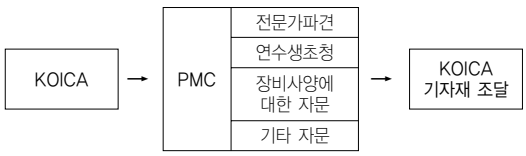
프로젝트형 사업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사업의 모든 추진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담당자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일반적으로 현지건축, 기자재공여,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건축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입찰제안서 작성, 신문공고, 입찰설명회 등을 해야 하며, 기자재공여를 위해서는 모든 장비에 대해 세부사양서를 작성하여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을 위해서는 업무일정준비, 파견기관 또는 연수기관 확보, 항공권 및 숙박장소 준비 등 많은 일을 해야한다.

2003년까지는 프로젝트의 구성요소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여, 1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도 담당자의 업무량이 과중할 뿐 아니

라, 건축, 기자재공여,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이 개별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탁됨으로써 장비에 맞도록 건축이 설계되지 못하거나, 연수생초청훈련과 전문가파견이 연계가 부족하여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담당자는 프로젝트기획이나 사업모니터링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수행은 1개 전문업체가 위탁받아 협력단의 프로젝트 기획안에 의거해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며, 전문분야에 대해 수시로 협력단에게 자문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협력단은 이렇게 1개 프로젝트 전체를 위탁하고 기술자문을 해주며 일관성있게 사업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추진하는 방식을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방식이라 명명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PMC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PMC 업체는 최초 협력단에서 기획한 사업내용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제안서를 협력단에 제출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PMC업체의 주요업무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장비를 선정하고 장비의 세부사양 결정

나. 장비에 맞는 건축설계가 되도록 CM업체에게 지시

다. 사업목적에 맞는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는지 건물의 기능 등에 대해 자문

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 사업을 협력단기획에 따라 프로그램 작성 및 추진

마. 최종 영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원국 및 협력단에 전달

최근에는 모든 프로젝트형 사업을 PMC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건립사업('03-'04)
- 필리핀 IT 훈련원 건립사업('03-'05)
-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능력개발사업('04-'05)

PMC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업수행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협력단 담당자들은 일단 잡다한 주변일을 PMC업체가 대행하여 주므로 프로젝트의 내용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에 주력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이 향상되고 1명이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

PMC 업체의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 과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기자재의 사양검토, 전문가파견, 연수생훈련 등을 개별적으로 위탁수행하거나, 각기 개별요소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느낌이 없어 수동적이었으나 PMC방식으로 수행하니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며, 사업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2. 용어 및 규정의 통일

프로젝트형 사업과 개발조사는 사업추진절차나

방식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용어가 다르고 각각의 규정이 있어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어 왔다.

1) 용어의 통일

2004년 이전에는 프로젝트형 사업은 협력단과 개도국 수원기관과 프로젝트의 세부내용과 양기관의 부담사항을 합의하는 협의의사록을 ROD(Record of Discussion)라 하고 부속문서로서 Project Document를 첨부하였다. 개발조사에서는 협의의사록을 M/M(Minutes of Meeting)이라고 하고 부속서류로서 TOR(Terms of Reference)을 첨부하였다.

ROD와 M/M 모두가 KOICA와 수원기관간 사업시행조건을 합의하기 위한 협의문의 표지이며 Project Document와 TOR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조건을 담은 내용이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프로젝트형 사업과 개발조사 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2가지 사업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있어 혼동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것은 개발조사사업은 1991년부터 시행하였고, 프로젝트형 사업은 1992년부터 개발조사사업과는 다른 부서에서 시작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4년 협력단은 프로젝트와 개발조사의 용어를 통일하기로 하고 협의의사록의 표지는 ROD로, 사업시행조건은 TOR로 통일하였다.

2) 규정의 통일

용어뿐 아니라 동일한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정 또한 다르게 제정되어 있었다. 사업선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용역업체 선정절차에 관한 기준, 용역비 지급방식에 관한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었다. 이에 협력단은 2005년 2월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통합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 선정부터 종료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되었으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3. 분야별로 직제 개편

KOICA는 2005년 2월 인적 구성의 문제점 보완 및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꾀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추진부서를 과거 사업형태별 직제에서 분야별 직제로 개편한 바 있다.

또한 기획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기획을 전담하는 개발기획제도팀을 신설하였으며, 종료프로젝트의 사후관리를 물자지원팀에서 전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분야별 직제 현황〉

부 서 명	담 당 분 야
개발기획제도팀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총괄기획, 공공행정, 경제제도
교육사회팀	교육훈련, 여성개발
정보통신팀	정보통신
산업환경팀	농림수산, 광공업, 자원, 환경
의료보건팀	의료보건, 기타
물자공여팀	프로젝트 사후관리

4. 업무매뉴얼 제작

담당인력의 짧은 근무년수,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비숙련도를 보완하고 업무추진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형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업무처리 방식을 매뉴얼로 작성 · 제작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Ⅶ. 향후 개선과제

1. 사업확대에 대한 준비

KOICA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2009년까지 ODA를 GNI 대비 0.1%까지 증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KOICA예산은 대폭 증대될 전망이며, 특히 개발조사는 업계의 요청, 사업의 효과를 고려할 때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 2005년도 개발조사 예산은 52억 원(4.5백만불)으로 KOICA 총 사업비 1,578억 원(137.2백만불)의 3.3%에 불과하나 일본(JICA)은 68개국 224건('03년 기준)의 개발조사를 진행중이며, 총사업비의 13.6%를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2. 현장중심의 사업발굴능력 강화

개도국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프로젝트형 사업에 비해 개발조사의 요청건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이 적은 편이다. 이는 수원국에서 건물건축이나 장비 공여 등과 같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사업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협력단 해외사무소나 공관은 지속적으로 수원국과 협의하여 양국에 호혜적인 우량사업을 발굴하고 수요요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단 해외사무소나 공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 개발조사의 확대

개발협력사업은 효과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후관리가 용이치 않은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보다는 선진 원조기관과 같이 컨설팅과 기술협력을 위주로 지원하여 개도국의 Good Governance, Capacity Building, Institution Building에 기여하는 사업인 개발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발조사는 인프라건설분야인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게 후속공사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개도국에게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개발조사사업 수행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정보 ·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단위 사업규모의 확대

사업의 예산규모에 관계없이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사업은 사업추진 절차와 업무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추진건수가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협력단의 사업추진 업무량의 증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협력단은 단위사업의 예산규모를 점차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평균 100만불 이하의 단위사업규모를 평균 200만불 이상으로 늘릴 경우 우수한 사업발굴이 용이할 것이다.

〈개발사업('91~'04) 사업규모 현황〉

구분		합계	50만불이하	50-100만불	100-200만불	200만불이상
프로젝트	건수	223	116	59	22	26
	비율	100%	51%	27%	10%	12%
개발조사	건수	62	28	28	5	1
	비율	100%	45%	45%	8%	2%

5. 전문 PMC업체 육성

2003년부터 개별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PMC 기관의 ODA 전문성 부족과 행정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분야별 실태를 보면, 직업훈련분야는 2003년까지 상공회의소와 산업인력관리공단에만 의존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직업훈련분야 PMC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협력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기관은 협력단 프로젝트업무를 이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

농업, 임업, 마약행정, 의료경제 등의 분야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경찰청, 보건사업진흥원 등이 협력단 PMC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각 분야에 1개 기관 정도만이 PMC기관으로 확보되어 있어 협력단은 위탁기관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은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개도국에서 관련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본사업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설분야의 각종 타당성 조사사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조사사업 발굴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 발굴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최근 개발조사사업에 대한 민간업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엔지니어링 업체(용역업체)들이 사업발굴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발조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발굴업체만을 위한 직접적인 우대제도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나,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사후관리업무 증가 대비

KOICA는 지금까지 개도국에 대해 직업훈련원, 병원, IT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왔다. 이 3가지 분야는 장비지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03년부터는 사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5년 이상 지나 장비가 노후화될 경우 수원국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할 예산이 없다면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수원국으로부터 사후관리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OICA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사후관리 업무의 증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발굴단계부터 수원기관의 유지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지속적인 연구

1) 개발조사사업 발전방향의 정립

엔지니어링협회, 플랜트협회 등은 수시로 협력단에 개발조사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단은 전체 사업비 증가율에 비해 개발조사를 확대시키지 못하였다. 예산당국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 개발조사의 필요성, 중요성,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한 Consensus 조성이 필요하여 사업중점분야, 절차, 수행방식, 기업활동과의 연계, 결과활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협력단에서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2) 국별 연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도국은 나라마다 사업성이 우수한 분야가 다르

다. 국별연구를 통하여 수원국 현실에 맞는 지원분야를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젝트 추진방식은 과거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도 PMC 기관 사업수행 모니터링, 평가방식 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행히 협력단에는 프로젝트연구회라는 학습동아리가 있어서 본 동아리에 의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8. 개발원조 정보자료 센터 구축

KOICA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무상원조 전담기구이나 개발협력에 대한 학술연구나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며, 대국민정보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개발원조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수행시 입수된 각국의 귀중한 자료 등이 활용되도록 하는 정보자료센터의 구축이 요구된다.

9. 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1) 기업활동과의 연계 제고

무상원조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지지기반 구축, 개발조사의 확대 ·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본사업 수주라는 가시적 결과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서 우리 기업의 본사업 수주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과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업체 · 전문유관단체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업 선정시 본사업 연계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 ·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심의 · 선정과정에 유관 전문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2) 사업발굴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고려 필요

우량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사업성에 가장 민감한 업체의 노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개발조사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사업시행자 선정시 사업발굴업체를 위한 우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특성상 입찰시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발굴업체만을 위한 직접적인 우대제도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나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0. 인력 확충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비는 1991년에 비해 8배 증가하였으나 협력단 직원은 1991년 240명에서 2005년 7월 현재 193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프로젝트형사업과 같이 1건의 사업에 건축, 장비공여, 연수생초청훈련, 전문가파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잡다한 일들이 많으며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Outsoursing 확대를 통해 개선하고 있으나 담당자 1인이 현재와 같이 7~10건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1.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사업은 이공계분야의 사

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협력단의 담당직원 중 이공계열 출신은 14%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전문분야에 대해 외부위탁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이공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 개발조사 담당직원(팀장 포함) 전공분야 (2005.6월 현재)〉

구분	합계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공계열	농학계열	기타
직원수	29	11	9	4	1	4
비율	100%	37%	31%	14%	4%	14%

또한 담당직원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 향상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에 신규직원의 채용으로 협력단 인력부족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으나 과거 금융위기 등의 문제로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현재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담당자중 3~10년차의 직원이 전체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나 직원의 지속적인 신규채용은 업무의 숙련도 유지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프로젝트 · 개발조사 담당직원(팀장 포함) 근무년수 (2005.6월 현재)〉

구분	합계	3년이하	3~5년이하	5~10년이하	10년이상
직원수	29	14	1	2	12
비율	100%	49%	3%	7%	41%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감소효과와 시사점

정 우 용 / KOICA 조달팀장

Ⅰ. 머리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조건의 하나로써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의 증여율(Grant Element)을 2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개도국에 대한 전체 ODA의 증여율은 86%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증여율의 기준은 타잉(Tying) 등과 함께 소위 원조의 질(quality)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조의 타이드(tied) 여부에 관계없이 제시되고 있다. 즉, DAC기준의 양허성은 명목상의 가치로 측정되고 있으며, 양허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어진 지원조건 외의 다른 변수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바, 특히 타이드시의 실질 증여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DAC의 양허성 측정 기준은 10% 할인율 및 25% 증여율 기준의 고정, 양허성 차관의 즉시지출 가정, 인플레이션 효과 및 환율변동의 미반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원조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관점에서 본 타이드 원조가 미치는 양허성 감소 효과를 검토해보고 우리나라 원조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타이드 원조의 효과

1. DAC의 양허성 목표

양허성(Concessionality)은 원조의 질을 표시하는 지표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소위 증여율로써 측정된다. 증여율(GE)은 차관의 액면가에서 앞으로 상환하게 될 원리금의 합계를 10%로 할인한 현재가를 감하여 계산한다. 즉,

$$GE = F - \sum_{n=1}^{N} \frac{R^n}{(1+r)^n}$$

가 된다. 여기서 F는 양허성 차관의 액면가, Rn은 n

년 동안 상환하게 될 원리금의 합계, N은 차관의 상환기간, 그리고 r은 할인율을 나타낸다. 원조가 양허성 차관의 형태를 가질 때 무상의 요소가 보통 포함된다. 이런 무상의 요소는 상업성 차관과 구별되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순수 무상원조는 증여율이 100%이고 따라서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상환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예컨대 10%의 이자율을 가진 상업차관은 10%의 할인율 가정 때문에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증여율은 '0'이 된다.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증여율이 높을수록 원조의 질이 높다. 원조제공에 있어서 양허성의 조건은 수원국의 관점에서는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고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공여국들의 부담을 판단하는 기준-따라서 순위를 결정-을 제시해준다. 즉 양허성 차관이 원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 이상의 증여율이 필요한데 높은 양허성 제공은 그렇지 않은 조건의 차관보다 원조제공에 따르는 부담이 크지만, 수원국에게는 그만큼 질 높은 원조가 제공되게 된다. DAC는 양허성의 조건과 기준을 1972년에 처음으로 권고하였는데 모든 개도국에 대한 적어도 평균 84%의 증여율을 목표로 삼았고 1978년에는 전체 ODA에 대한 증여율을 8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최빈국에 대한 증여율은 연평균 90% 또는 3년 평균 86% 이상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타이드 원조의 비용

원조의 타이드 역시 원조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이다. 타잉(Tying)은 타이드되지 않은 지원에 비하여 원조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수원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타잉은 부정적인 요소이다. 특히 구매타잉(Procurement Tying)은 수원국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조수입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수원국의 자원선택의 폭을 좁히고, 비경쟁적 입찰을 통해서 수원국에 더 높은 비용을 야기함으로써 구매가격을 높이기 때문이다. 높아진 구매가격은 양허성을 또한 상쇄시키게 된다. 공여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구매 타잉은 높은 가격, 비경쟁산업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하고 무역의 보호주의 효과와 유사한 정책주도형 시장실패를 가져다준다. 공여국이 타이드원조를 선호하게 되는 주요 이유로는 흔히 국제수지 지출 억제와 고용의 창출효과를 든다.

그러나 모슬리(Mosley, 1987)와 모리씨(Morrissey, 1990)의 연구에 의하면 타이드 원조가 수출과 고용촉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미약하며 또한 양자간 타이드 원조로부터 얻게 되는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은 다자간 언타이드 원조로부터 얻는 것보다 오히려 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1] 타이드 원조를 통해 보호받게 되는 비경쟁산업의 경우 국제수지 및 고용에 대한 단기적인 이익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경쟁산

1) 모리씨(1990)는 투입-산출효과 분석을 이용하여 영국경제에의 다자간 및 양자간 타이드원조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100만 파운드의 다자간 원조는 180만 파운드의 수출, 180만 파운드의 총 생산, 그리고 연간 59명의 고용을 창출하지만, 100만 파운드의 양자간 타이드 원조는 단지 66만 파운드의 수출, 110만 파운드의 총 생산, 그리고 연간 36명의 고용창출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업은 여하튼 원조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이며 따라서 국제수지와 고용에 대한 타잉의 긍정적인 효과는 원조 프로젝트로부터 기대되는 발주의 크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슈혼헤르와 보글러 루드윅(Schonherr and Vogler-Ludwig,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언타이드 원조의 경제적 효과는 수원국에서 선의를 축적(a stock of goodwill)시켜 향후 수출을 통해서 공여국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공여국의 수출에 대한 원조의 영향을 측정한 결과 공여국의 수출에 대한 타이드 원조의 긍정적인 효과는 과대평가되어온 반면, 언타이드 원조의 이익은 과소평가되었다고 한다. 즉, 언타이드 원조가 보통 우리가 믿는 것처럼 과도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구매 타잉은 개도국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타이드 원조로 구매된 재화는 보통 국제경쟁시장에서보다 가격이 높다. 타이드 원조가 수원국에 가져다주는 가격상승의 범위는 12% (Haq, 1967), 20% 내지 25% (Bhagwati, 1970), 10 내지 20% (Riddell, 1983), 그리고 74% (Yassin, 1991)등 다양한데 보다 최근의 젭마(Jepma, 1993)의 연구는 타이드 원조 제공시 그 명목 가치에 비해 실질가치가 15% 내지 30% 가량 감소함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타이드 원조가 가격상승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타이드 원조가 적정한 가격의 재화를 공급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특정 분야나 서비스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면 타이드 원조의 초과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

타이드 원조의 가격효과 외에 다른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공여국이 선호하는 혼합신용과 같은 것을 통한 수출촉진으로부터 오는 본연의 왜곡이다. 이런 점에서 OECD(1985)는 다음과 같이 타이드 원조가 개도국 경제에 주는 왜곡을 지적하였다. 첫째, 수입품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선호, 둘째, 상업적으로 관심이 있는 개도국에 부여하는 특혜 지위, 셋째, 상업적으로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자로 보이는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조정에 참여 유보, 그리고 다자간 원조를 통한 참여 유보 등이다. 이러한 왜곡에 대한 영향은 수원국에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과도하게 자본집중적이며, 선진국의 기술에 상당히 종속적인, 그리고 수입지향적인, 따라서 낮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들이 된다.

3. DAC의 언타잉 목표

DAC 역시 설립초기부터 타잉의 관행을 규제해오고 있다. 1965년의 DAC의 타잉관련 권고는 원조자금으로 구매시 제약을 가능한 한 감소하라고 권고하였고 또한 타이드 원조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를 제안하였다. 1974년에는 10개국의 DAC 회원국이 개도국의 구매에 호혜적인 양자간 개발차관의 언타잉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부분 언타잉 체제하에서 원조자금을 사용한 개도국으로부터의 구매가 가능해졌다. 더욱이 1986년에 채택된 구매에 관한 DAC의 지침은 가격상승을 감소시키는 경쟁적인 입찰과 계약을 장려하였다. 언타잉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최빈국(LLDCs)에 대한

언타잉 원조제공에 관한 것이다. DAC는 2001년부터 회원국들에게 최빈국에 대해서는 언타잉 원조를 권고하고 있다.

4.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감소효과

원조의 타이드화는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공여국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명목 양허성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즉 명목 양허성 차관의 액면가치는 타잉으로 인해 상승된 가격만큼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을 조정하여 감소된다.

일찍이 화이트(White, 1974)는 이러한 양허성 감소효과를 공여국 물가지수(Donor Price Index: DPI)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수원국이 국제경쟁가격으로 100불 가치의 재화와 용역을 공여국의 타이드된 가격인 150불 상당으로 제공받을 때 DPI는 1.5가 된다. 실질 증여율(Aid Equivalent: AE)은 DPI를 반영하여 계산되는데 차관의 액면가는 DPI만큼 축소하게 된다. 즉,

$$AE = (F/DPI) - \sum_{n=1}^{N} \frac{R_n}{(1+r)^n}$$

가 된다.

모리씨와 화이트(Morrissey and White, 1994)도 같은 맥락에서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하락효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였다. 타이드 원조의 가격상승효과를 반영한 조정된 양허성(Adjusted Grant Element: AGE)은 화이트(White, 1972)의 DPI의 역수에 의해 차관의 액면가치가 감소함을 증명하였다. 즉,

$$AGE = [(Pw/Pd)\times F] - \sum_{n=1}^{N} \frac{R_n}{(1+r)^n}$$

가 된다. 여기서 Pw는 프로젝트의 국제가격, Pd는 프로젝트의 공여국 가격을 나타낸다. 이 식으로부터 타잉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명목 양허성 상쇄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데 명목 증여율 (GE)공식을 활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GE = (Pd/Pw-1)/(Pd/Pw)$$

가 된다.

이 식으로부터 예를 들면, ODA 차관의 충족조건인 25%의 증여율(GE)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33%의 초과비용(DPI)이 발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표1은 타잉으로 인한 초과비용이 젭마(Jepma, 1993)가 측정한 15% 내지 30%일 경우를 가정할 때 타잉이 OECD/DAC 회원국 원조의 실질가치를 명목가치에 비해 약 1%~2%만큼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기준으로 양자간 명목원조 총액인 313억불이 실질적으로 310억불과 306억불로 감소되고 평균 양허성은 98.4%에서 각각 97.4%와 96.3%로 감소된다. 타이드 비중이 평균 14.6%로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명목가치가 크게 감소되지 않았지만 개별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타이드 원조의 비중이 높을수록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의 원조가 보여주듯이 원조의 실질가치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타이드 원조 비중이 가장 큰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양허성이 각각 7.3%와 14.7%

〈표 1.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감소효과 (2003)〉

(단위: 백만불)

국가[1]	양자간 ODA[2]	증여율(%)[3]	타이드 ODA(%)	타이드 ODA	실질 ODA		실질증여율 (%)	
					15%	30%	15%	30%
호주	330.0	100.0	32.8	108.0	313.8	297.6	95.1	90.2
오스트리아	133.0	100.0	48.6	65.0	123.3	113.5	92.7	85.3
벨기에	1,162.0	99.5	0.9	10.0	1,160.5	1,159.0	99.4	99.2
카나다	1,049.0	100.0	47.4	497.0	974.5	899.9	92.9	85.8
덴마크	650.0	100.0	28.5	185.0	622.3	594.5	95.7	91.5
핀란드	224.0	100.0	14.2	32.0	219.2	214.4	97.9	95.7
프랑스	5,013.0	95.1	3.1	153.0	4,990.1	4,967.1	94.6	94.2
독일	3,031.0	97.2	5.4	163.0	3,006.6	2,982.1	96.4	95.6
그리스	96.0	100.0	5.0	5.0	95.3	94.5	99.2	98.4
아일랜드	316.0	100.0	0.0	0.0	316.0	316.0	100.0	100.0
일본	12,634.0	87.5	3.4	430.0	12,569.5	12,505.0	87.0	86.5
뉴질랜드	81.0	100.0	18.6	15.0	78.8	76.5	97.2	94.4
노르웨이	1,304.0	100.0	0.1	2.0	1,303.7	1,303.4	100.0	100.0
포르투갈	32.0	100.0	6.3	2.0	31.7	31.4	99.1	98.1
스페인	1,017.0	92.0	44.0	447.0	950.0	882.9	85.4	78.8
스웨덴	1,811.0	99.9	0.0	0.0	1,811.0	1,811.0	99.9	99.9
스위스	666.0	100.0	3.6	24.0	662.4	658.8	99.5	98.9
영국	1,729.0	100.0	0.0	0.0	1,729.0	1,729.0	100.0	100.0
DAC Total	31,278.0	98.4	6.8	2,138.0	30,957.3	30,636.6	97.4	96.3
한국	266.6	86.9	80.6	214.8	234.4	202.2	74.8	62.7

자료: OECD (2004), 정창호(2005)

주: 1)타이드원조 실적이 기록된 국가만 표기함. 2)기술협력과 행정비는 제외한 승인액 기준임. 3)총 ODA 기준임.

만큼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DAC회원국 중 명목 증여율 최저치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일본[2]은 DAC평균(14.6%)보다 훨씬 낮은 타잉 비율(3.4%) 때문에 명목 양허성과 실질 양허성간 차이가 DAC평균의 차이보다도 적다.

Ⅲ. 우리나라 타이드 원조의 실질 양허성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는 2003년 승인액 기준으로 타이드 비율이 80.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양허성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표1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양자간 명목ODA는 267백만불에 이르나

2) 명목 증여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무상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2002-2003년 평균 양자간 원조의 무상비율은 46.8%(DAC평균 86.1%), 전체 원조의 무상비율은 56.2%(DAC평균 89.6%)로서 각각 DAC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5%와 30%의 타이드된 초과비용을 가정하면 수원국에 제공되는 ODA의 실질가치는 234백만불과 202백만불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증여율 기준으로 보면 명목 증여율 86.9%에서 각각 실질 증여율인 74.8% 및 62.7%로 하락하여 12.1% 내지 24.2%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명목 증여율은 86%의 기준을 상회함으로써 일단 DAC의 권고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우리나라 EDCF차관의 공여조건이 최근 많이 개선되어 OECD/DAC 회원국과 증여율에 있어서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3] ODA 전체 증여율로 볼 때 유상원조의 증여율보다는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표1에서 보듯이 DAC회원국이 매우 높은 양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5%(98.4%~86.9%)의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DAC의 높은 무상원조 비율 때문이며[4], 이러한 DAC의 무상원조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2~2003년도 승인액 기준으로 DAC의 양자간 무상비율은 평균 86.1%에 이르고 있으나[5] 우리나라 양자간 무상비율은 36.1%에 그치고 있어 50%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DAC의 양자간 무상비율 최저치인 일본의 46.8%에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저조한 실적이다. 원래 30% 이하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원조의 양자간 무상비율은(2001년 30.3%, 2002년 26.2%) 그나마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무상재건복구비용이 산정되어 46.0%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개발 자금이 부족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등에 무상보다는 규모가 큰 양허성 차관의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역할 기대와 그에 따른 공여국 기업 및 물품의 진출(수출) 촉진을 통한 경제적 이익 수취, 그리고 개도국에 차관의 상환부담 때문에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한다는 점 등이 양허성 차관의 공여이유로 주로 거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DAC회원국이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추세로 가는 이유는 첫째, 근래에 들어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공여국과 개도국의 파트너십 정립 및 개도국의 오너쉽(ownership) 고양 등을 위해 DAC에서 지속적으로 심사(Peer Review)하고 있는 타잉 축소와 양허성 개선 권고에 따라 특히 양허성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불 유상원조의 비중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매우 좋은 조건으로 대부되고 있는 양허성 차관도 원리금이 상환된다는 사실 이외에는 공여국에게는 무상원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재정적 부담이라는 점[6], 셋째, 유상보다는 무상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측면이 부각되는 대내외 홍보효과와 그로 인한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 넷째, 악화되고 있는 개도국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3)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EDCF차관의 명목 증여율은 66.4%로서 동년 OECD/DAC회원국의 유상원조 증여율 평균인 68.0%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4) 전체 양허성이 모든 무상 및 유상원조 증여율의 가중평균치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5) 2000~2001년 기준으로는 양자간 무상비율은 평균 77.8%이다.
6) 공여국의 경제상황 및 지원조건에 따라서는 오히려 차관이 무상증여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대응[7],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허성 차관의 타이드 원조 사용제약이 증대되는 추세로 특히 OECD는 1992년에 소위 헬싱키패키지라고 불리는 공적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을 제정하여 중소득국 이상의 국가에 대한 타이드 원조 금지와 상업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타이드 원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유상원조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타이드 원조는 양허성을 상쇄시켜 원조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원국의 관점에서 볼 때 원조의 질이 저하된다. 우리나라 원조의 명목 양허성은 평균 87%로서 DAC평균(98%)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타잉의 정도를 반영할 때는 80% 이상의 타이드 원조의 높은 비율과 그로 인한 가격상승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 결과 명목 증여율은 12.1%~23.2% 정도 실질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 DAC 회원국의 실질 양허성은 낮은 타잉비율(14.6%) 때문에 실질 하락폭은 평균적으로 1~2%에 그치고 있다.

명목상 양허성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EDCF차관 지원 조건의 개선, 즉 이자율 하락,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나 EDCF의 증여율은 DAC회원국과 비교해볼 때 이미 상당히 개선되었으므로 전체 양허성 수준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무상부분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DAC 회원국 양자간 무상비율의 평균수준(86.1%) 도달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무상원조비율을 50% 이상 높이는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하다. 무상 비율이 DAC회원국 중 최저치인 일본의 경우 DAC평균보다 매우 높은 언타잉 비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양허성 실적에 영향을 미쳐 역시 DAC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세계 제1위의 원조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엔차관을 이용한 일본원조가 경제적 이익추구에 비중을 둔 나머지 원조효과가 희석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그다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 점은 우리나라 원조가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하기 전 사전 정책검토(Pre Peer Review)에 대비하고 가입 이후라도 DAC의 지원조건 심사나 실적 순위평가 등을 고려할 때, ODA의 양적 증대와 함께 양허성 제고와 특히 언타잉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원조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언타이드 원조가 보통 우리가 믿는 것처럼 과대한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 기업의 재화와 용역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잉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아울러 타잉에 대한 전반적인 원조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7) 최근(2005. 6.) 선진국 G8 재무장관들은 아프리카, 중남미 대륙 18개중 채무 빈곤국(HIPCs)이 IMF가 가동하는 HIPCs지원노력과 함께 개도국의 채무 불이행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자료

Bhagwati, J. (1970) Amount and Sharing of Aid, Washington DC.: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EDCF (2004) EDCF Annual Report, Seoul: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aq, M. (1967), 'Tied Credits: a quantitative analysis', in J.H.Alder (ed) Capital Movem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London: Macmilan.

Jepma, C. (1993) 'OECD-Wide Untying', Paper presented at the EADI VII General Conference, Berlin, 15-18 September.

Morrissey, O. (1990) 'The Impact of Multilateral and Tied Bilateral Aid on the UK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2(1): 208-226.

Morrissey, O. and White, H. (1996) 'Evaluating the Concessionality of Tied Aid', The Manchester School, LXIV(1): 208-226.

Mosley, P. (1987) Overseas Aid, Brighton: Wheatsheaf Books.

OECD (1985, 2004)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Riddell, R. (1987) Foreign Aid Reconsidered, London: James Currey Ltd.

Schonherr, S. and Vogler-Ludwig, K. (2002) 'Foreign Aid and Donor Export Performance: The Case of Germany, in B, Arvin (ed) New Perspectives on Foreign Aid and Economic Development, Westport: Praeger.

White, J. (1974) The Politics of Foreign Aid, London: The Bodley Head.

Yassin, I. (1991) 'Aid-tying and the Real Value of Foreign Assistance: The Case of the Sudan',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30(2): 189-206.

정창호(2005) 'OECD의 타이드 원조 규제가 우리나라 ODA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전문가풀 ODA연구회 주제발표

Ⅱ. 개발협력동향

UNESCAP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KOICA의 지원으로 UNESCAP이 시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3개국 새마을운동 시범사업(2003~2005/965천불:KOICA 부담분 615천불)'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Ⅰ. 관찰 및 평가

□ 캄보디아에서의 ESCAP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에는 라오스, 네팔과는 달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기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새마을운동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 주민들 간의 협동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요소도 부족하지만, 주민들이 자신들의 부담분에 대해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어 Action Plan에 명기된 사업결과를 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새마을운동시범사업은 극도로 열악한 사업대상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새마을운동사업이 여타 시혜적(charity) 성격의 사업과 다른 점은 주민들 간의 의견수렴에 의한 지역사회의 개발수요를 선정하고,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의 개발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역량을 통해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ESCAP이 캄보디아 등에서의 2단계 새마을운동시범사업을 요청할 경우, 주민들의 협동에 의한 자립기반 형성방안에 보다 역점을 두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캄보디아 인구의 약 80%가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촌의 개발 없이는 캄보디아에서의 빈곤탈피는 요원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계획 수립시 새마을운동사업 전파 및 확산 등 농업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캄보디아는 메콩강 및 통레삽강 유역을 중심으

로 넓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으나, 대표 작물인 쌀의 1ha당 생산성이 1.3톤으로 주변국들의 3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낮은 농업생산성은 관개시설, 다수확품종, 비료, 기계화, 효과적인 extension service, 훈련 및 농업여신(farm credit) 등과 같은 농업발전에 필요한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데 따른 것임.

- 위와 같은 농업인프라는 최빈국인 캄보디아의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 구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농촌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Ⅱ. 시범사업 추진현황

1. 시범사업 개요

□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시범사업은 총 6개 마을에 총 사업비 US$117천 규모(각 마을당 US$20천 안팎의 사업비 배정)로 Cow Bank, 소규모 농업여신(farm credit), 부엌 및 화장실 건립, 지붕 개량, 마을 가꾸기 등 마을별로 4~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Kampong Cham주 Trop Commune 2개 마을: Rong Domrei(154가구) 및 Phum Thmey 마을(140가구)
- Kampong Cham주 Tom Nup Commune 2개 마을: Prasam(84가구) 및 Trapaing Snor 마을(121가구)
- Koh Kong주 Kampong Seila Commuune 1개 마을: Thmei 마을(216가구)
- Koh Kong주 O' Bak Rotesh Commune 1개 마을: Prey Praseth 마을(132가구)

2. 시범사업대상지역 현황

□ Kampong Cham주 4개 마을은 평야지대에 위치하며 Koh Kong주 2개 마을은 완만한 산간지대에 위치함. 6개 마을 모두 관개시설의 미비로 주민들이 우기를 이용한 1모작 벼농사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벼농사만으로는 자급자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축사육, 산림채집 등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있음.

□ 사업대상 6개 마을 모두 집 아래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가축과 어우러져 생활하는 관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건위생환경이 극히 열악함.

□ 대부분의 가구들이 열손실이 많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건기에는 집주변의 노지에서 취사를 하고 우기에는 집안에서 취사를 하기 때문에 연기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음.

□ Kampong Cham주 4개 마을 및 인근지역 대부분은 건기에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주민들은 식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을 마을주변에 파놓은 커다란 연못에 고인 흙탕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수를 얻기 위해 수 km를 다녀와야 하는 형편임. 이에 따라 주민들, 특히 아이들의 상당수가 눈병을 앓고 있음.

3. 주요 시범사업 진행현황

1) Cow Bank

□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Cow Bank 사업은 이미 캄보디아에서 커다란 성과를 보이며 정착된 제도로서, 암소를 불하받은 가구가 암소가 생산하는 새끼 세 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임.

□ Cow Bank 사업은 Trop Commune의 2개 마을과 Koh Kong주의 2개 마을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Cow Bank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Cow Bank 운영방안, 약관 등에 대한 준비상황이 대부분 완료되어 조만간 Cow Bank 제도가 시범사업대상마을에서 시행될 것으로 판단됨.

2) 농로확장 및 농수로 건설

□ Tom Nup Commune의 Prasam 마을은 주민들의 참여하에 총연장 2.5km의 농로확장 및 농로 옆 농수로 건설을 마침.

□ 반면, Tom Nup Commune의 Trapaing Snor 마을은 당초 농수로 건설을 위해 토지기증 의사를 표명했던 가구가 이를 취소하는 바람에 새로운 농수로 위치를 검토하고 있음.

3) 펌프 및 우물 개발

□ 펌프를 통한 지하수 개발사업은 Trop Commune의 2개 마을 및 Tom Nup Commune의 Prasam 마을 등 3개 마을에서 추진되었으나, Prasam 마을에서만 지하수 개발에 성공하고 나머지 2개 마을은 지하 암반층으로 인해 지하수 개발을 포기함.

- Prasam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개발을 크게 환영함.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개발 전 7~8km 떨어진 다른 마을의 우물을 이용했다고 함.

□ 여타 3개 마을은 우물개발 및 기존우물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부엌 및 화장실 건립사업

□ 사업대상 6개 마을에서 모두 추진되고 있는 부엌 및 화장실 건립사업은 Rong Domrei 마을에서 지금까지 35개의 부엌이 지어지는 등 빠른 속도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자료: 주태국 대사관]

제14차 남남협력 고위급회의 결과보고

제14차 남남협력 고위급회의가 2005.5.31(화)~6.3(금)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바,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입장표명 및 토의내용

□ 대부분의 국가는 최근 남남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특히 LDC, LLDC, SIDS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

□ 또한 UNDP 내 '남남협력 Special Unit'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면서 동 Unit이 개별 남남협력사업에 대한 조정(coordination)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국별 focal point 구축 및 기능강화를 요청하였음.

□ 한국은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와 관련 우리나라의 기여 노력, 특히 최근 ESCAP APCICT 유치를 소개함.

1. 상세 논의내용

1) 의장 및 UNDP 총재(Mark Brown) 연설

□ 의장은 개발과 안보간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남남협력에서 재원의 증가, 무역촉진, 해외 직접투자(FDI)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을 제기

- 주요 이슈에 대해 남남협력고위급위원회가 중요 역할을 해야 하며 금번 회의에서 동 위원회의 기능강화 또는 역할정립 방안에 대해 토의해 주기를 요청

□ UNDP 총재는 남남협력이 MDG 및 여러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남협력이 개도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강조

- 개도국 총 수출액 중 약 40%가 개도국간에 이루어지는 등 개도국간의 협력강화가 개도국의 발전에 중요 요소가 되므로 남남협력이 계속 발전되어야 함.
- 금번 회의 및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개도국정

상회의를 통해 남남협력뿐만 아니라 선진 · 개도국간의 협력 등 '삼각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빈곤퇴치를 위해 원조공여국들의 기여 증가와 더불어 개도국의 원조 수용능력 강화 등 역할분담을 강조함.

2) 주요국가 발언내용

가. 77그룹

□ 남남협력이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 협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개도국이 안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작용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선진 · 개도국간 협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됨.

□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① '무역, 금융, 기술분야'에서 불평등 요소 제거, ②기존 국제회의에서 약속한 사항(ODA GNI 대비 0.7% 공여 등)의 완전한 이행, ③남남협력 강화를 위한 재원 동원, ④민 · 관, NGO와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지적

나. EU

□ 남남협력 강화는 무역, 금융, 투자와 관련 지역협력 강화 등 성과가 있으나, 기술협력 분야는 아직도 상당한 과제가 남아있음.

□ 남남협력 이슈는 MDG의 달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일부 개도국의 발전사례를 확산시켜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선진개도국에서 실행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며, 사회간접자본의 개발과 지구 · 지역 환경문제 등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통합절차가 도움이 될 것임.

□ 남남협력 및 북남협력을 통합할 수 있는 '삼각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다만 남남협력의 최종적 책임은 개도국 자신들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개도국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다. 일본

□ 남남협력 및 삼각 협력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남남협력이 MDG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남남협력은 개도국간 상호 지원을 강화하는 포괄적 접근방법(inclusive approach)을 취해야 하며, 개도국간 '무역과 투자' 확대는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긴요한 요소가 됨.

□ '아시아-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라. 중국

□ 경제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남남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메카니즘이 부족하므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남남협력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남남협력에 있어서 재원부족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UN 내 개발기구들의 적극적 재원 동원 노력이 필요함.

3) 우리나라 발언내용

□ 최근 2년간 남남협력 발전에 대해 평가하고 '남남협력 Special Unit'가 개도국, 선진국, 유엔,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함.

- ICT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ICT 분야 기여노력을 소개함. 특히 최근 ESCAP APCICT 유치를 통한 아태지역 ICT 개발협력 의지를 표명함.

□ 또한 남남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 동원이 필수적이고, 이와 관련 선진국, 개도국 포함한 삼각협력의 중요성 및 민간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지적함.

Ⅱ. 결정문(Decisions) 채택 및 폐회

1. 채택 결정문

- 결정문 1: 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의 이행 성과 평가 및 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전략
- 결정문 2: 남남협력의 적용 및 촉진을 위한 전체 틀
- 결정문 3: 15차 남남협력고위급 회의 잠정의제

2. 주요 쟁점 사항 및 논의경과

□ 77그룹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에 대하여 참가국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77그룹이 전향적 자세로 결의문 협상에 임하여 결정문 1중 최근의 'OECD/DAC과 UNDP간의 대화' 분야에 대한 추가여부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큰 논란없이 채택됨.

□ 미국은 여타 59차 총회 결정문 논의에서처럼 '새천년목표(MDG) 달성'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여 MDG 대신 '새천년 선언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한 개발 목표'로 수정한 문구가 77그룹의 양보로 채택됨.

3. 상세 논의내용

1) 결정문 1

□ PP 3

-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안에 대하여 EU가 제안한 '남남협력의 증진 및 이행의 일차적 책임은 개도국에 있다'는 문구(58차 총회 결정문중 PP2)를 77그룹이 수용하여 채택됨.

□ OP 3

- 초안에는 없었으나 일본측의 추가제안으로 논의된 동 조항은 금년 2월 개최된 'OECD DAC와 UNDP간의 포럼' 내용 및 표현방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음.
- 일본측은 동 포럼에서 'DAC 회원국과 일부 신흥공여개도국(emerging donors)간 대화(dialogue)가 있었음을 환영'한다는 문구의 추가를 주장하였으나, 77그룹은 개도국은 '공여국(donors)'이 될 수 없다고 맞서 'OECD DAC와 UNDP가 공동 주관한 포럼을 주목한다'는 선에서 합의함.

□ OP 5

- 당초 안에는 NEPAD 등이 간단히 언급되었으나, 일본이 '아프리카개발에 관한 도쿄 국제회

의' 의 추가를 주장하여 77그룹이 다른 관련 회의(CARICOM, ACD)를 포괄하자는 수정제안을 받아들여 채택함.

2) 결정문 2

□ OP 8

- '남남협력 Special Unit' 의 재원 확충과 관련 미국측이 '기존재원을 통해 동 Unit이 활동하도록 한다' 라는 표현의 추가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77그룹이 동 표현을 수용한 대신 '추가적인 재원(additional resources)' 도 가능하도록 수정 제안하여 동 변경안을 채택함.

3) 결정문 3

□ 이견 없이 채택

Ⅲ.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지금까지 남남협력이 달성한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MDG 달성에 있어서 남남협력이 주요한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77그룹간 입장차이가 지속됨.

- 77그룹은 재원부족을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재원마련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남남협력 Special Unit' 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기존 재원의 사용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지속되었음.

□ 동 회의에서 합의한 결정문은 UNDP집행이사회를 거쳐 금년 9월 개최예정인 MDG 관련 정상회의에서 고려될 예정인 바, 이를 통해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금년 2월 파리에서 개최한 'UNDP와 OECD DAC가 공동 주체한 포럼' 에서 DAC회원국과 개도국간의 정책대화가 유용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남남협력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는 동 포럼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우리나라는 수석대표 연설을 통하여 최근 ESCAP 총회에서 유치 결정한 'ICT센터'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IT분야 협력 노력을 소개한 바, 향후 동 센터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남남협력 Special Unit' 과의 협력 증진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력이 좀 더 평가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 주유엔 대표부]

제2차 G77+중국 정상회의 개최 결과

Ⅰ. 핵심요지

□ 제2차 G77+중국 정상회의가 개발, UN개혁, 세계화 등 분야에서 남-남의 공동 입장을 천명하는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과 이의 실천을 위한 도하 행동 계획(Doha Plan of Action)을 채택하고 5.16 폐막됨.

□ 제2차 G77+중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상기 도하 선언은 개발부문에서 천년개발목표(GNI의 0.7% 개발원조)달성, 개도국에 대한 부채경감, 개도국 상품의 시장접근 개선, UN개혁시 개발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주로 선진국들의 의무 촉구 및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 증진 필요성을 열거하고 있음.

□ 관심이 두어졌던 UN안보리 개혁 문제는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선언에서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며, UN 개혁이 다자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회원국들의 결정에 대한 논의와 이행에 있어 민주적 성격과 투명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중국 및 중소개도국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다소 UFC측 입장에 경도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주목됨.

□ 금번 회의에서 카타르는 개최국으로서 77그룹 내에 경제, 사회, 보건, 교육 분야의 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기금(The South Fund for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창설을 주도, 2천만불의 기금을 공여하고 기타 개발원조관련 MDG 목표달성을 명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77그룹 차원 내에서 카타르의 위상 제고는 물론 앞으로 동 그룹내에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상기 기금에는 중국과 인도가 각 2백만불 기여를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함.

Ⅱ. 도하 선언 주요 요지

1. 개발

□ 외부로부터 원조를 이유로 개도국에 대한 강제적 경제조건, 법규정 부과 및 일방적 경제제재 반대

□ 남-남간 경제협력은 남-북간 협력의 대체로서가 아닌 보완이라는 인식하에 남-남간 협력의 심화와 활성화를 위한 남-남 국가간 노력 촉구

□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UN 정상회의에서 개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과 이를 위해 아래사항 이행 촉구

- 원조국들의 개발 원조액이 MDG에서 목표치로 합의된 국민총소득(GNI)의 0.7%를 달성토록하고 이 중 0.15~0.2%가 최저개발국에 사용되도록 공여국들의 노력 촉구
- 원조 제공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피원조국들이 개발 전략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공여국, 국제기구 및 민간분야에서 빈곤처방 등 국제적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단결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운용할 것을 촉구
- HIPC에 대한 부채 전면 탕감, HIPC initiative의 확대, 기타 LDC 및 중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부채 해결 등을 통해 모든 개도국에 대해 부채를 경감하고 개도국의 부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율적, 포괄적, 지속적, 개발지향적 해결책 채택 필요성 강조
- 교역부문에서 개도국의 비교우위가 어떠한 형태의 자의적이고 남용적인 보호주의 조치에 침해되지 않도록 개도국의 공산품 및 서비스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 접근 개선
- UN 정상회의에서 개발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개도국의 필요 이해가 확보될 수 있는 도하 개발 라운드를 조속히 체결토록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 촉구

2. UN 개혁

□ UN헌장에서 부여한 총회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며 UN의 주의사 결정 대표기구로서의 총회의 중심적 위치를 확인한 천년정상회의 선언(Millenium Declaration) 지지

□ 국제적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UN기구 강화를 위해 UN개혁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

□ UN 개혁은 다자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UN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에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구에 부여해야 하며 회원국들의 결정의 토론과 이행에 있어 민주적 성격과 투명성을 보장

□ UN개혁과정에 있어 개발영역이 주 영역이 되어야 하며 국제문제 결정 및 국제경제규칙 제정에 있어 개도국의 완전한 참여 보장 촉구

3. 세계화(Globalization)

□ 세계화가 개도국들에게 불평등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소득격차 및 빈곤이 확대됨에 우려 표명

□ 개도국이 세계화 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

계화 과정에서 개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는 국제적 전략 필요

4.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대처

□ 개도국에 대한 자연재해 발생증가 및 동재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

□ 자연재해 예방, 대처, 피해최소화를 위한 범국가, 범지역, 범국제적 메카니즘 창설지원 촉구

□ UN 및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자연재해 영향하에 있는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약속 실현

5. 지역정세

□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요구

□ 시리아의 경제제재에 대한 우려 표명

□ 이라크 정부창설을 환영하고 마드리드 이라크 원조국회의에서 약속한 의무 공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권 및 독립국가설립권리를 확인하고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점령 조속 해제 촉구

□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항공주권침탈 중단 촉구

6. 기타

□ 차기 제3차 회의는 2010년 아프리카에서 개최

Ⅲ. 관찰 및 평가

□ 금번 표제정상회의는 최근 G-8국가들이 7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LDC국가들에 대한 부채 탕감 방안을 제시하여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개발문제에 대한 G-8 회의 및 9월 UN 정상회의의 관심을 환기하고 개발문제를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봄.

□ 금번 정상회의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 서구 선진국들의 원조 의무 이행 촉구, 차별적인 국제경제질서,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 강조 등 국제질서 인식에 있어서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간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재확인해주었음.

□ 또한 금번 정상회의는 아랍국가 중 하나인 카타르가 개최하고 바레인, 팔레스타인 등 아랍계 정상이 많이 참석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아랍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음도 주목됨.

□ 금번 회의에서 카타르 Hamad 국왕은 의장으로서 동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기금 창설을 주도하고 2천만불의 기금을 공여함으로써 77그룹의 지도자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성공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나 한편으로는 동 기금에 대한 여타 국들의 호응 부족, 선진국들의 무관심 등에서 보듯이 개도국들만의 모임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이 관측됨.

□ 금번 정상회의의 행동계획에 남남협력차원에서 제의된 각 참가국들의 사업 중에 북한이 아래 3가지 사업을 제의했음이 흥미롭게 관찰됨.

① 개도국에서의 가뭄과 홍수 피해 보호를 위한 관개 및 하수처리 시스템 설계 훈련(Training of

Designers of Irrigation and Drainage System for Protecting the Drought and Flood Damages in Developing Countries)

② 개도국의 표준화 및 기상 전문가 훈련 (Training of Experts of Standardization and Meteorology of Developing Countries)

③ 개도국의 소규모 수력발전 건설 및 운영 전문가 훈련(Training of Expert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mall-Size Hydro-Power Plants of Developing Countries)

□ 금차 표제회의에서 유엔개혁문제 관련, 약소국들의 입장을 폭넓게 민주적으로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안보리보다는 유엔총회의 권능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G-77국가들에 대한 교섭시, 이를 G-4국가에 대한 대응 논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주카타르 대사관]

개발재원 고위급대화

지난 2005. 6. 27(월)~28(화)간 미국 뉴욕에서 개발재원 고위급대화가 개최된 바 외국인 직접투자, 개발을 위한 금융 및 기술협력분야 협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Ⅰ. 개발원조

□ 개도국 대표들은 EU, 일본의 원조 공여 계획을 환영하고, 약속이 예정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함.

□ EU측 참석자들은 2015년 0.7% 공약이 실제 집행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집행위 대표는 현재 EU 대외 원조의 절반이 아프리카국가에게 공여되고 있으나 향후 추가 증액되는 원조도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들에게 공여될 예정이며, 프로젝트 지원형식을 지양하고 교육, 위생 등 재정지원(budgetary support) 형태로 지원될 예정임을 밝힘.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책대화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게 될 것임을 강조함.

□ OECD(DAC) 대표는 국제원조가 증액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기존 공여국 외에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EU 신규가입국, 카타르, 오만 등 중동국가가 신흥공여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기대감을 표명함.

－그러나 이라크 지원 및 부채 탕감, 나이지리아 부채 탕감, 쓰나미 지원 여파로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국가에 대한 원조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함.

□ 참가자들은 원조액 규모뿐 아니라 원조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으며, 금년 3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90개국이 서명한 '원조 효율화에 관한 파리 선언'을 9월 정상회의 성과의 하나로서 모든 유엔회원국이 서명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일본 대표는 고이즈미 수상의 6.27(월) ODA 증액 발표내용을 소개하였고, 미국 대표는 부시 대통령

이 2002.3월 몬테레이 회의 계기에 향후 4년간 ODA 50%를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초과 달성하였음을 강조하고, 원조액 증액 시간표 제시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조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함.

□ 현재와 같은 ODA 급증 추세에 맞추어 개도국들도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추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

□ FAO 대표는 ODA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농업 분야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

Ⅱ. FDI 등 민간 개발 재원 활용

□ FDI 등 민간투자가 개발의 원동력이라는 데 의견이 많이 표명되었으나, 중남미 등 일부 중소득국들은 아시아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다른 지역의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선진국들은 개별 개도국들이 자신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며, 정치적 불안, 부패 만연, 제도가 미비된 곳에는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헝가리 대표는 체제 전환국으로서 EU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정비하였고, 특히 도로, 교통, 통신 등 인프라와 교육에 많이 투자한 결과 480억불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지속 가능 성장 조건을 만들었다는 사례를 발표함.

□ 또한 민간재원은 속성상 volatility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관한 prudential regulation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됨.

Ⅲ. 민간 송금의 개발 재원 활용

□ 현재 이민자의 본국 송금액 총액은 연간 1,27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선진국간 송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규모는 연 340억불 정도로 추산된다는 OECD(DAC) 발표가 있었으며, 미국 대표는 미국에서 개도국으로 송금되는 공식 금액은 약 280억불이라고 밝힘.

□ 참석자들은 이민자 송금액의 일부가 개도국의 개발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에 대해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금 비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함.

Ⅳ. 최빈개도국의 필요 충족 문제

□ 아프리카국가들의 특별한 수요 충족 필요성과 함께 최빈개도국(LDCs), 군소개도국(SIDS) 및 내륙 최빈개도국(LLDCs)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 또한 국가붕괴 위기에 있는 국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이 제기됨.

Ⅴ. 새로운 개발재원

□ 프랑스, 독일, 브라질 대표(룰라 그룹)는 새로운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최근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함.

- 기존 제안 중 항공료에 국제연대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다른 제안(IFF 시범사업시행, 송금편의제공)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공식 제안치 않았음.

□ 대부분의 발언자들은 룰라 그룹의 새로운 재원 마련 계획을 환영하였으며 미국은 동 계획은 환영하나 자국도 별도의 새로운 개발 재원 마련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동 계획에 참여치는 않을 예정이라 함.

□ 개도국 참석자들은 상기 새로운 개발재원은 기존의 ODA를 대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룰라 그룹은 동 새로운 개발재원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기존 ODA에 추가하여 발굴하려는 것임을 강조함.

[자료:주유엔 대표부]

남아시아 지진 · 해일 피해지원 국제감사

Ⅰ. 아체 · 니아스 재건 · 복구 위원회 (Aceh and Nias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Board)

1. 구성일자

□ 2005. 4. 16(각 위원회별 위원들은 4. 30 임명)

2. 하부조직

1) 실행위원회(Executive Board) : 공여국들과 project 협의, 승인 및 집행 기능

□ 위원장 : Kuntoro

□ 부위원장 : 아체주 부지사

□ 서기 및 위원 8명 : 기획, 기관발전 및 능력배양, 주택 및 기간산업, 경제, 종교 및 사회, 교육 및 보건, 재정, 홍보분과 등

2)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 재건 · 복구관련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steering committee 역할도 수행)

□ 위원장 : 정치 · 인권 · 법률 조정장관

□ 서기 : 국가개발계획청장

□ 위원 : 복지조정장관, 경제조정장관, 재무장관, 공공사업장관, 아체주 의회의장, 북부 수마트라 주지사, 아체 경찰청장, Syah Kuala 대학총장, Metro TV 사장 등 총 17명

3)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 : 사업집행 관련 제반 감독 기능

□ 위원장 : Addullah Ali

□ 서기 : J. Hadi Sumarto

□ 위원 : 인니적십자사 총재, 인니 전환경장관 등 총 7명

3. 참고사항

□ 상기 3개 하부조직 중에서 실행위원회는 반다아체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위원장이 공여국들을 접

촉하는 등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실무직원들의 채용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까지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감독위원회에 외국 공여국 대표 및 국제 NGO 단체 대표들의 포함 문제는 향후 쓰나미 국제 감사회의의 후속회의 등을 통해서 인니 정부와 공여국 대표들간 협의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됨.

Ⅱ. 공여국(기관)별 자금 집행방식과 사업 추진현황

1. 자금 집행방식 개요

1) 주요 공여국 사업

□ 호주(7.87억불), 일본(1.46억불), 미국(3.5억불), 독일(0.7억불) 등 주요 공여국들은 현재 인니 정부와 양자협의, MOU 체결들을 통해 이미 주요 프로젝트를 합의하고 있으며, 자금은 직접 집행

2) 우리나라 포함, 일반 공여국들의 사업

□ 각국이 희망하는 사업계획서를 조만간 상기 아체 · 니아스 재건복구위원회와 협의, 사업을 시행하고 자금은 각 공여국이 직접 집행

- 인니 정부와 구체 프로젝트를 합의시, MOU를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건설회사 등 선정 절차

3) 국제기구 자체사업

□ ADB(3.72억불), UN(UN 각기구 합계 : 7.23억불), World Bank(1.25억불) 등은 하기 다자신탁기금에 일부 기여한 부분 이외 자금을 각 기구들이 직접 집행

4) World Bank를 통한 다자신탁기금 사업

□ EC 및 유럽국가들(20개국)이 참가하여 총 5억불 규모 신탁기금을 마련, 인니 정부가 구체적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자금은 World Bank가 집행

- EC : 2.6억불
- 화란 : 1억불
- IBRD : 0.25억불
- ADB : 0.1억불

□ 5.10 제1차 조정회의를 소집, 2.5억불 규모 사업을 승인

5) 인니 정부 예산사업

□ 인니 각 부처별로 아체 및 니아스 복구사업비로 2005년도 예산에 2.1조Rp(2.2억불) 배정

□ 동 예산은 각 부처가 아체 재건 · 복구 위원회와 협의 자체 집행

2. 사업 추진현황

1) 주요 공여국

인니 정부는 그동안 5천만불 이상 지원을 서약한 주요 공여국들에 대해서는 양자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포함, 일반 공여국들에 대해서는 아체 · 재건 복구 실행위원회 설립시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옴.

□ 미국

– 인니 정부와 아체 · 재건 MOU 체결(5.8)

• 아체 서부해안지역인 반다아체–믈라보간 240㎞ 도로건설

• 2.45억불 규모사업으로 공개입찰 개시: 인니 및 미국 기업대상

– USAID를 통해 지방정부 재건, 교육, 위생, 보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일본

– 도로건설, 위생, 교육 분야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 호주

– 인니 정부와 구체프로젝트 협의 중

– 독일과 공동 병원 건설 프로젝트 협의중 (Zainoel Abidin Hospital 등)

– 아체 주민들의 보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중

□ 독일

– 호주와 공동 병원 건설 프로젝트 협의중(독일은 의료 장비 공급 예정)

– 식수, 위생, 의료, 건물 수선, 학교 건설 등 사업

2) 우리나라 포함 일반 공여국

□ 우리나라

– 우리가 희망하는 10개 재건 · 복구 사업을 인니 정부(국가개발 계획청)에 기 제시하였으나, 최근 아체 · 니아스 재건 · 복구 실행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동 위원회측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양식에 따라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청(5.6)

– 이에 따라 본부에서 우리 정부의 구체사업안을 재확정시(연호(2)), 이를 토대로 아체 · 니아스 재건 · 복구 실행위원회와 구체 프로젝트를 협의 예정

□ 중국

–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한 재건마을 건설 예정

3) 국제기구

□ World Bank, ADB, UN 등은 각 기구별로 재건 · 복구 사업을 전개중이며 국제기구들은 대규모 기간산업 프로젝트 보다는 주민들의 능력배양, 지방정부 재정비, 아동심리치료, 위생, 보건, 교육 등 재건 분야 사업에 중점 투자

4) World Bank 주관 다자신탁기금

□ 동 신탁기금 조정위원회(신탁기금 참여공여국, Kuntoro 아체 재건복구 실행위원장 등 인니 정부 대표)는 5.10 제1차 회의를 열고 신탁기금 5억불 중 절반인 2.5억불에 대한 사업을 승인함.

– 향후 2년간 1000개 마을에 주택 2만호 건설, 3만호 수선사업 : 1.5억불

– 토지대장 복구, 토지소유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사업 : 0.28억불

– 시골지역 공동체 복구사업(6,000개 소기업 자금 지원, 주민 교육 등) : 0.54억불

– 도회지역 공동체 복구사업(도로, 다리, 학교, 위생, 전기, 하수도 등) : 0.18억불

□ 상기 사업 승인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입안, 추진 예정

Ⅲ. 국제기구에 의한 자금집행 포함, 재건복구사업 집행의 문제점 (공관 의견)

□ 대부분의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이 집행방식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결국 지원금을 인니 정부 예산사업으로 주지 않고 직접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각국의 희망사항이 상이한 관계로 인니 정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한 재건 · 복구 청사진(인니 정부의 예산사업을 전제)의 효율적인 이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다양한 주체인 각 공여국(기관)들에 의한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향후 공여국들에 의한 아체 재건 · 복구 사업 허가관련 인니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아체 재건복구 위원회와 직접 처리된다는 것이 아체 재건복구 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지만, 인니 중앙정부와 아체 재건복구 위원회간 명확한 업무분장, 역할 조정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참고로 5월초 Kuntoro 재건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인니 정보통신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Intel사에 대해 아체 전지역의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승인하였고, 최근에는 화란 정부가 요청한 Malahayati 항구 보수사업을 승인함.

□ 한편, 아체지역의 안전문제(분리독립운동), 원격지(자카르타로부터 1000㎞ 거리), 아체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판정문제, 인니 중앙 · 지방 공무원들의 부패문화 등은 향후 아체 재건 · 복구 프로젝트 사업 추진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짐.

□ 연호(3), 긴급구호용 각국의 지원 컨테이너가 1500개나 메단 항구에 아직도 야적되어 있는 상황, 인니 정부가 작성한 재건 · 복구 청사진의 통계가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주인도네시아 대사관]

미국 원조동향[1)]

Ⅰ. 미국 개발원조의 전략적 기초와 새로운 방향

1. 미국 개발협력의 기초

1) 개발원조 체계

□ 미국 개발원조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가 아닌 분권화된(decentralised) 형태로 운영됨.

- 국무부의 외교정책 지침(foreign policy guidance)이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유관 부처들 간의 상호연계가 대단히 약하며 상호공조 체제도 느슨함.
- 그 이유로는 미국 외교정책의 동기가 매우 다양하고, 동원되는 재원의 규모가 크며, 권한이 과도하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의 전통, 그리고 대외원조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USAID가 양자원조의 중추기관이며 그 외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보건부, 평화봉사단 등 50여개 정부부처가 대외원조에 관여하고 있음.

□ NGO, 민간재단, 씽크탱크, 의회 등도 대외원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전략적 지향방향

□ 미국은 개발원조에 있어서 하나의 단일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부재한 대신, 보다 실용적인(pragmatic)인 방식을 활용하는 바, 이는 다음 두 단계로 이루어짐.

- 우선, 개발원조 전략 관련, 개발원조는 미 외교

1) 본 내용은 DAC의 Peer Reuew(2002)를 요약 정리한 것임.

정책의 불가분의 일부(integral part)임.

- 국무부가 발표하는 미국 국제관계 전략계획(United States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Affairs)은 미국 국가이익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문건인 바, 그 1999년판에서는 개발원조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자주 언급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경제개발, 범세계적 경제성장과 안정, 민주주의와 인권, 인도적 원조, 세계환경, 인구 및 보건 등

- 상기 전략적 틀 아래에서 국무부와 USAID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함. USAID는 동 전략계획에서 세계-지역-국가별 구체적인 원조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단, 미국 원조전략에서는 빈곤감소를 원조제공의 논리로써 명시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음.

□ 9.11 테러사건 이후 USAID는 원조전략을 수정하여 ①경제성장, 농업 및 무역 ②세계보건 ③민주주의 분쟁, 인도적 지원 등 3대 기둥('pillars'), 그리고 ④Global Development Alliance(GDA) 등 4개 이슈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앞의 세 가지는 기술적 전략목표이며 ④는 사업 추진방식과 관련됨.

- GDA는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과제들이 복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정부부처, NGO,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미국 내 원조관련 행위주체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발원조 관련 상호공조 및 재원조달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개발자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함을 목표로 함.

2. 1998년 이후 정책 및 조직 개혁

1) 개발원조정책의 변화

□ 부시 대통령은 2002년 New Compact for Development를 발표하여 빈곤퇴치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포함됨을 천명함.

-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은 ODA 규모를 50억 달러 증가시킨 바 이 추가재원은 MCA (Millenium Challenge Account)[2]에 제공됨.

- 아울러 동 이니셔티브는 미국 정부부처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미국은 2002년 10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도 개발과 관련한 이슈를 반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MCA를 통한 미국의 핵심 개발원조의 50% 증가, 원조효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측정가능한 결과(measurable results) 고수, 세계은행 등의 개혁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 효과성 제고 등이 있음.

□ 개발정책에 있어서 단기(short-term)적 국가이익과 장기(long-term)적 개발관련 고려사항 간에는

2) 〈참고자료 1〉 참조

긴장관계가 있는 바, 공여국이 원조제공시 국가이익을 우선할 경우 수원국의 개발 필요와 일치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 DAC는 이러한 양자간 긴장관계를 인식한 바, 개별국가의 이해가 반영되는 정도를 낮추고자 ('lower the flag')하는 개발정책 마련으로 이어짐.

□ 미국은 개발관련 국제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 UNFPA(UN인구활동기금)에서 탈퇴하는 등 개발원조 부문에서의 일부 정책은 논란의 소지를 남김.

2) 조직 및 운영체제 개편

□ 미 의회는 USAID를 비롯한 원조관련 기관이 개발프로그램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 온 바, USAID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직체계 등을 개편하여 왔음.

□ 미 행정부의 전반적인 관리 및 성과개선 추세에 맞추어 USAID도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책 및 예산부문 강화, 3대 기둥 각각을 담당하는 부서(bureau) 신설, 지역담당부서의 역할 명료화, GDA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reorganisation)을 단행함.

3. 개발원조에 대한 정치적 감독 및 대중의 개발원조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이슈

1) 법적 정당성의 확보

□ 미국 입법부는 3권분립체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외원조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의회는 행정부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의회의 견해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회의 지침은 원조프로그램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기도 하며, 이 지침은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입법부의 지침이 대외원조에서 종종 활용됨.

□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이 현재 미국의 유일한 대외원조 관련 법률임.

- 1961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의회에서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얻지는 못함.
- 그 결과, 예산배정 및 지침 수립 시, 그 유형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 원조효과성이 저해됨은 물론, 현장 사무소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 및 입법에 있어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미국 개발원조의 방향에서는 이 국가이익 개념을 함께 반영하는 한편, 원조공동체가 원조효과성 향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개발협력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낮은 이해

□ 미국 국민들은 개발원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후생(unsustainable welfare)'이라는 인식이 강함.

- 1995년 메릴랜드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개발원조에 할애하고 있으며 그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여론이 개발원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원조 기관과 일반 대중간 의사소통이 긴요함.

- 의회는 USAID가 기관의 사업현황과 성과 등 활동상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원조 유관기관 및 NGO,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연대를 통해 개발원조 교육 및 주요 이슈의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Ⅱ. 미국 원조내역

1. 최근 미국 ODA 지원 현황

□ 2003년도 ODA 규모 : US$ 16,254백만(ODA/GNI 비율: 0.15%)

- ODA 총액 기준으로 DAC 22개 회원국 중 1위이나, ODA/GNI 비율 기준으로는 최하위임.
- 총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
- 미 행정부는 2004년 초 1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MCA(Millenium Challenge Account)를 설치함

〈미국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 US$ 백만)

1992-93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ODA	ODA /GNI
10,916	0.17%	9,955	0.10%	11,429	0.11%	13,290	0.13%	16,254	0.15%

※ 자료 :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14

2. 2003년 미국 ODA 세부내역

1) ODA 규모 : US$ 16,042백만(2003년)

- 양자간 ODA 규모 : US$ 14,594백만(90%)
- 다자간 ODA 규모 : US$ 1,661만(10%)

〈상위 10대 수원국〉

(단위 : US$ 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2003 평균)	총 ODA 대비점유율 (2002~2003 평균)[3]
1	이집트	831	5.1
2	러시아(OA)	808	-
3	이라크	775	4.8
4	콩고민주공화국	749	4.6
5	이스라엘(OA)	666	-
6	파키스탄	656	4.1
7	요르단	622	3.8
8	콜롬비아	513	3.2
9	아프가니스탄	427	2.6
10	이디오피아	374	2.3
합계		**6,421**	**34.1**

※ 자료 :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p.104

2) 유상/무상원조 규모

- 무상원조(grants and grant-like contribution): US$ 16,294백만
- 유상원조(Development lending and capital): US$-1,709백만(차관회수)

3)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공적원조(OA) 대상국에 해당하므로 제외함.

〈상위 10대 수원국 변동추이〉

(단위:%)

순위	국명 (1992~93)	%	국명 (1997~98)	%	국명 (2002~03)	%
1	이스라엘	12.2	이스라엘	12.7	이집트	5.1
2	이집트	11.3	이집트	10.3	이라크	4.8
3	터키	3.6	엘 살바도르	4.2	콩고민주공화국	4.6
4	엘 살바도르	2.3	소말리아	3.1	파키스탄	4.1
5	방글라데시	2.3	필리핀	2.1	요르단	3.8
6	인도	1.7	콜롬비아	1.5	콜롬비아	3.2
7	수단	1.7	인도	1.1	아프가니스탄	2.6
8	북 마리아나	1.7	자메이카	1.1	이디오피아	2.3
9	파키스탄	1.5	파키스탄	1.1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2.2
10	코스타 리카	1.4	파나마	1.0	인도네시아	1.4
합계		**39.7**		**38.2**		**34.1**

※자료:OECD, The DAC Journal: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32

3)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지원의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15% 이상의 지원이 유지되고 있음.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유럽	6.6	2.0	7.5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20.7	18.1	7.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4.1**	**18.1**	**31.2**
북중미	14.1	16.1	5.5
남미	2.9	7.5	9.4
중동	22.7	22.7	14.4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10.9**	**8.9**	**17.5**
극동아시아	5.0	5.2	5.3
오세아니아	2.9	1.3	1.5
합 계	**100**	**100**	**100**

※자료:OECD, The DAC Journal: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2000년대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및 서남아/중앙아시아 지역 지원비중이 크게 증가함. 반면, 기존 중점지원대상 지역이던 중동,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지역 지원규모는 대폭 감소함.

4)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기준)

- 중저소득국에 46.9%, 최빈개도국에 30.6%를 지원하고 있음.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최빈개도국(LDCs)	17.0	18.1	30.6
기타저소득국(Other LICs)	10.4	10.4	20.0
중저소득국(LMICs)	44.4	44.8	46.9
고중소득국(UMICs)	4.4	4.6	2.5
고소득국(HICs)	–	–	0.0
MADCT[1)]	23.8	22.1	0.0
합계	**100**	**100**	**100**

1) MADCT: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자료:OECD, The DAC Journal: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32

5) 2003년도 미국 분야별 지원실적

- 사회 및 행정인프라 34.0%, 다부문 14.8%, 프로그램 원조 13.8%, 긴급구호 13.2%등의 순.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분야		2003년도
사회 및 행정 인프라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교육(기초교육)	1.3(1.1)
	보건(기초보건)	3.3(3.2)
	인구	7.1
	식수 및 위생	0.5
	정부 및 시민사회	13.9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7.9
소 계		**34.0**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교통 및 통신	0.2
	에너지	0.6
	기타	1.3
소 계		**2.2**
생산 (Production)	농업	1.0
	제조업, 광업 및 건축	4.1
	무역 및 관광	0.6
소 계		**5.6**
다부문(Multisector)		14.8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13.8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3)]		12.3
긴급원조(Emergency aid)		13.2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4.0
기타(Unspecified)		–
합 계		**100**

※자료:OECD DAC Journal: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19

Ⅲ. 주요 지원섹터 및 교차사안

1. 빈곤감소, 그리고 다양한 토대를 기초로 한 지속가능 경제성장

□ 미국의 핵심적인 개발원조활동 목표는 다양한 토대를 기초로 한(broad- based) 경제성장임.

□ USAID의 목표 및 전략은 명시적으로 빈곤감소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빈곤감소가 핵심 추진목표임. USAID는 다양한 토대를 기초로 한 경제성장 전략이 빈곤감소전략을 의미한다는 입장임.

□ 미국은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USAID 내에 경제성장, 농업, 통상담당국(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을 신설함
- 2004년 MCA(Millenium Challenge Account)를 설치하여 빈곤감소를 명시적인 목표로 함.

□ 그러나 미국은 ODA 목표를 빈곤국에 맞추고 있지 않으며, MDGs 달성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는 바, 이것이 USAID가 타 원조기관과의 공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다양한 토대를 기초로 한 지속가능 경제성장의 장려

□ 2001 회계연도에 USAID는 23억 달러를 경제성장 지원에 지출함(USAID 전체사업비의 약 1/3).

- 구체적인 지원분야로는 민간부문 개발, 통상개발, 공기업 민영화, 재정 및 금융분야 개혁, 농업개발, 소규모기업 경영 등이 있음.
- 인프라 개발 분야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바, 수원국이 인프라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프라 지원은 국제개발은행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입장에 기인함.
- 그러나 최근 신설된 MCA 수혜국들의 경우 대단히 큰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미국이 인프라 구축에 동 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 이 경우, 인프라 건설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수원국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1) 통상역량 배양

□ 미국은 개도국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접근(access)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무역은 소득창출과 아울러 아이디어와 혁신을 불러와 국내산업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입장임.

□ 통상역량 배양사업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USAID 및 기타 유관 정부부처가 100여개 개도국에서 통상역량 배양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999～2001 회계연도간 통상역량배양 사업부문에 13억달러가 지출되었으며 그 중 70%가 개도국에 지원됨.
- 주요 지원분야는 인적자원 역량 배양(2억5600만 달러), 무역 원활화(2억4500만 달러), 금융부문개발(2억3400만 달러) 등임.
- USAID는 전체 사업비의 1%를 동 부문에 지출

(2001 회계연도 8600만 달러)

□ 미국은 통상역량 배양의 우선순위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처간 공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최근 USTR은 무역역량 강화 및 부처간 공조가 임무 중 하나로 되어있는 부무역대표를 임명한 바 있음.

2) 농업부문 개발

□ 미국은 농업부문 개발과 관련, ①생산증대 ②시장 효율성 향상 ③시장 접근성 개선 ④무역 및 투자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원조사업을 추진해 옴. 아울러 미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식량지원 국가임.

□ 농업부문 개발 담당 주요기관은 농무부 소속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와 USAID임.

- 농업부문 관련 USAID의 예산규모는 계속 줄어들어 왔으나, 현 Natsios 청장 취임 이후 다시 동 부문에 주도적 역할을 맡고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1년 회계연도 USAID의 농업부문 지원규모는 2억 1백만 달러임(총 사업예산의 4%).

3. 사회 서비스

1) 보건

□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은 건강한 노동력과 아동들의 교육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시각에서 인명구조, 인구증가율 안정화, 보건상태 개선 등에 많은 지원을 제공함.

- 미국은 특히 재생보건분야가 개발의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짐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 부문에 있어서 세계 최대규모의 지원국가임.

□ 미국은 보건 부문 개발원조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음.

- AIDS 퇴치 세계기금 등 국제 보건 이니셔티브에 재원을 제공하고, AIDS 모자간전염 예방을 위한 5억 달러의 예산제공 등 양자간 개발원조 노력도 배가하고 있음.

□ 2001년 회계연도에 USAID는 14억 달러(사업예산의 19%)를 보건부문에 지출함.

- 주요 목표는 ①의도치 않은 임신율 감소 ②영아 및 아동사망률 감소 및 건강/영양상태 개선 ③임신/출산에 따르는 건강 위험 감소 ④AIDS 전염 및 사회적 영향 감소 ⑤전염병의 위협 감소 등임.

□ 보건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USAID는 동 분야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개발청 내 관련 전문가들을 세계보건국(Global Health Bureau)에 한데 모아 각종 기술지원 및 자문을 제공함.

□ USAID 외에 보건부도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 등을 통해 유관 지원을 제공(CDC의 경우 질병조사 및 연구역량 지원). USAID는 기타 유관 정부부처들과 공조하여 보건 관련 지원 제공을 추진하고 있음.

□ NGO도 미 정부의 보건사업 예산을 통해 개도국 내에 기초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

2) 교육

□ 미국은 교육이 건전한 경제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의 성장 등 개발의 기초로서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USAID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교육 관련 개발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음.

□ 교육 섹터 관련 주요 행위자는 국무부와 USAID임.

□ 2001년 회계연도 USAID의 교육섹터 지원규모는 2억 8300만 달러(총 사업예산 대비 4%)로서, 25개 국가에서 사업 추진

- 주요 사업목표는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강화로서 특히,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교육의 질 및 공평성 개선을 강조함.
- 또한 NGO 단체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이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 미국은 민주주의와 good governance가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입장임.

□ 동 부문 지원에는 USAID 외에도 국무부, 국방부, 공화 · 민주 양당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 2001년 회계연도 기준 USAID의 동 부문 지원규모는 9억 5600만 달러(총 사업비 대비 13%)임.

- USAID 현장사무소의 80%가 민주주의 및 good governance를 전략목표로 설정.
- 주요 지원분야: ① 법률 및 법률체제 정비 ② 정치 과정의 강화 및 공정선거 수행 ③ 시민사회 개발 ④ 정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역량 강화 등
- 미 의회가 2000년 반부패와 Good Governance 법을 통과시킨 후 USAID는 부패척결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임.

□ OECD/DAC의 '폭력적 분쟁예방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안보체제 개혁은 governance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그러나 USAID는 군사, 치안 관련 개발분야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어있는 바, 이는 governance 관련 분야에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만들어 원조의 효과성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음.

5. 분쟁예방

□ USAID는 1994년부터 전후복구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분쟁관련 지원이 모든 개발 이슈와 관련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기존 분쟁예방에 대한 관여를 더욱 넓혀가고 있음.

- 현재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분쟁분석(conflict analysis),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등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방식임.

□ USAID가 마련한 분쟁예방 관련 전략은 개발원조가 분쟁의 역학(dynamics)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코자 함.

□ 이러한 분쟁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정부부처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함.

- 예컨대, 과거 많은 전쟁들이 경화기(small arms)에 의해 수행되어진 바, 경화기 담당부처(내무부 또는 법무부)와 국내-지역-국제적 차원에서 상호공조함으로써 경화기 불법거래 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USAID는 현지사무소에서 국별전략을 마련시 분쟁취약성 평가(Conflict Vulnerability Assessment)를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있음.

6. 비상사태 및 재난구호

□ 미국은 세계 최대의 비상사태 및 재난구호 제공국가로서 최근까지 연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 옴.

□ USAID 외에 국무부, 농무부, 국방부 등이 재난구호에 참여하고 있음.

- 국무부는 각종 국제구호기구에 재원을 제공하며 농무부는 USAID와 함께 식량지원을 제공함. 국방부는 군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난구호에 참여하나, 그 중 ODA로 계상되지 않는 부문들이 포함되어 있음.

□ USAID는 해외재난지원실(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을 통해 미국 각 정부부처의 재난구호 활동을 조율하는 한편, 비식량 지원을 NGO 및 UN 기구를 통해 제공함.

□ 2001년 회계연도에 USAID는 13억 달러를 재난구호 부문에 지출(USAID 예산의 18%)

7. 교차사안

1) 여성문제

□ USAID는 여성문제를 개발분야 내에 주류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여성개발담당실(Office of Women in Development)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함. 2002년 회계연도 예산은 1천만 달러임.

□ USAID의 모든 실행전략계획 마련시에 고려되는 기술적인 이슈에 있어서, 양성평등 관련 분석(gender analysis)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성과관리 체계 및 사업평가시에도 여성문제에 민감한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음.

□ 여성개발담당실은 아울러 NGO 단체 등 USAID의 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공조하여 여성문제를 다루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2) 환경

□ USAID는 환경보존과 지속가능개발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삼림 및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에너지 효율개선 등 다양한 환경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함.

- 2001년 회계연도 기준 동 부문 USAID 예산은 5억 9천만 달러임(총 사업비의 8%).

□ USAID는 환경문제담당실(Office of Environment)이 환경문제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으나 타 지역국 및 현지사무소도 여러 환경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함.

□ USAID의 환경문제 대한 접근방식은 해당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USAID는 기술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NGO, 타 공여국, 국제기구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과 파트너쉽('Water for Poor Initiative', 'Clean Energy Initiative', 'Congo Basin Forest Partnership' 등)을 통해 환경개발문제를 다루고 있음.

Ⅳ. 정책일관성

□ OECD/DAC의 빈곤감소 가이드라인은 주요 개발주제로서 다음 6가지를 제시 : 국제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국제금융, 식량 및 농업, 천연자원 및 환경 지속성, 사회적 이슈, 정부 및 분쟁
- 여기서는 국제무역, 농업, 구속성 원조의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일관성 현황을 검토

1. 국제무역

□ 미국은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며 개도국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을 장려함.
-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는 무역과 개발의 상호연계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2002년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장려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한 이후, 행정부는 농업부문 통상 개혁안을 마련
- 동 개혁안은 향후 5년간 수출보조금 철폐, 광범위한 관세 및 무역왜곡 국내조치의 감소 등이 주요 골자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수입관세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일부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관세를 부과
- 섬유, 의복, 신발, 가공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 미국 전체 수입물량의 6.7%에 지나지 않으나 관세수입은 USD 8.7 billion으로서 미국 전체 관세수입(USD 18.6 billion)의 46.8%에 달함.
- 대 개도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7.3%로서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 1.6%에 비해 높음.

□ 미국은 개도국의 미국시장접근이 용이하도록 일반특혜관세(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카리브해 분지 이니셔티브, (Caribbean Basin Initiative, 이후 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PA)로 대체됨), AGOA(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등의 조치를 추진

□ 미국의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정책은 재량적인 부분이 많아 자유무역체제 구축에 효과적이라고 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음.
- 미국은 개도국에 부여하는 특혜조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그로 인하여 정책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동 조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게 됨.
- 미국 원조담당 부처간 대 개도국 평가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예컨대, 무역대표부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개도국이 다른 원조프로그램에서는 원조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음.

□ 미국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 수출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원산지규정, 위생검역규정 등을 개도국이 충족하기 어려움.
- 이 점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는 검역 기타 통관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USAID도 최근 Trade for African Development and Enterprise Initiative를 추진하여 개도국에 무역역량배양 기술지원을 제공

□ 미국의 반덤핑법(anti-dumping law)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때 개도국들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

2. 농업정책

□ 다수 선진국들은 자국 농업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 결과 국내생산 증가와 국제농산물 가격 하락을 가져와 결국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기회가 제한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개도국 농산물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옴. 더욱이 이들이 찾을 수 있는 대안적 소득원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 빈곤상태의 심화로 이어지게 됨.

- 미국의 경우 막대한 시장의 규모로 인해 보조금 지급의 영향이 대단히 큼.

□ 미국정부는 연방농업개선개혁법안(FAIR, 1996년) 및 농촌보호및투자법안('Farm Bill', 2002년)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에 소득 및 가격보조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음.

- FAIR는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직접적인 소득보조로 전환하고, Farm Bill은 지원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들 법안은 모두 미국 내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와 납세자 및 개도국 농업 생산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

□ 이러한 미국의 농업정책은 USAID의 개도국 수출장려 지원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설탕 등 특정 농산물의 대미 수출 장려를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 USAID의 농촌개발활동 역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3. 구속성 원조

□ 1996년 기준 미국의 구속성 원조 규모는 전체 양자간 ODA의 3/4에 이름.

□ USAID의 양자간 ODA는 법률에 의해 미국 재화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02년 동 법률의 적용면제(waiver)가 승인되어 DAC의 ODA 언타이드화 권고안 적용이 가능해짐. 또한 미국의 주요 원조품목인 식량원조 및 free-standing 기술지원은 동 권고안 적용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권고안 실행이 미국 원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미국의 타이드 원조는 ODA의 비용효과성을 감소시키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저하시킴.

- 예컨대 식량원조의 75%는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만 수송토록 제한하여 50%에서 200%까지 운송비용의 추가부담이 초래됨.
- 기술지원의 경우 미국산 재화만을 이용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절한 것이 아님. 예컨대 수원국에 미국산 자동차만을 공급받도록 할 경우 수리부속을 구할 수 없을 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

□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는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Ⅴ. 개발원조 조직 및 관리

1. 조직 및 관리운영체제 개편 의의

□ 미국 개발원조 조직 변화의 역사는 조직 외부 특히, 미 의회의 압력에 대한 대응의 양상임.

- 의회는 원조조직 및 운영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게 하는 한편, 결집성(cohesiveness)을 높이는 역할도 함.
- 1978년 의회는 IDCA(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라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sation)을 입법, 설치하였으나 거의 실효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소멸함.
- 동 조직은 USAID, 재무부, 국무부 기타 유관 조직간 상호공조를 목적으로 하였음.
- 이후 1990년대에 USAID는 보다 전략적인 조직 재개편(re-engineering)을 추진하였음.
- 이를 통해 조직의 가치(corporate values)와 전략적 비전을 세움으로써 냉전 이후 USAID 설립 이래 가장 주요한 조직 현대화의 기초가 됨.
- USAID가 미국 개발협력 전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각종 사업 등이 투명하고 결과지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함.

2. 조직 개편

□ 미국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원조기관간 공조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기관간 상호 연계성이나 정기적 회합 및 의사소통이 강하지 않은 편임.

- 주요 개발원조 기관들간 공조는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유연함(flexible).

□ 주어진 역할 및 ODA 담당 규모 측면에서, USAID가 핵심 양자원조기관이며 국무부와 재무부가 핵심 다자 원조기관임.

- 전체적인 공조(co-ordination)에 관한 책임은 점차 백악관 산하의 NSC에 지워지고 있음.

1) USAID

-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미국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실행을 책임짐.
- 청장(Administrator)은 대통령, 국무장관 및 NSC가 수립하는 정책지침에 의거, 대외경제 및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함.
- USAID는 창설 당시 임시조직이었다가 1998년 이후부터 상설화됨.
- USAID는 원조프로그램 실행뿐 아니라 전략, 정책 및 원조경험의 피드백을 담당함.
- 2001년 기준 총 ODA의 1/2, 양자간 원조의 2/3을 담당[4)]
- 164개국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70개국에 상주사무소를 설치
- 조직도 : 〈참고자료 2〉 참고

4) MCC 설립 이후 변화함.

2) 국무부

- 미 외교정책 담당 주무기관으로서 다양한 대외정책을 실행함. 국무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제1 외교정책 자문역임.
- 개발협력 관련, UN 기타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함.
- 타 정부부처의 대외활동을 지원
- 개발협력 부문과 관련, 자체 전문성 부족 때문에 USAID에 의존하여 정치교섭에 의해 추진되는 원조 프로그램이나 국무부가 추진하는 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함.
- 국무부 내 주요 개발협력 관련 부서는 경제, 산업, 농무담당실, 그리고 정무담당실, 글로벌이슈 담당실 등임.

3) 재무부

- 개발협력 관련 문제는 국제업무실(Office of Internatinoal Affairs)내 국제개발, 부채, 환경 정책국이 담당
- 개발협력 관련 World Bank, 기타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정부부처간 상호협력 업무를 담당

4) 기타 유관부처

- 농무부 : 국제 식량원조 제공 담당
- 국방부 : ODA에 계상 가능한 관련업무(마약통제, 인도적 원조, 지뢰제거 등)를 담당
- 보건부 : 미국 내 난민정착, HIV/AIDS 및 기타 질병퇴치 업무 담당
- Peace Corps : 70여 개국에 7,000명의 봉사단원 파견. 독립적 지위이나 USAID와 긴밀한 관계 유지

5) NGO

□ 개발협력에 있어 NGO는 미국정부 및 일반대중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NGO의 의견은 다수 미국 국민들에게 개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대안적 입장으로 받아들여짐.

- USAID는 세계개발연대(Global Development Alliance)를 발표함으로써 NGO가 미국 개발협력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을 넓히는 한편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함.
- USAID는 민간협력담당실(Office of Private and Voluntary Cooperation)에서 NGO 관련 업무를 담당함.
- 광범위한 NGO 연대조직들(associations)은 USAID, 의회, 기타 정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조직원들의 관심을 대변함(예 : Interaction, Advisory Committee on Voluntary Foreign Aid(ACVFA) 등).
- 최근에는 빌게이츠재단, 터너재단 등 개인이 설립한 재단(privately-endowed foundations)들이 NGO에 참가하고 있는 양상임.

3. 조직적 상호공조(Organisational coordination)

□ 부처간 공조체제 부분은 미국 개발원조 조직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옴.

- 상호공조가 없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임시적으로 공조체제를 수립, 실용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체계적인 상호공조체제 구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NSC가 부처간 상호공조의 질적 향상을 책임지고 있음.

□ 국무부와 USAID는 개발원조를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하여 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4. 관리체제 개편

□ 미 의회가 정부성과결과법안(GPRA)을 제정한 후 USAID는 다년간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 및 연간성과 보고를 입안 및 실시하고 있음.

- 이는 동 법률이 의도하는 결과중심 관리방식(result-based management approach)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USAID는 보고체제 간소화를 통해 현장스탭의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보고의 신뢰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 결과중심 관리방식에 있어서 사업성과와 예산배정을 명료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럴 경우 각 실행부서에서 자체 성과평가를 진실하게 실시할 유인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부분임.

□ USAID는 미 의회의 지속적인 비판에 대응하여, 인적자원 관리/ 조달/ 재정관리/ 정보기술/ 전략적 예산수립/ 성과측정 및 보고 등 6개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직경영 개혁을 추진중임.

Ⅵ. DAC의 주요 권고사항

1. 개발원조 체계 전반 및 지향 방향

□ 개발을 위한 공동의 비전 마련

- 미국은 공통의 비전과 상호공조의 틀 아래 주요 개발원조 유관 부처들을 전략적으로 결속시키는 명시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의 개발 관련 부분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임. USAID는 이 체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 권고됨.

□ 국제적 파트너쉽의 공고화

- 미국은 당면 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파트너쉽을 지속적으로 추구, 강화해야 함. 이와 관련 DAC에서 개최되는 각종 포럼을 통해 회원국들의 경험 등을 습득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USAID의 Global Development Alliance 정책은 미국의 주요 개발원조 주체들 간 파트너쉽 및 공통의 비전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 정책은 타 공여국 및 수원국들에게까지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개발 이슈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 제고

- USAID는 타 정부부처 및 NGO와 연대하여 미국이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공약이 중요함을 대중들이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특히 미 의회는 USAID가 개발원조를 직접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발원조에 대한 대중 및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일관성

□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장려

-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정책 일관성을 향상시켜야 함. 개발관련 주제를 국가정책과 입법대화(legislative dialogue) 등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부처간 정책협의 메커니즘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함. USAID는 개발정책 일관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하며 NSC, 개발정책조정위원회 등과 공고한 실무관계를 추구해야 함.

□ 원조의 언타이드화

- OECD/DAC의 원조 언타이드화 권고안의 노력분담(effort-sharing) 원칙 및 미국 정부의 원조효과성 제고 의지에 입각하여 양자간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향상시키는 조치를 식별해내고 추진할 것이 장려됨.

3. 원조 관리 및 실행

□ 현장의 권한 강화

- USAID는 현장에 권한을 양여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체제개편의 시각에서 분권화의 한계점을 파악할 것이 권고됨. 원조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 수원국과의 공동노력이 중요함을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상호감독 및 공동학습 지원을 위한 체계를 서로 강화하기 위해 공동노력이 필요함. USAID 현장사무소는 이러한 상호협력에 참여함은 물론 이러한 협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initiate) 할 것이 장려됨.

□ 현장에서 미 정부부처간 상호공조

- 미국 정부는 USAID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원조 자금 제공 관행을 재검토하거나 혹은 원조현장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유관부처간 적절한 공조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 장려됨. USAID는 동 이슈를 검토하여 타 정부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장 상호공조 이슈는 NSC나 개발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보다 효과적이고 개발효율적인 원조배분

- 미국 정부 및 의회는 기존 이어마킹(earma-rking) 체제가 수반하는 전략적 비용 및 관리비용 기타 각종 결과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식량원조 전달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아울러 ODA 등 핵심적인 개발재원을 개발우선순위에 보다 더 잘 일치되도록 각종 옵션을 검토할 것이 장려됨.

□ 원조관리의 신뢰도 향상

- USAID는 보다 적극적으로 원조결과를 중시하는(result-based) 체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DAC 내에서 강력한 연대를 구성하여 국제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결과중심 원조접근방식을 도입,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USAID는 현재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는 바, 기존 지식기반을 보존하고 타 개발관련 정부부처에 대해 리더쉽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한편 미래 전략방향을 지원하는 기법(skills)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Millenium Challenge Account(MCA)[5)]

1. 설립배경

□ 2002년 2월 멕시코 몬테레이 UN개발 재원 국제회의에서 부시대통령은 "전지구적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계약 (new compact for global development)"을 주창하며 선진국은 원조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

□ 부시대통령은 상기 "새로운 계약"에 따른 선진국 원조제공 확대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Millennium Challenge Account(MCA)의 설립을 제안하고, MCA를 운용하는 별도의 기관인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 신설을 의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음. (2004.1월)

□ MCA는 외교적인 고려보다는 경제적 고려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그 동안 MCA 운용주체를 둘러싸고 부처간 경쟁이 치열했으나, 백악관의 별도기구로 설립하는 것으로 타협.

2. MCC 조직구성

□ MCC의 CEO는 이사회와 상원의 승인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함.

□ MCC의 이사회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미 무역 대표부, USAID청장, MCC의 CEO 및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

- 동 이사회의 구성에는 상원의 승인과 동의가 필요하며, 국무장관이 이사회 의장이 됨.
- 이사회는 회계연도 당 최소 4회 회의를 개최해야 함.
 (1차는 2.2 기 개최, 2차는 7월하순, 3차는 10월, 4차는 2005년도 1/4분기 예정)
- 이사회는 MCA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 조직구성원은 다양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에서 각각 차출해 구성 (100명 이하).

〈현 이사회 구성〉

성 명	직 급	이사회 내 직급
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의장
John W. Snow	재무장관	부의장
Rob Portman	미 무역대표부 대표	위원
Andrew S. Natsios	USAID 청장	위원
Paul V. Applegarth	MCC CEO	위원

5) 협력단 기획조정팀 내부 업무자료 인용.

3. MCC 정책 및 운영

□ MCC의 정책

- MCC는 미국의 원조정책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해외원조가 국익차원에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4 회계연도 MCA 예산으로는 10억불이 배정되었으며, 부시 대통령이 MCA 예산을 현재 미국 원조액의 약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2006년까지 50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동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는 공정한 통치(Ruling Justly), 경제적 자유촉진(Encouraging Economic Freedom), 국민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People) 등 16가지의 세부원칙을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16개 세부원칙〉

공정한 통치	경제적 자유 촉진	국민에 대한 투자
1. 시민자유 2. 정치적 권리 3. 표현 및 책임감 (voice and Accoun-tability) 4. 정부 효과성 5. 법의 원칙 6. 부패방지*	1. 국가신용등급 2. 1년 동안의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률 3. 회계정책 4. 무역정책 5. 규제의 정도 (Regulatory Quality) 6. 기업이 설립되는 기간	1. 보건 분야에 소요되는 공적비용 (GDP 퍼센트 기준) 2. 예방접종 비율:DPT3, 홍역 3. 초등교육 비용(GDP 퍼센트 기준) 4. 초등교육 이수율

* MCC는 세부원칙 중 부패방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MCC의 운용

- MCC이사회는 지난 2004년, 16개의 세부원칙을 기준 이상 달성했다고 평가되는 16개 국가를 선정한 바, 수혜대상국은 아르메니아, 베냉, 볼리비아, 카보 베르데, 그루지아, 가나, 온두라스,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몽고, 모잠비크, 니카라과, 세네갈, 스리랑카 및 바나아투 등임
 ※ USAID 지원국가가 아닌 나라도 포함.
- 또한, 상기 16개 국가에는 못 미치지만 부분적으로 MCA 수혜 요건을 갖춘 국가를 분기점에 있는 국가(Threshold Country)로 지정하여, 동 국가들이 수혜국가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함.

〈향후 수혜자 국가 후보 기준〉

년도	계획
2004	1인당 소득 1,435불 이하의 국가 중 IDA 융자 대상국가
2005	1인당 소득 1,435불 이하의 모든 국가
2006	1인당 소득 2,975불 이하(세계은행기준) 110개 최빈개도국

4. USAID와의 관련성

□ USAID와 MCC의 역할

- 앞으로 MCC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제한된 국가만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USAID 및 다른 기관을 통해 관리가 될 것임.

□ MC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MCC는 USAID의 영역을 월권하지 않으며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 일례를 USAID 청장이 MCC 이사회에 포함되어 수혜국가를 선정하는 것과,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USAID가 평가와 감독을 맡게 되는 것을 들고 있음.

□ USAID는 개발원조를 미국 국제 정책의 핵심요소로 하는 MCA 기금 마련 및 MCC 설립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며, 동기관이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MCC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5. MCC의 설립이 가지는 의의

1) 장점

□ 수혜국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방식으로 원조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음.

- DAC 가이드라인에도 제시한 바, 최근 원조동향은 수원국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음.

□ 원조의 증대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고, 특히 자유경제의 장려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

□ MCC에서 지원하는 원조는 대부분 장기적인 개혁과 계획에 맞춰져 있는 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미국의 원조기관은 미재무부, 평화봉사단(Peace Corps), 국방부, USAID 등으로 흩어져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MCC의 설립으로 해외 원조관련 전문가들의 KNOW-HOW를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새로운 개발소스를 발굴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임.

- Inter Action(미국 내 주요 대외원조 NGO의 모임)의 '미국의 대외원조 보고서'에 따르면, HIV/AIDS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 다른 5개의 별도기관이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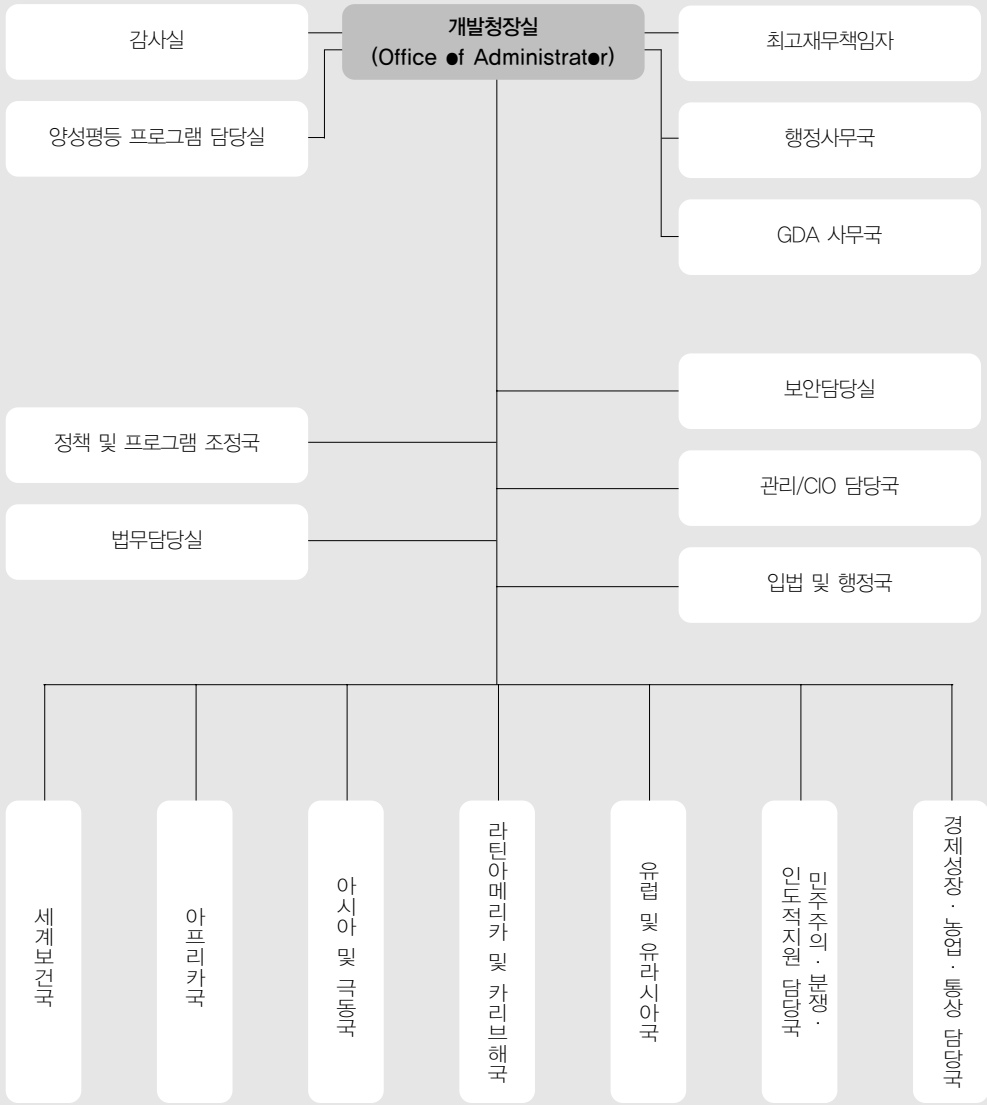
□ 지원활동에 관한 통합된 평가와 감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원조활동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단점

□ USAID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추가로 대외원조 담당기구를 신설한 것은 자원과 책임을 더욱 분산시키는 행위이며, 일선에서는 다수의 원조기관이 거의 조정 없이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바, 대외원조의 일관성 결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참고자료 2

USAID 조직도 (일부생략)



네덜란드 대외원조 개관[6)]

Ⅰ. 원조 정책

1. 개요

□ 네덜란드 ODA의 주요 목적은 빈곤완화(poverty reduction)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수원국 내 자국 공관에 책임을 대폭 이행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분야별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등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고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개발협력에 관하여 네덜란드 의회가 공식적인 영향력(formal influence)을 가장 많이 행사하지만 시민사회 단체, 즉 NGO, 기업, 행정자치단체, 연구소 및 대학 또한 ODA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ODA 규모는 GNP의 확정된 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므로 GNP가 증가하면 ODA 규모 또한 늘어남. 기존 인력으로 늘어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다자간 기구와 협조금융협력을 체결.

□ 1998년 ODA자금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17+4' 파트너십 국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30개의 분야별(주제별) 수원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네덜란드가 지원하는 국가의 수는 많은 편이며 수원국 분류기준에 대한 찬반논의 또한 계속되고 있음.

□ 네덜란드는 ODA 실행에 있어서 민간단체 및 NG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ODA의 10%를 'Four Pillar+1' 그룹이라 불리는 5개의 주요 NGO들에게 배분하고 있음.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PRSP)를 공

6) 본 내용은 DAC의 Peer Review(2002)를 요약 정리한 것임.

여국 조화 및 정책대회의 실행, 평가, 감시 프레임 워크로 적극 활용하여 수원국 주도적인(country-owned) 전략을 지원하고 있음.

2. 네덜란드 개발협력의 발전과정

□ 1950년대 처음으로 기술협력을 소수의 식민지 또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게 지원함으로써 네덜란드의 공적개발원조가 시작됨.

□ 1960년대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신흥 독립 국가들을 돕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부흥하여 급속도로 발전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음.

□ 1990년대부터 현재 개발협력정책의 기반을 쌓기 시작함.

- 'A World of Difference(1990)', 'A World in Dispute(1993)' 및 'Aid in Progress(1995)'을 제작하여 냉전 종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하는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착수함.
- 주요 전략적 변화로 대외정책 및 개발협력 정책 관련 조직의 합병, 재외공관으로 사업이행 및 실행과정의 간소화를 꼽을 수 있음.

3. 개발협력의 정책 및 전략

□ 빈곤완화(Poverty Reduction)

- 네덜란드의 개발협력은 가시적인 빈곤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 네덜란드 국민들은 빈곤완화가 개발협력의 가장 고귀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인식하고 있음.
- 빈곤완화를 개발협력의 전략적 틀로 선정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국제 공여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식(ownership), 분야별 접근방법(sector approach) 및 조정·일관성(coordination and coherence)을 흡수할 통합성 있는 틀을 제공함.

□ 주인의식(Ownership)

- 네덜란드 개발협력에 의하면 공여국 원조는 예측가능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수원국은 개발의 전략적 기획과정을 주도하고 이를 시민사회와 함께 분야별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음.
- 주인의식과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운영개념 및 수원국의 역량 강화 등 최근의 원조사회에서 중시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분야별 접근방법(Sector Approach)

- 현재 네덜란드가 장기적 양자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국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의 필수조건임.
- 네덜란드는 이런 접근방법을 개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국가 역량을 강화시키며 공공기금을 활용하는 데 더욱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함.
- 네덜란드는 다른 공여국도 동 접근방법을 수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최근 네덜란드는 PRSP에 전략, 실행, 공여국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의 초점을 두고 있음.

□ 조정 및 일관성(Coordination and Coherence)

- 이상적으로 네덜란드는 모든 공여국과 수원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협력과 공동작업을 통

하여 각각의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분야별 접근방법이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정 · 조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 다른 분야의 부적절한 정책이 ODA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본부 및 현지에서의 일관성을 강조함.

4. 개발협력 관계자

□ 네덜란드의 개발협력 모델은 NGO, 의회의원, 지식인 사회 및 정부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서 네덜란드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

- 이런 체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간척지를 개발한 네덜란드의 역사로부터 유래되어 사회적 합의 및 평등을 중시하는 네덜란드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 네덜란드 개발협력은 다자주의(pluralism)를 전제로 하며 합의를 기반으로(consensus-based) 한 절차를 중시함.

□ 의회

- 네덜란드 의회(국회)는 개발협력 장관이 제시한 이니셔티브를 참고로 개발협력의 목적 및 방향성을 수립함.
- 의회는 특히 네덜란드 내 특별 이해집단(NGO,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함.

□ NGO

- 네덜란드 사회의 기반이 되는 4개 기둥(four pillar) 즉, 가톨릭, 신교도, 인도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각각의 NGO가 있으며 동 기관들은 ODA 자금의 10%를 20년 동안 매년 배분받아 왔음.
- 종교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1970년대부터 GNP의 0.7%를 ODA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Ⅱ. ODA 지원현황

1. ODA 규모

□ 2003년도 ODA 규모 : US$ 3,981백만(ODA/GNI 0.8%)

- 'G-7 of ODA' 라고 불릴 만큼 GNP의 0.8%를 ODA 예산으로 활용함.
- 네덜란드는 ODA 규모를 GNP의 확정된 퍼센트로 정하였으므로 GNP가 증가하면 ODA 규모 또한 늘어나는 체제임.
 - 1997년부터 경제가 매년 3~4% 성장하여 ODA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 2003년 ODA 총액기준으로 볼 때 DAC 22개 회원국 중 미국(16,254백만불), 일본(8,880백만불), 프랑스(7,253백만불), 독일(6,784백만불), 영국(6,282백만불) 등에 이어 6위이며 ODA/GNI기준으로 볼 때 3위임.

2. 양자간 ODA

□ 양자간 ODA 규모 : US$ 2,951백만(74.1%/DAC 평균 72.2%)

〈네덜란드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 US$ 백만, %)

1992-93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2,639	0.84%	3,135	0.84%	3,172	0.82%	3,338	0.81%	3,981	0.80%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4

□ 무상원조 규모 : US$ 3,084백만(77.5%)

- 1990년대부터 양자간 ODA 모두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과거 대개도국 차관을 연간 US$ 100~200백만 회수함.
- 2003년 기술협력이 US$ 698백만로 양자간 ODA의 2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NGO 지원금이 US$ 660백만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음.

3. 다자간 ODA

□ 다자간 ODA 규모 : US$ 1,030백만(25.9%)

- 2003년도 기준으로 유엔기구에 대한 지원 비율이 37.3%로 가장 높으며 세계은행 및 유럽공동체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각각 26.2%, 24.3%로 뒤를 이음.

□ 정책 방향

- 늘어나는 ODA 규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자간 기구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국제기구의 성과에 대한 네덜란드 의회의 회의적 시각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증액은 불투명함.
- 정책적 일관성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네덜란드는 주요 다자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유럽연합 내의 정책대화 및 조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도 다자간 ODA지원 현황〉

(단위: US$ 백만)

다자간 기관		2003년도
세계은행(World Bank)	IDA	162
	기타	108
소계		**270**
지역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 은행(AfDB)	34
(Regional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 은행(ADB)	23
	미국간 개발 은행(IADB)	1
	기타	1
소계		**59**
유엔기관	UNDP	98
(United Nations Agencies)	WFP	-
	UNICEF	38
	UNHCR	46
	기타	202
소계		**384**
유럽공동체(EC)	EDF	130
	기타	120
소계		**250**
기타 다자기구	IFAD	12
	IMF	14
	기타	41
소계		**67**
합계		1,030

4. 수원국 선정 및 지원

□ 개요

- 1998년도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1개의 파트너십 국가(partnership countries)를 선정하여 집중적 · 장기적인 협력구조를 약속하고 32개 분야별 협력 국가(thematic countries)를 선

정하여 한정적인 규모의 개발협력 지원을 유지하고 있음.

□ 파트너십 국가 선정 기준

①빈곤정도(degree of poverty)

②수원국 정부의 좋은 정책(good policy) 수립 의지

③선정(good governance)

〈1998년 선정된 파트너십 국가〉

파트너십 국가 (Partnership Countries) 21개국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부르키나 파소,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마케도니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스리랑카,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 예맨, 잠비아(+이집트,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자치구, 남아공)
분야별 지원국 (Thematic Countries) 32개국	환경	브라질, 카보베르데,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몽골, 네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세네갈
	인권 · 안보 선정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중국,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온두라스, 케냐, 몰도바, 나미비아, 네팔, 르완다
	민간부문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카보베르데, 중국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몰보다, 나이제리아, 페루, 필리핀, 태국
	지속가능 개발약정 체결국	베냉, 부탄, 코스타리카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과 같은 큰 파트너십 국가 내에서는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지원규모 결정기준

–수원국의 니즈(needs) 및 성과(performance)를 감안한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을 토대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2000년도부터 노력중이나 아직까지 이러한 예산배정 방법은 참고로 쓰이는 배분체제(reference allocation system)에 지나지 않음.

• 니즈(needs) 규명 기준은 IDA 자격, 부채변제율, 다른 수원국 재원의 중요도

• 성과(performance) 규명 기준은 거시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인권 기록

□ 10대 수원국

–2003년에도 네덜란드 ODA의 10대 수원국의 대부분이 최빈개도국(LDCs) 또는 저소득국(LICs)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임.

• 동 국가들에 대한 지원비율은 전체 ODA의 약 22.9%(양자간 기준)에 그쳐 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개혁 이후에도 네덜란드는 원조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1980년 및 1990년대 초 10대 수원국은 대부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같은 아시아 국가 또는 안틸레스와 같은 네덜란드령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가나, 우간다, 모잠비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늘어남.

• 이런 변화는 빈곤완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지정한 네덜란드 개발협력의 정책 및 비전에 부합됨.

〈2003년도 상위 10대 수원국 지원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 백만, %)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2003 평균)	점유율 (2002~2003 평균)
1	콩고민주공화국	178	4.6
2	탄자니아	117	3.1
3	인도네시아	106	2.8
4	인도	105	2.7
5	아프가니스탄	83	2.2
6	가나	81	2.1
7	볼리비아	56	1.5
8	방글라데시	56	1.3
9	우간다	52	1.3
10	모잠비크	51	1.3
합계			22.9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32

〈상위 10대 수원국 추이 (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순위	국명 (1982~83)	%	국명 (1992~93)	%	국명 (2002~03)	%
1	인도네시아	6.7	인도	4.0	콩고민주공화국	4.6
2	인도	5.4	구 유고연방	3.7	탄자니아	3.1
3	네덜란드령 안틸레스(OA)	4.8	네덜란드령 안틸레스(OA)	3.1	인도네시아	2.8
4	방글라데시	3.8	방글라데시	2.3	인도	2.7
5	수리남	3.6	수리남	2.2	아프가니스탄	2.2
6	탄자니아	3.4	모잠비크	2.2	가나	2.1
7	케냐	3.2	케냐	1.9	볼리비아	1.5
8	수단	2.2	탄자니아	1.9	방글라데시	1.3
9	버키나 파소	1.9	페루	1.5	우간다	1.3
10	파키스탄	1.8	파키스탄	1.4	모잠비크	1.3
합계		**36.8**		**24.2**		**22.9**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32

5.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2002~2003년 네덜란드 개발원조의 지역별 분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US$ 1,619백만(48.5%)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남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은 US$ 537.4백만(16.1%)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1982~83년 총 ODA의 33.1%, 1992~93년 37.6%를 차지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2002~03년에는 48.5%로 크게 증가함.
- 아시아(서남 · 중앙 · 극동)에 대한 지원은 1982~83년 35.2%, 1992~93년 21.9%에서 2002~03년에는 26.6%으로 감소함.
- 남미지역(북 · 중 · 남)이 1982~83년 25.3%, 1992~93년 27%에서 2002~03년에는 11.7%으로 20년 사이 가장 급격한 축소를 보임.
- 기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지역	1982~83	1992~93	2002~03
유럽	0.8	6.9	7.0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2.3	1.9	0.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3.1	37.6	48.5
북중미	13.0	14.1	4.3
남미	12.3	12.9	7.4
중동	3.0	4.7	5.2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21.6	15.8	16.1
극동아시아	13.6	6.1	10.5
오세아니아	0.2	0.1	0.1
합계	**100%**	**100%**	**100%**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32

6.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2002~03년도 최빈개도국(LDCs)에 48.9%, 중저소득국에 24%를 지원

-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지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인도 등 중저소득국(LMICs)에 대한 지원이 25.6%로 소득 그룹별 분류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지역	1982~83	1992~93	2002~03
최빈개도국(LDCs)	35.1	34.8	48.9
기타저소득국(other LICs)	34.6	24.0	24.0
중저소득국(LMICs)	19.4	28.9	25.6
고중소득국(UMICs)	2.7	4.1	1.6
고소득국(HICs)	–	–	0.0
MADCT[1]	8.2	8.3	0.0
합계	**100%**	**100%**	**100%**

주1) MADCT :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32

7. 분야별 지원현황(2003년도)

□ 개요

- 네덜란드는 수요주도형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예산목표(budget target)를 설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환경 및 여성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폐지함.
- 2000년에만 약 US$ 342.5백만을 부채탕감, 예산지원 등 거시경제지원을 위하여 투자함.

□ 분야별 변화추이

- 원조예산의 큰 비중(24.6%)을 사회 및 행정 인프라에 지원함.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분야		2003년도
사회 및 행정 인프라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교육(기초교육)[1]	7.1%(4.8%)
	보건(기초보건)	3.4%(1.3%)
	인구[2]	1.5%
	식수 및 위생	2.8%
	정부 및 시민사회	6.5%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3.3%
소계		**24.6%**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교통 및 통신	4.0%
	에너지	1.1%
	기타	1.7%
소계		**6.8%**
생산 (Production)	농업	2.5%
	제조업, 광업 및 건축	0.1%
	무역 및 관광	0.4%
소계		**2.9%**
다부문(Multisector)		5.0%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3.5%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3]		8.2%
긴급원조(Emergency aid)		3.4%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7.2%
기타(Unspecified)		38.3%
합계		**100%**

주1) 학생 및 연수생 포함
2) 인구 및 생식보건
3) 비ODA 부채탕감 포함
※ 자료 : OECD, Statistics, Table 19

- 1990년대부터 빈곤완화 ODA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채택하면서 빈곤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회 및 행정 인프라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 2002~03년 기초 사회 서비스(기초교육, 기초보건, 영양,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지원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32%에서 24.6%로 감소한 반면에 프로그램 원조, 부채탕감 등 기타 분야는 20%에서 59%로 증가함.

〈분야별 지원실적 추이〉

(단위:%)

지원 년도	사회/ 행정 인프라	경제 인프라	농업	산업 기타생산	물자/ 프로그램 지원	긴급 지원	기타
1982~83	32	14.9	17.7	9.1	4.3	1.9	20
2002~03	24.6	6.8	2.5	0.4	3.2	3.3	59.2

※ 자료: OECD, Statistics, Table 18

Ⅲ. ODA 예산편성 및 집행채널

1. HGIS 예산

□ 네덜란드는 대외정책 관련 활동예산을 1995년부터 'Homogeneous Budge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HGIS, 국제협력을 위한 균질적 예산)'이라는 프레임워크 하에 재기획하여 재원이 5개의 대외정책 관련 우선과제에 지원되도록 함.

2. 집행채널

□ 민간단체(Private Channel)

- 네덜란드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인식

및 개별협력 관련 정치 및 전략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01년도 HGIS 예산〉

(단위:US$ 10억, %)

대외정책 우선과제	HGIS 총예산	ODA 금액	ODA 비율
1. 국제 질서	0.04	0.01	0%
2. 평화, 안보 및 안정	0.4	0.2	6%
3. 유럽통합	0.02		
4. 지속가능한 빈곤완화	3.2	2.9	85%
가. 양자개발협력	1.5	0.8	40%
· 재외 대사관 위임자금		0.6	17%
· 거시경제 지원		0.4	12%
· 수리남 지원		0.1	3%
· 남유럽 재건		0.1	3%
나. 다자개발협력	0.9	0.75	22%
다. 민간 개발협력	0.8	0.8	23%
· NGO 공동재정지원		0.3	10%
· 연구 및 국제교육		0.2	6%
· ORET/MILIEV		0.1	3%
5. 네덜란드 양자 관계	0.5	0.2	6%
6. 기타	0.5	0.1	3%
총액	**4.7**	**3.4**	**100%**

– NGO를 통한 지원의 장점

• 네덜란드 외무부는 열악한 거버넌스(poor governance) 때문에 ODA를 제공할 수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NGO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

• NGO는 수혜집단의 니즈(needs)와 문화를 잘 이해하는 지역 파트너 기관과의 연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참여적 정치 프로세스 도입이 절실한 국가 내의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있음.

• 2001년에는 ODA 예산의 약 23%를 NGO를 통해 지원

□ MFO 공동자금조달(MFO co-financing)

– 네덜란드 4 대 NGO인 MFO는 네덜란드 내 여러 단체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공동자금조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① NOVIB : 사회 민주주의 기구(social-democrat organization)

② CORDAID : 가톨릭 네트워크 기구(network of Catholic organization)

③ ICCO : 신교도 교회간 기구(protestant inter-church organization)

④ HIVOS : 인도주의자 협회(humanist institute)

⑤ Foster Parents Plan : 최근 공동자금조달 제도의 5번째 회원으로 인정됨.

– 매년 10%의 ODA 자금을 MFO에 배분하고 있음.

〈MFO 공동자금조달(2001년 예산 가정치 기준)〉

(단위:US$ 백만)

	정부 지원금	전체에서의 비중	내부자원에서의 MFO 전체예산 비중
NOVIB	92	29%	61%
CORDAID	85	26%	54%
ICCO	85	26%	94%
HIVOS	46	14%	87%
Foster Parents Plan	15	5%	17%
	323	100%	

3. 기타 민간 관계자

1) 지속가능한 국제개발을 위한 국가 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2001년 기준으로 4년간 12백만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개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등 네덜란드 사회 내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킴.

2) 국제교육 및 연구소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s)

□ 약 US$ 100백만의 연구자금과 약 US$ 125백만의 고급교육 및 연구역량강화 자금을 4년 주기로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US$ 125백만 중 75%는 개도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위하여 쓰이고 25%는 개도국 내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쓰임.

3) 네덜란드 지방 자치단체 협회

(Association of Dutch Municipalities)

□ 비록 네덜란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4년간 US$ 5백만에 지나지 않지만 지방 자치단체가 개발협력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은 네덜란드 외무부가 지급하는 무상원조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

4) ORET-MILIEV Programme

□ 네덜란드 정부는 약 US$ 160백만을 여러 민간부분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네덜란드 민간부분간 연합자금지원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ORET-MILIEV Programme의 최근 예산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민간기업 참조).

5) 네덜란드 개발기구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zation)

□ 과거 대외개발협력에서의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기구로서 약 90%의 예산을 네덜란드 정부가 지원하였으나 네덜란드 정부의 신기술협력 정책 하에 향후 완전히 민간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임.

IV. 주요정책 및 접근방법

1. 정책적 일관성

□ 배경

- 1970년대에서부터 재정지원, 부채, 원자재, 통상, 공업화, 농업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정할 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이후 정책적 일관성은 네덜란드 개발정책의 주요 과제로 대두됨.
- 1980년대 'Development Co-operation in a World Economic Perspective(1980)' 및 'The Quality of Aid(1989)'과 같은 정책 자료에 '일관성'이란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A World in Dispute(1993)'이 출간되면서 우선과제로 부각됨.

□ 제도적 환경

- 외무부 하에 개발협력 및 외무 업무가 통합되어 네덜란드 정부 내의 정책적 일관성이 용이하게 됨. 재외공간에서도 유사하게 공관장이 개발협력 및 외무 분야를 모두 관장함.
- 외무부 내에서 지역별국이 내부적 절차의 운영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롭게 개편된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중임.
-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하에 있는 공동기획 부서가 연간예산기획 조정 역할을 책임지고 있음.

- 국제관계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for International Affairs)는 이론적으로 정부 부처간 정책 조정을 관장하고 있으며 유럽관계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또한 간접적으로 개발협력에 대한 네덜란드의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네덜란드 외무부 조직 참조

- 가장 높은 의사결정 선에서 매주 열리는 장관급 이사회에서 개발협력 관련 의사결정 및 이견중재가 이루어지며 동 이사회의 고정회원으로서 개발협력 장관은 개발관련 과제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음.

□ 체계적인 접근방법

- 2001년 DAC Peer Review 결과 비록 '정책적 일관성'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강하지만 개발협력 장관이 동 과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장치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 특히 NGO들의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일관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대화가 필요함.

□ 통상

- 유럽연합 및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지원함.
 - 개도국 특히 고채무빈국(Heavily-Indebted Poor Countries) 생산품의 시장진입 확대 및 GATT 체제 하에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everything but arms)'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 내에서 농업정책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
- WTO 체제 하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개발 관련 이슈를 통상정책에 주류화시키기 위해 노력함.
 - 최근 네덜란드 개발협력 장관은 네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①개도국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협력을 개발

②개발에 대한 현존하는 협력의 여파(예컨대, WTO/TRIPS와 기초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의 관계)

③특별 및 차별적 취급(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체제를 동 취급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 유리하도록 개혁함.

④보다 일관성 있는 세계경제체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

□ 무기 거래

- 네덜란드는 한때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었으나 1997년 유럽 내 NGO들이 반무기거래 운동을 벌인 후 1998년부터 무기이전에 대한 유럽식 행동규칙을 채택하고 합당한 구매자가 없을 시 잉여무기를 폐기하는 제도를 도입함.

2. 민간기업

□ 배경

- 네덜란드 개발협력 정책은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개도국 내의 민간부문을 장려하기보다 자국의 민간부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01년 'In Business Against Poverty; The Private Sector and Pro-poor Growth' 논문은

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수립함.

- 최근에 실시한 민간부문의 직접 지원에 대한 평가에서 여러 NGO들이 정부의 對민간부문 지원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네덜란드의 몇몇 개발전문가들은 개발 프로세스에서 민간부문의 의도 및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ORET/MILIEV 사업

- 네덜란드 기업들의 개발 관련 수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백만불(그 중 25%가 환경 프로젝트에 쓰임) 규모의 자금이 있음.
 - 네덜란드 외무부는 경제부와 공동으로 ORET/MILIEV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NGO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동 사업 지원 자금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났음.
 - 개발협력 장관이 동 사업이 조건부 원조(tied aid)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의회에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했음.

※ ORET/MILIEV 사업 관련 조달은 네덜란드 상품 및 서비스에 타이드됨.

□ 수출신용

- 네덜란드 신용보증회사(Netherlands Credit Insurance Company)가 수출신용 및 보증을 재정부 및 경제부를 대신하여 집행하고 있음.
- 수출신용 활용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서 네덜란드 정부는 NGO들에 의하여 비난받고 있음.
- Jubilee 2000 프레임워크 하에 수출신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채문제를 강조하고 엄격한 사회·환경 기준을 수출신용 정책에 적용하도록 하는 운동이 최근에 시작됨.

3. 비조건부 원조(Untying Aid)

□ 네덜란드의 입장

- 네덜란드 정부는 원칙적으로 언타잉(untying)을 항상 지지하여 왔으나 일방적인 언타잉은 원하지 않음.
 - LLDC를 위한 원조의 언타잉에 관한 DAC의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4. 부채탕감

□ 부채탕감 관련 진척

- 고채무빈국 신탁자금(HIPC Trust Fund)의 중요한 양자간 기부자이며 향후 추가적인 지원 예정임.
 - 2000년 12월 기준으로 165백만불 기부함.
-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부채탕감을 제공함.
 - 2000년 119백만불 규모의 부채를 탕감, 그 중 83백만불이 네덜란드 협력국가를 위하여 지원함.
- 1995년부터 매년 평균 165백만불을 부채탕감을 위하여 지원함.

□ 잔여부채

- 1990년대부터 무상원조만 제공하고 있지만 1999년 기준 총 20억불 규모의 과거 개발 관련 차관을 매년 약 200백만불 회수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개도국에게 수출신용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채권자임.

5. 공여국 조화(Donor Co-ordination)

□ 정책

- 네덜란드 정부는 운영적인 측면(operational dimension)에서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협력사업 실행 절차를 개혁하고 일치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몇 안되는 DAC 회원국임.

□ 수원국 주도적인 전략 장려(Promotion of Country-owned Strategies)

- 네덜란드 개발협력은 ①주인의식, ②수원국 내의 자원 활용, ③빈곤완화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수립됨.

6. 분야별 접근방법(Sector Approaches)

□ 정책

- 네덜란드는 1995년부터 수원국 주도적인 분야별 접근방법을 토대로 개발협력을 실행하기 시작함.
 - 네덜란드 의회가 1998년 개발 원조를 17+4 협력국가에 집중시키기로 결정한 후에 분야별 접근방법은 한층 더 깊이 있게 적용됨.
 - 분야별 접근방법은 장기적 원조의 실행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PRSP를 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네덜란드 외무부는 분야별 접근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분야별 접근방법 지원 그룹(Sector Approach Support Group)을 임시로 창설함.

□ 분야별 접근방법에 대한 오해

- 분야별 접근방법 실행 이후에도 네덜란드는 ① 프로젝트 사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며 ②수원국의 예산지원체제(recipient country budget support system)를 통해서 분야별 접근방법 자원을 배분하지 않음.

□ 주요 지원분야

- 원칙적으로 네덜란드의 ODA 자금은 모든 분야에 지원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초교육, 기초보건, 농촌개발 등 3~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또한 굿거버넌스, 빈곤완화, 여성개발, 제도수립, 환경과 같은 공통적인 주제를 동 분야에 주류화시키려고 노력함.

※ Good governance, poverty reduction, women in development, institution building, environment 즉 GAVIM

V. 조직 및 인력 관리

1. 조직 개요

□ 네덜란드 외무부 하에 개발협력 장관 및 외무 장관이 존재함.

- 개발협력에 관한 제반 업무는 개발협력 장관 소관이며 네덜란드 개발협력의 다양한 측면을 실행시키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분야의 직원뿐만 아니라, 외무 분야의 직원에게도 의지해야 함.

□ 외무부 내에서 국제협력 총괄국(General Directorat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GIS)이 네덜란드 개발협력 조직의 중심임.

- 외무부 내의 다른 국, 재외 공간 및 기타 정부부처들도 ODA 관리에 참여함.
- 유엔 및 국제금융기구국들(directorates for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VF)과 인권 및 평화구축국들(directorates for Human Rights and Peace Building, DMV)은 정무 총괄국(Directorate General for Political Affairs, DGPZ)과 국제협력 총괄국에 보고함.

※ 조직도 참조

□ 의사결정 및 권한

- 비록 개발협력 장관이 외무부 전체 예산의 약 80%를 관장하지만 운영상 중대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외무 장관보다 직권이 제한되어 있음.
 - 네덜란드 개발협력은 재외 대사관을 통해 집행되므로 많은 권한이 대사에 위임되어 있으나 동 대사가 꼭 개발 전문가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 운영상의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음.

□ 분산화(Decentralization)

- 1996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현장에 보다 많은 관리책임을 부여함.
 - 현지 공관은 본부에서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성만 지시받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됨.
 - 공관에서 현지 정책, 실행 및 '위임된 자금(delegated funds)'에 대한 재정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공관은 수원국 정부 및 다른 공여국과의 정책대화 뿐만 아니라, 현지의 네덜란드 국가·분야별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승인과 감시 또한 관장하고 있음.
- 본부에서는 외무부 직원으로 구성된 작은 '국별팀(country team)'이 국별 국장(country desk officer)의 조정 하에 정기적으로 모여 전반적인 현지 운영과 본부에서의 조직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 커뮤니케이션 문제

- 위와 같이 불분명한 권위 및 책임 체계 때문에 본부와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함.
- 커뮤니케이션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본부와 현장 사이의 주요 접촉역할을 지역국(General Directorate for Regional and Country Policy, DGRB)에 부여하는 시스템 때문임.
 - DGRB는 대부분 인력이 부족하며, 비개발 분야 업무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짐.

2. 전략과 비전 관리

□ 본부

- 이론적으로 개발협력 장관과 외무 장관이 공동으로 네덜란드 개발협력의 비전 및 전력을 이끌어 나아갈 책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부에서의 정책 및 전략 관리는 개발협력 장관과 주요자문관의 첫 번째 책임임.
- 네덜란드 외무부 내에서 두 장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고위 선에서의 조정방법이 많이 달라짐.

□ 현장

– 재외 공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 운영을 분산시킨 것은 네덜란드 정부가 개발협력사업 실행에 대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지휘, 커뮤니케이션, 평가 · 감독 및 직원모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부가 현장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개발협력의 모든 측면에 현지 권한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함.

– 현지 공관의 대사가 개발협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업 관련 주도권은 대사개인의 전문성 또는 경험에 따라 좌우됨.

• 대부분의 경우 전략적 기획 등 운영상의 책임을 공관 내 개발전문가에게 위임함.

• 네덜란드 외무부(현지 공관 포함)는 더 이상 국가선에서의 개발전략 보고서(country-level development strategy document)를 작성하지 않으며 연간 프로그램 및 예산제출 자료만 만듦.

• DAC 동료심사 결과 PRSP 전략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네덜란드도 개발협력 전략 및 논리가 설명된 간단한 성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NGO의 역할

– 네덜란드의 NGO 사회, 특히 Four Pillars+1 및 인도적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NGO들은 네덜란드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사회 및 외무부 간의 협력 관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인사관리

□ 개요

– 전체 인원 : 3,038명(2000년 기준)

• 네덜란드 내 인원 : 1,764명 / 전체의 58%

• 해외 배치 인원 : 1,274명 / 전체의 42%(현지 직원 제외)

– 남 · 여 직원 비율은 3 대 2

– 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의 수는 2000년 기준으로 약 800~980명으로 추정됨.

– 행정비용(Overhead Cost) : ODA 예산의 4.5%(2000년 기준)

□ 인사정책

– 신규채용 문제, 잉여직원, 능력의 조화 등 인사 관련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0년 DAC 동료심사 시 인사 관련 전략 또는 정책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 극빈개도국 내의 협력사업을 실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술협력 정책

– 전문가 파견은 고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자체 역량을 배양시키지 못한다는 비난이 많아, 2000년 개발협력 장관이 네덜란드의 기술협력을 신속히 개혁할 것을 의회에 건의함.

– 향후 수원국 내에서 공여국 간의 분야별 협력(sector collaboration in-country)이 활성화될 경우 공동재정지원을 통한 전문가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협력사업은 수원국의 감독 하에 공여국의 중복사업을 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분야별 결과(sector results)에 지원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재정관리

□ Golden Rules

– 네덜란드 정부는 ODA 자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DA 사용에 있어서 네 가지 핵심 원칙을 1998년 정책 자료를 통해 발표함.

• 원칙 1: 사업 시작 전 상대방에 대한 조사 실시

• 원칙 2: 예상 결과물 및 모든 계약의무의 기록

• 원칙 3: 진전 및 성과의 감독 및 평가

• 원칙 4: 필요 시 제재 적용

– 모든 지출은 동 원칙을 조건으로 하지만 지켜야 될 최소 수준은 없으며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됨.

5. 감독 및 평가

□ 평가 기관

– 정책 및 운영 평가 부서(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IOB)

• 1977년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점검 · 조사를 실시함.

• 개발협력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동 장관을 통해 의회에까지 보고함.

– 중간 및 프로젝트 · 프로그램 종료 시, 외무부 및 재외 공관 내 운영 부서에서도 평가 및 감독을 실시함.

□ 효과 측정

– 네덜란드 개발협력은 빈곤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므로 최빈국에서 많은 협력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나 동 국가들의 경우 믿을 만한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재국이 본국 내의 개발협력 활동을 측정하고 조정할 능력을 갖추지 못 하고 있음.

•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른 DAC 회원국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국의 개발협력 사업을 재구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론적인 딜레마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PRSP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Ⅵ. 2001년 DAC 동료평가 주요 결과

□ 지속적으로 높은 ODA 규모를 유지하되 적절한 예산진행방법의 활용 및 인사행정의 개선 등을 통해 질적인 향상 및 창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네덜란드 ODA 관계자들과 국제사회 관계자들이 보다 높은 정책적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외무부의 분석적 역량강화기 필요함.

□ 본부와 현지사무소의 의사소통 개선 및 각각의 시각을 서로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정책 수립 시 현지사무소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하고 분야별 지원(sector assistance)을 예산지원(budget support)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거나 분야별 지원에 적합한 기술지원 선정 시 정책적 명확성에 유의해야 함.

□ 지속적으로 정책 일관성 등 네덜란드 개발협력 관련 공동관심 사안에 대하여 네덜란드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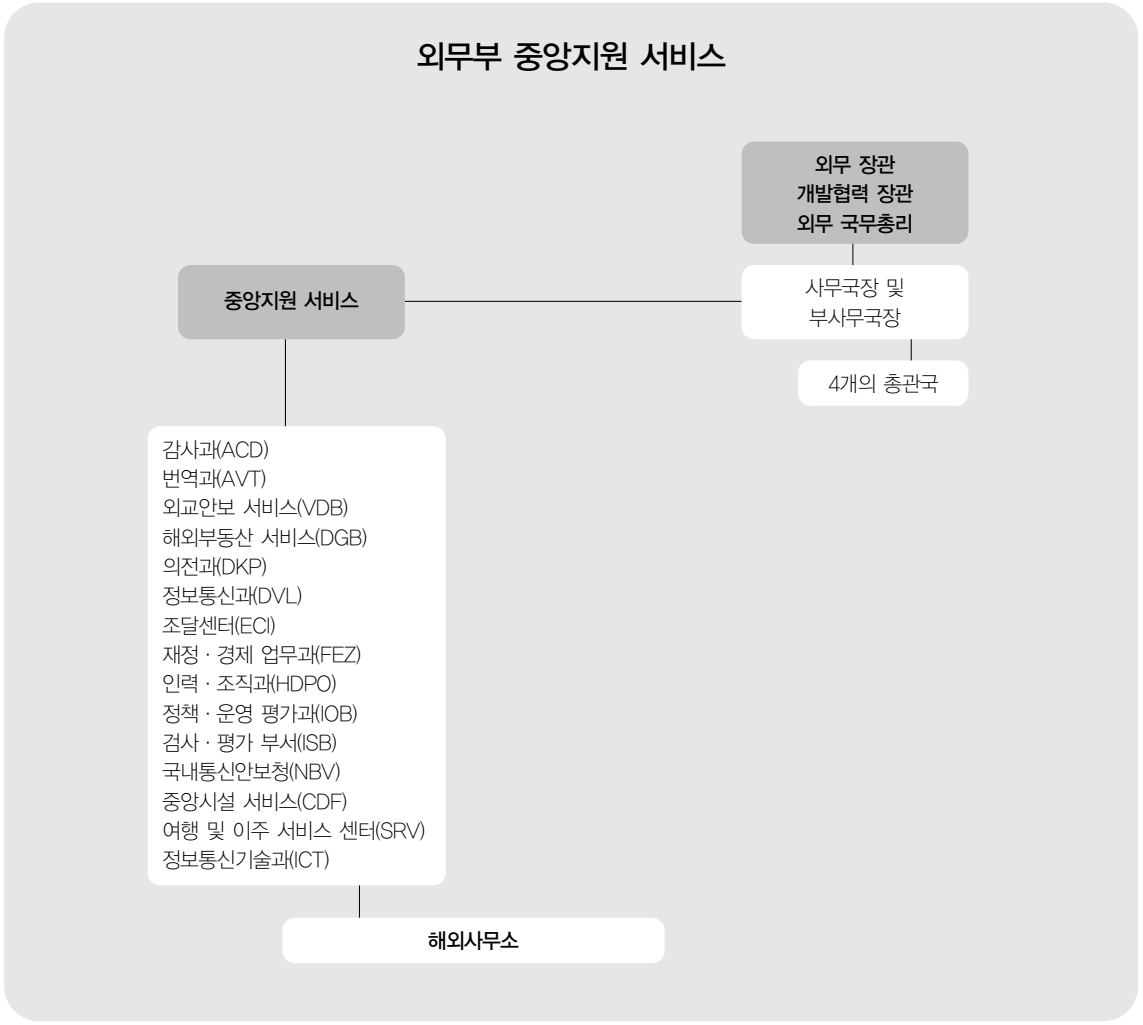
□ 최빈국에 대한 비조건부 지원(untying), 2001년 4월 DAC 협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

□ 관련 다자간 협력기구와 유럽정책대화 및 조정 관련 일관된 조치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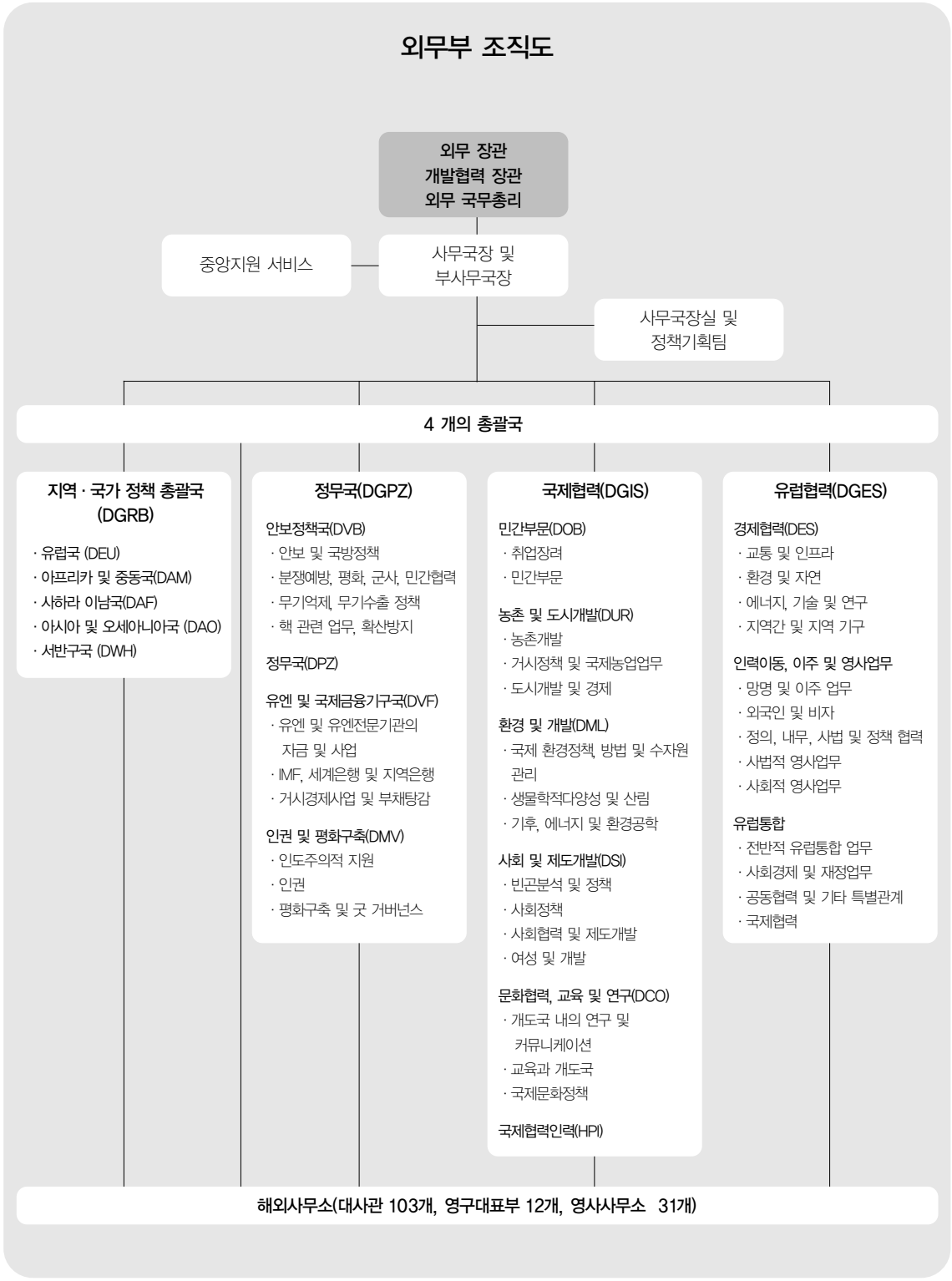
□ 외무부는 개발협력사업 관련 인사정책을 개발하여 신규채용, 업무분장 및 개발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작업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할 것임.

□ 올바른 의사결정이 용이하게 개발협력 개념이 구조화된 포괄적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함.

□ 분야별 접근방법(sector approaches)을 더욱 개발하여 주요 국제 파트너를 개입시켜 PRSP와 같은 수원국 주도적인 접근방법을(country-owned approaches) 가까운 시일 내에 운영되도록 함.



외무부 조직도


외무 장관
개발협력 장관
외무 국무총리
중앙지원 서비스
사무국장 및
부사무국장
사무국장실 및
정책기획팀
4 개의 총괄국
지역 · 국가 정책 총괄국
(DGRB)
· 유럽국 (DEU)
· 아프리카 및 중동국(DAM)
· 사하라 이남국(DAF)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국 (DAO)
· 서반구국 (DWH)
정무국(DGPZ)
안보정책국(DVB)
· 안보 및 국방정책
· 분쟁예방, 평화, 군사, 민간협력
· 무기억제, 무기수출 정책
· 핵 관련 업무, 확산방지
정무국(DPZ)
유엔 및 국제금융기구국(DVF)
· 유엔 및 유엔전문기관의
자금 및 사업
· IMF, 세계은행 및 지역은행
· 거시경제사업 및 부채탕감
인권 및 평화구축(DMV)
· 인도주의적 지원
· 인권
· 평화구축 및 굿 거버넌스
국제협력(DGIS)
민간부문(DOB)
· 취업장려
· 민간부문
농촌 및 도시개발(DUR)
· 농촌개발
· 거시정책 및 국제농업업무
· 도시개발 및 경제
환경 및 개발(DML)
· 국제 환경정책, 방법 및 수자원
관리
· 생물학적다양성 및 산림
· 기후, 에너지 및 환경공학
사회 및 제도개발(DSI)
· 빈곤분석 및 정책
· 사회정책
· 사회협력 및 제도개발
· 여성 및 개발
문화협력, 교육 및 연구(DCO)
· 개도국 내의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 교육과 개도국
· 국제문화정책
국제협력인력(HPI)
유럽협력(DGES)
경제협력(DES)
· 교통 및 인프라
· 환경 및 자연
· 에너지, 기술 및 연구
· 지역간 및 지역 기구
인력이동, 이주 및 영사업무
· 망명 및 이주 업무
· 외국인 및 비자
· 정의, 내무, 사법 및 정책 협력
· 사법적 영사업무
· 사회적 영사업무
유럽통합
· 전반적 유럽통합 업무
· 사회경제 및 재정업무
· 공동협력 및 기타 특별관계
· 국제협력
해외사무소(대사관 103개, 영구대표부 12개, 영사사무소 31개)

스웨덴 ODA 정책

I. 특기사항

□ 스웨덴 의회는 2003년 10월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를 채택,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범정부적 과제로 결정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추진실적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범정부적 과제로 추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음. 또한 이미 높은 수준의 ODA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임.

- ODA 규모(2004년) : 27억불(ODA/GNI 비율 0.77)

※ ODA 절대규모면에서 제7위로서 캐나다, 이태리보다 규모가 큼.

- ODA 확대계획 : ODA/GNI 비율 0.77%(2004년)→1%(2006년)

□ 스웨덴 원조기관 SIDA는 매년 약3천만불을 대국민 ODA 홍보비로 사용하며, 이 중 NGO를 활용한 ODA 교육프로그램에 2천만불을 배정하고, 1천만불을 SIDA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ODA 규모 확대, 원조효과 증진노력과 병행하여 ODA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 및 지지 확산을 위해 NGO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금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Jamtin 스웨덴 외무부 개발협력장관은 스웨덴의 ODA 선진국 배경으로 역사적 전통, 일반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 및 최고 정책결정자의 높은 관심을 꼽았음.

□ 스웨덴은 인구 9백만명, GDP 규모면에서 3천억불(우리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외무부에 외무장관, 개발협력장관, 이주망명정책장관 3명의 장관을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ODA를 유지하면서 개도국의 빈곤퇴치, 국제평화에 관한 외교에서 비교우위를 점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존경받는 국가로 대접받고 있는 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I. 특기사항

□ 스웨덴 의회는 2003년 10월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를 채택,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범정부적 과제로 결정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추진실적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범정부적 과제로 추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음. 또한 이미 높은 수준의 ODA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임.

- ODA 규모(2004년) : 27억불(ODA/GNI 비율 0.77)

※ ODA 절대규모면에서 제7위로서 캐나다, 이태리보다 규모가 큼.

- ODA 확대계획 : ODA/GNI 비율 0.77%(2004년)→1%(2006년)

□ 스웨덴 원조기관 SIDA는 매년 약3천만불을 대국민 ODA 홍보비로 사용하며, 이 중 NGO를 활용한 ODA 교육프로그램에 2천만불을 배정하고, 1천만불을 SIDA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ODA 규모 확대, 원조효과 증진노력과 병행하여 ODA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 및 지지 확산을 위해 NGO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금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Jamtin 스웨덴 외무부 개발협력장관은 스웨덴의 ODA 선진국 배경으로 역사적 전통, 일반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 및 최고 정책결정자의 높은 관심을 꼽았음.

□ 스웨덴은 인구 9백만명, GDP 규모면에서 3천억불(우리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외무부에 외무장관, 개발협력장관, 이주망명정책장관 3명의 장관을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ODA를 유지하면서 개도국의 빈곤퇴치, 국제평화에 관한 외교에서 비교우위를 점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존경받는 국가로 대접받고 있는 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Ⅱ. ODA정책 일반

□ 스웨덴은 2000년 원조정책 검토시 받은 주요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였으며, 특히 2003년 10월 의회에서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PGD)를 채택함으로써 GNI 대비 ODA 목표를 1%로 설정하고,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범정부적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매년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스웨덴의 PGD는 혁신적이고 의욕적인 과제를 다수 담고 있으며 포괄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바, DAC 회원국들은 동 정책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음을 감안, 향후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음.

□ 스웨덴 원조기관(SIDA)은 홍보활동비로 매년 3천만불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 중 2천만불은 NGO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머지 1천만불은 원조기관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함. 또한 스웨덴 외무부는 PGD 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정책수렴을 위하여 Forum for Global Development(전담 사무국 포함)를 신설할 예정인 바, 다수 참석자들은

이를 평가하면서 동 포럼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고위층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Ⅲ. 원조 규모, 구성 및 배분

□ 스웨덴은 1975년 이래 매년 유엔 목표치 0.7%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바, 2006년에 1%를 달성하여 2007년에도 이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함.

□ 스웨덴 ODA의 구성은 양자간 원조 74%, 다자간 원조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0년대에 최빈국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탕감해준 이후 전액 무상원조만 제공하고 있다고 함.

□ 양자간 원조의 75%를 최빈국 내지 저소득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50% 이상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지원하고 있다고 함. 수원국 수는 111개국(2003년)에 달하나, 장기적 중점협력국은 약 30개국이라고 하며, SIDA는 소수의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을 선호하는데 반해, 외무부는 외교적 필요에 따라 지원대상국 수 확대를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함. 이와 관련, DAC은 지원 대상국 수를 줄여 중점지원할 것을 촉구하였음.

□ 원조분야 관련, 사회인프라 및 긴급지원(24%)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주목받았음. 또한 NGO를 통한 지원이 261백만불로 양자간 원조의 18%에 달하고, NGO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자체사업비 비중은 10%에 불과하나, NGO가 자체 모금하는 개발사업비가 250백만불에 달하여 정부의 지원규모와 비슷하다고 함.

뉴질랜드 ODA 예산확대 계획

I. 서론

□ Stephanie Lee 뉴질랜드 DAC 대표에 의하면, 뉴질랜드 정부는 2005~06 회계년도 ODA 예산을 21%(약 43백만미불)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10여년간 최대의 인상폭이라고 함.

- 4.13 뉴질랜드 원조정책 검토회의시 DAC는 개발원조전담기관 NZAID 설립을 긍정평가하였으나, ODA/GNI 비율이 0.23%로서 DAC 국가들의 평균에 미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원조규모 확대를 권고한 바 있음.

II. 본론

□ 이로써 뉴질랜드 정부는 2005~6년도 ODA 규모를 272백만미불(383백만뉴불)로 확대하여 GNI의 0.27%가 되도록 하고, 2006~07 회계연도에는 0.27%를 유지하며, 2007~08년도에는 다시 0.28%로 올릴 계획이라고 함.

III. 결론

□ 뉴질랜드 ODA 예산은 외교부 예산과 별도로 배정되며, 외교통상부 예산 181백만미불(254백만뉴불)에 비해 ODA 예산이 1.5배에 달한다고 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KOICA 예산이 외교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외교부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

[자료:주오이시디 대표부]

對필리핀 EU의 원조정책 동향

필리핀주재 EU대표부는 2005년 5월 3일 EU의 필리핀 국가전략보고서 초안(2007~13 Country Strategy Paper : CSP)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한 바, 본 회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Ⅰ. EU의 대 필리핀 중기전망

□ EU는 향후 2007~13년간 필리핀에 대한 중기전망을 통해 낙관적 전망(가능성 20%), 현상유지 전망(가능성 60%), 비관적 전망(가능성 20%)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전반적으로 필리핀의 정치경제 개혁은 다소 진전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재정적자, 빈부격차, 에너지부족, 인구증가 등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요 불안요소로 정치 · 재정 불안정, 경제성장률 하락, 우수두뇌 해외유출, 높은 인구성장률, 테러위험 상존 등을 지적함.

Ⅱ. EU의 대 필리핀 원조계획

□ EU는 향후 4년(2007~10)간 필리핀의 보건 및 교육 부문을 중점지원 부문으로 선정하고, 기타 지원 부문을 합하여 총 90백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함.

- 보건부문에 25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빈곤층의 보건증진과 보건행정의 개혁을 지원
- 교육부문에 40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기초교육 확대를 통해 전국민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
- 소규모 프로젝트기금에 8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필리핀의 경제개발 및 반부패(governance) 개혁노력을 지원, 주로 NGO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 집행할 예정
- 세계은행의 민다나오 신탁기금(MDTF)에 12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민다나오 회교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 및 안전을 위한 개발 및 재건 프로젝

트를 지원

– 무역 및 개발 연계부문에 5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EU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적인 무역장애요인제거 등 기술지원과 필리핀의 성장능력을 배양(capacity building)

Ⅲ. 관찰 및 평가

□ EU는 빈곤퇴치를 위한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지원을 개발원조정책의 목표로 규정하고 GNI대비 ODA 비중을 2006년까지 0.39%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하에 개발 원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과 개발연계, 지역통합 및 협력, 거시경제정책 지원, 제도역량 배양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음.

□ 금번 국가전략보고서 초안은 EU의 필리핀에 대한 개발원조정책 집행의 기본지침으로서 ①필리핀 정부의 개발수요, ②사회단체의 의견, 그리고 ③외국원조기관의 평가를 반영하는 원조집행 계획서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관련, 우리의 대외원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U 등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원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주필리핀 KOICA사무소]

對페루 USAID 협력사업 현황

Ⅰ. 사무소 설치 및 인력현황

□ 1962년 사무소 설치, 2층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중

□ 사무소 인력은 143명(원조전략 · 계획수립, 사업평가, 정업무처리 등)

- 19명은 USAID 직원(외교관 신분)
- 6명은 여타국 전문가(계약)
- 118명은 계약직(현지인, 미국인)

Ⅱ. 사업 추진경과

□ 1933년부터 대 페루 협력사업 추진

- Roosevelt 대통령의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간 'Good Neighbor' 정책에 의거 실시

□ 1940~50년대, Institue of Inter American Affairs, Inter American Health/Food Production Cooperative Service 등을 통해 협력사업 추진

□ 1952년 기술협력 협정 체결

□ 1962년 USAID 페루사무소 설치(1961년 USAID 설립)

□ 1960년대, 농업개발, 의료보건 개선, 식량지원 중점 지원

□ 1970년대, 농업개발 및 농촌개발 중점 지원, 외에 주택개량, 국민건강, 산림녹화 지원

□ 1980년대, 밀림지역 개발, 농업기술향상, 발전시설, 의료보건, 상하수도 중점 지원

□ 1990년대, 빈곤퇴치, 의료보건개선, 마약퇴치, 경제체제전환, 인권보호 중점 지원

Ⅲ. 사업발굴 및 추진절차

□ 사업발굴 : 사업발굴을 위한 분야별 technical team(팀별 인원은 대략 5~6명/미국인 1~2명, 현

지인 3~5명) 운영

□ 추진절차

- 대 페루 5개년 원조전략 작성, 행정부 승인
- 동원조전략 하에 페루 정부와 중점 지원부문별 5개년 지원계획에 관한 Macro Agreement 체결
- 페루 정부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Agreement 체결

Ⅳ. 중점지원분야(Sector)

□ 중점분야 : 민주주의 강화, 경제발전, 의료보건여건 개선, 환경보호, 교육여건 개선, 마약퇴치, 페루 에쿠아돌 국경지원

□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

- 민주주의강화 : 지방정부 기능강화 및 지방분권화, 공공부문개혁 및 제도정비,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
- 경제발전 : 무역투자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강화, 관세제도 개선, 의료보건 · 의료보건시스템 개선, 가족계획 프로그램 지원, 모자보건 여건 향상 및 유아 건강 증진, 전염병 예방 및 관리
- 환경보호 : 산림녹화, 자원보존지역 보호, 희귀 동식물 보호, 산림 보호
- 교육 : 초중등교사 연수, 공공 교육제도 및 규정 정비, 농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
- 마약퇴치 : 코카재배 퇴치, 소규모 인프라건설, 경제작물 재배기술교육, 마약퇴치 관련기관 능력강화
- 페루 · 에쿠아돌 국경지원 : 국경지역 통신, 도로 등 인프라건설, 국경지역 무역 및 투자증진, 국경지역 관세제도 개선 등

Ⅴ. 지원규모

□ 금년도 : 100백만불(무상지원규모)

- 차관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음.
- 페루에 대한 제1 원조공여국

※ 국가별 지원규모는 국회에서 결정

□ 연도별 지원규모 : 2003년 145백만불, 2004년 114백만불

Ⅵ. 사업추진방법

□ 주로 프로젝트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며, 연수생초청은 대사관에서 실시, 전문가 파견은 매우 미미

□ 프로젝트사업의 주 내용은 페루 내에서의 Capacity Building 및 인프라 구축(연수생초청과 전문가파견 지양)

□ 사업 시행업체는 사무소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

- 사업별 전문기관, 국내외 NGO, 미국인 업체, 페루인 업체 등 입찰에 참여 제한 없음.
- 사무소에서는 모니터링, 평가 실시 및 본부에서 감리단 파견, 감리 실시

Ⅶ. 시사점

□ 원조기관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 페루 협력사업 규모 확대 및 중장기 원조전략 수립, 중점 지원 분야 선정과 동 분야에 대한 집중적, 장기적 지원이 요구됨.

□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페루 요청에 의한 사업 발굴에서 벗어나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가단 파견 또는 사무소 인력 증원을 통한 주도적, 체계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며, 중장기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간 협의회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자료: 주페루 KOICA사무소]

對페루 JICA 협력사업 현황

Ⅰ. 사무소 설치 및 인력현황

□ 1977년 사무소 설치, 현재 단독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중

□ 사무소 인력은 13명(2명 : JICA에서 파견, 11명: 현지 고용원/일본계 포함)

Ⅱ. 협력사업 추진 경과

□ 1979년 기술협력 기본협정 체결

□ 동 협정 하에서 1990년까지 연수생초청, 전문가 · 봉사단파견, 물자지원, 프로젝트사업 등 추진, 1990년 말에 중남미 지역 주요 지원 대상국으로 부상

□ 1991년, 테러단체에 의한 3명의 일본인 전문가 피살 및 1996년, 일본 대사관 점거 사태 발생으로 파견 인력 철수 및 파견 중지, 연수생 초청 및 물자 지원 집중 확대

□ 1998년, 일본 경제협력 위원회, 페루 재경부 및 국제협력청간 공동 회의 개최, 중점 지원분야 선정

□ 2003년, JICA 법적 지위 변경으로 보다 효율적, 독립적 사업추진 도모

Ⅲ. 사업발굴 및 추진절차

□ 사업발굴 :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요청서 작성 등 사업발굴

□ 추진절차

- 통상 8월 말까지 페루 국제협력청으로부터 수요조사결과 접수(대사관이 접수)
- 외무성 · JICA 본부의 검토 하에 사업선정 및 국별 사업계획 수립, 3월중 각 사무소에 연도별 사업계획 통보

Ⅳ. 연도별 평균 지원규모(추정)

□ 일본의 연 평균 지원규모 : 약 120백만불

- JICA : 50백만불(기술협력 10백만불, 무상자금협력 40백만불)
- 차관 : 70백만불

※ 미국, EU에 이어 제3의 원조공여국

Ⅴ. 중점지원분야(Sector)

□ 중점분야 : 빈곤퇴치, 사회인프라지원, 경제인프라 개선, 환경보호

□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

- 빈곤퇴치 : 의료보건여건 개선, 직업교육, 여성개발
- 사회인프라 : 상하수도개선, 교육여건개선, 자연재해예방
- 경제인프라 : 지방 전기설치, 중소기업육성, 농산물생산기술 향상, 어업개발, 관광개발계획, 수도권도로망정비, 물자원개발, 산업제도 정비
- 환경보호 : 환경보호, 환경오염퇴치
- 기타 : 민주화지원, 공공기관 능력강화

Ⅵ.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1. 기술협력

□ 연수생초청 : 200명

- 130명은 일본으로 초청, 70명은 주변국가와의 공동연수 프로그램 하에 제3국 초청

※ 2004년까지 연수생 초청인원은 약 4,000명

□ 전문가파견 : 34명

- 4명은 장기(2년) 파견 전문가로 국제협력청(1명), 생산부(1명), 교육부 (2명)에서 활동 중, 2년간 연장 가능
- 30명은 단기 파견 전문가로 파견기간은 2~3주에서 11개월, 30명 중 약 15명은 일본인 전문가를 파견하며, 잔여 15명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등 여타국 전문가를 활용

2. 물자지원 : 100만불

□ 사무소에서 입찰을 통해 물품 구매, 지원

※ JICA가 실시하는 물자지원 외에 일본 대사관에서도 별도 자금으로 물자 지원 실시

3. 프로젝트 : 20건

□ 지원규모는 건당 약 100만불로 2~3년간 추진

□ 건축공사의 시공업체는 일본인 건축업체 활용

4. 긴급재난지원

□ 지원여부 및 규모는 외무성에서 결정

※ 긴급재난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멕시코, 런던, 싱가폴에 물품보관창고 운영중, 중남미지역의 경우, 멕시코 물품보관창고를 활용

□ 무상자금협력 : 40백만불

□ 통상 건당 10백만불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 금년 4개 프로젝트 추진중

- 재활센터 건립, 페루 · 에쿠아돌 국경지역 교량건설, 항만개선, 박물관 건립

Ⅶ. 시사점

□ KOICA 협력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 규모 대비 지원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대 페루 원조계획 수립이 시급하며, 우리의 비교우위분야 및 BHN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우수사업 발굴 및 실질적인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별 모니터링 강화,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협력동향 파악과 자료 작성, 적기 사업 추진, 파견인력(66명) 관리 등 대 페루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파견 인력의 증원이 요망됨.

□ 아울러, 프로젝트사업 대상국가에 대한 물자지원 예산 배정 및 요청 물자 현지 구입, 파견된 전문가를 통한 사업발굴, 공동 연수 확대 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료:주페루 KOICA사무소]

과테말라에 대한 대외원조 현황

Ⅰ. 개요

과테말라 경제기획청(SEGEPLAN)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과테말라에 대한 대외원조(bilateral)는 총 5,500만불로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는 바, 이는 양자간 대외원조액의 감소 및 다자차원의 원조액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Ⅱ. 양자간 대외원조

□ 1996~2004년간 과테말라에 대한 양자간 대외원조액은 우리나라를 포함 18개국에서 14억불을 제공하였는 바, 이 중 미국, 일본, 대만 및 독일이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원조를 제공하였음.

- 미국 5.1억불, 일본 3.6억불, 대만 1.4억불, 독일 1.3억불
- 우리나라는 동 기간동안 185만불을 제공하여 18개국 중 15위에 해당
- 1996년의 평화협정 체결 직후인 1997~99년 간에는 평화협정 이행을 목적으로 한 대외원조가 주류를 이뤄 연평균 2억불 이상이 유입되었으나, 2004년도 실적은 이의 1/4에도 못 미치는 정도에 그쳤음.
- 이는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이행됨에 따라 원조공여국의 관심이 여타 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최근 공여되는 원조도 소외지역 개발, 빈곤타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Ⅲ. 다자차원의 원조

□ 양자차원의 대외원조가 감소되는 반면 다자차원의 대외원조는 상당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여

1996~2004년간 총 21.5억불을 기록하였음.

- 미주개발은행(IDB), 국제부흥개발기구(I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연합(EU),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한 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 5개 단체의 원조가 전체의 91%를 차지

[자료:주과테말라 대사관]

방글라데시 원조 수원액 감소 및 Good Governance 부각

I. 국제사회의 對방글라데시 원조액 감소

□ 방글라데시 수원기관인 경제협력청(ERD: Economic Relations Division)은 2004 회계년도(2003.7~2004.6)중 선진 원조국의 방글라데시 대상 원조액이 이례적으로 감소, 10억 3천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발표함.

- ERD에 따르면 총 수원액 10.3억 달러 가운데 6.9억 달러(67%)는 차관이고 3.4억 달러(33%)는 무상원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같은 수원규모는 지난 25년의 수원역사 중 가장 적은 수준임. 방글라데시의 수원액은 지난 89년 18억 달러를 최고로, 이후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년평균 1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 이 같은 원조액(Disbursement)은 당초 원조국의 약속액(Commitment)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2004년의 경우 공여 약속액이 17.2억 달러였으나 이 가운데 6.7억 달러는 미집행되었는 바, 이는 방글라데시의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행정에 기인하는 바가 큼. 즉 선진 원조기관들은 방글라데시 정부관리들의 부패를 경험하며 개발사업 지원시 더욱 투명하고도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관행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을 야기함.
- 국별 원조규모(집행액)를 보면, 세계은행이 2.2억 달러로 방글라데시 최대의 공여자이며 ADB 1.7억 달러, 영국 93백만 달러, 일본 79백만 달러, 네델란드 40백만 달러, UNDP등 유엔기관 36백만 달러, 독일 26백만 달러 등임.

Ⅱ. 일본의 거버넌스 관련 이슈 공식 제기

□ 한편, 일본 정부는 방글라데시 대상 원조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거버넌스 관련 이슈(행정의 비효율성, 부패, 정치연루 등)를 공식 제기하였음. 그간 서방 원조국들이 원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이슈(인권문제 포함)를 제기, 방글라데시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데 반하여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여 왔음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제기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일본의 원조사업(ODA) 예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원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은 방글라데시의 부패한 관료들이 입찰 조작 등을 통하여 무자격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결과적으로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를 야기하는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일본은 방글라데시 최대의 원조 공여국으로, 1972년 이후 총 105.4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공여하여 왔음(이 가운데 차관이 56억 달러, 무상 45억 달러, 기술협력 4.4억 달러임). 일본 정부는 투입자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새로운 원조정책을 구상중이며 주로, 민간부분 활성화, 거버넌스 개선, 교통, 전력 및 농업부문 인프라 구축, 인간 안전보장을 위한 재해원조 및 보건위생, 기초교육, 환경부문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Ⅲ. 방글라데시 거버넌스 관련 최근 사례

□ 상기 개발사업의 입찰과 관련한 정부의 부패는 사전에 특정 입찰자와 공무원(정치인)이 연계하여 개발 사업을 수주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최근 사례는 아래와 같음.

- 방글라데시 정부(내각 조달물자 위원회)는 6.18 방글라데시 Penchuganj 지역 복합 화력 발전소(발전전력 90메가와트) 사업시행자로 사업경험이 없는 중국계 Harbin Power Engineering 사를 선정토록 승인한 바 있음.
- 동 발전소 설립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그간 6차례나 있었으나 방글라데시 전력청(PDB : Power Developement Board)은 특별조건을 제시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찰을 지연, 선진국의 유력 입찰자들이 스스로 입찰 참가를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지난 4월의 7차 입찰에서는 중국계 회사만이 응찰하게 됨.
- 동 중국계 회사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조달 규정상 사업수행 경력(최소 10년 이상) 등에서 자격미달임에도 정부(조달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계약 체결(사업자 선정) 승인을 결정함.
- 이러한 결과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력자가 개발사업을 빌미로 사업시행자와 부패고리를 형성, 원조 자금을 유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등 방글라데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옴.

[자료 : 주방글라데시 대사관]

필리핀 개발포럼 후속회의 결과

Ⅰ. 핵심사항

□ 필리핀 개발포럼회의가 7.4(월) 마닐라에서 필리핀 정부관계자,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난 3.7~8간 다바오 개최 원조공여국회의에서 논의된 5개 분야에 대한 필리핀정부의 개혁추진 현황을 점검함.

Ⅱ. 각 주제별 발표요지

1. 사회발전(Social Progress)

－Corazon Juliano N. Soliman 사회복지개발부 장관 발표

□ 필리핀정부의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 지원과 기초교육 개혁(School First Initiative)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2. 성장과 투자 (Growth and Investment Climate)

－Elmer Hernandez 통상투자부 차관 발표

□ 1/4분기중 필리핀 투자 유치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며, 인프라 건설분야가 80%를 차지하였으며, 광산개발 분야도 증가추세를 보임. 동 기간 동안의 주요 투자국은 일본과 한국이라고 밝힘.

□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마닐라근교 고속도로 연장 및 확장, 바탕가스 항구개발, 수빅-클라크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임.

□ 필리핀의 주요 투자 유치분야는 건축자재, ICT, 식품, 전자, 자동차, 조선, 해운 등의 분야라고 언급함.

3. 경제 및 재정개혁 (Economic and Fiscal Reforms)

－Gil S. Beltran 재정부 차관보 설명

□ 금년 5월까지 세수 P3,223억, 세출 P3,901억으로

Ⅰ. 핵심사항

□ 필리핀 개발포럼회의가 7.4(월) 마닐라에서 필리핀 정부관계자,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난 3.7~8간 다바오 개최 원조공여국회의에서 논의된 5개 분야에 대한 필리핀정부의 개혁추진 현황을 점검함.

Ⅱ. 각 주제별 발표요지

1. 사회발전(Social Progress)

－Corazon Juliano N. Soliman 사회복지개발부 장관 발표

□ 필리핀정부의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 지원과 기초교육 개혁(School First Initiative)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2. 성장과 투자 (Growth and Investment Climate)

－Elmer Hernandez 통상투자부 차관 발표

□ 1/4분기중 필리핀 투자 유치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며, 인프라 건설분야가 80%를 차지하였으며, 광산개발 분야도 증가추세를 보임. 동 기간 동안의 주요 투자국은 일본과 한국이라고 밝힘.

□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마닐라근교 고속도로 연장 및 확장, 바탕가스 항구개발, 수빅-클라크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임.

□ 필리핀의 주요 투자 유치분야는 건축자재, ICT, 식품, 전자, 자동차, 조선, 해운 등의 분야라고 언급함.

3. 경제 및 재정개혁 (Economic and Fiscal Reforms)

－Gil S. Beltran 재정부 차관보 설명

□ 금년 5월까지 세수 P3,223억, 세출 P3,901억으로 P678억 적자이나 당초 계획보다는 적자폭이 줄어듬.

□ 금년 5월 24일 부가가치세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등록세 개혁이 검토되고 있고, 세무행정 효율화를 위한 각종 방안 추진, 탈세방지를 위한 각종조치 및 밀수대책반을 운영 등임.

－기타 재정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금 관리제도 개선, 정부지출의 효율화 등이 추진중에 있음.

□ 이와 관련, 재정안정 프로그램(2010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7월 1일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실행이 보류된 부가가치세(Expanded VAT) 인상법안이 조기 시행되어야 하나 대법원의 7월 1일자 잠정 보류결정은 1일 1억3천만 페소의 세수감소를 가지고 왔으며 이로 인해 금년도 적자 축소 목표액인 1600억 페소 적자달성은 어려우나 동 대법원 결정이 2개월 내에 취소될 것으로 전망함.

4. 통치 및 부패방지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Merciditas Gutierrez 대통령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설명

□ 필리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①부처 내 부

패방지 대책 ②부처간 협력강화 ③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방지 ④부패방지 실적 평가 및 관리 ⑤부패방지 홍보 등 5개 방안을 마련하고 각 방안별 프로그램을 실행중임.

5. 지방자치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Benito Catindig 내무지방자치부 차관보 설명

□ 안정적인 지방자치제 운영을 위해서 ①지방정부 공무원의 능력 강화, ②지방정부 재정능력 향상, ③정책개발 및 운영능력 개선이 급선무이며,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중임.

□ 특히, 세계은행의 재정 및 기술원조로 '지방정부 재정지원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이 진행중임을 언급

6. 원조공여국 주요언급 요지

□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 참석자들은 필리핀정부의 각 분야별 개혁노력을 평가하고 동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리핀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강조함.

－일본측 대표는 필리핀 세수의 효율적인 징수가 재정안정에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필리핀정부의 노력을 촉구

－미국측 대표는 필리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호주 대표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구

Ⅲ. 관찰 및 평가

□ 필리핀정부의 장기적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의 실행을 통한 세수의 확보로 재정적자 폭을 감소시켜 2010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이 아로요 정부의 중점 과제이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7월 1일자 부가가치세 인상법 시행 잠정 보류결정으로 순조로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음.

－페소화 및 증시는 상기 잠정보류 결정을 즉시 반영하여 페소화 약세 지속 및 증시 급락 등의 불안한 징후를 보임.

□ 아울러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대선 선거조작 및 친인척 비리 등 추문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상기 개혁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경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국 혼란의 조기 수습 여부와 부가 가치세 인상 잠정보류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조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주필리핀 대사관]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 원탁회의

아체 · 니아스 재건복구사업을 지원하는 원조공여국 관계자들은 2005.5.17(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 원탁회의에 아체 · 니아스 재건복구특별기구(BRR :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Agency for Ache and Nias)의 Kuntoro의장을 초청, 동 특별기구의 활동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공여국간 관련 정보 등을 교환함.

Ⅰ. 아체 · 니아스 재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BRR 활동사항 점검(동 특별기구 설립 후 2주간)

1. 대외활동 전개

□ 아체 · 니아스섬 피해지역을 방문, 정부관계자, 사회지도자, 수혜자들과의 연석회의를 갖고 재건복구방안 협의

□ 아체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확대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 개최, 약 400개 기업 대표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BRR 홍보활동 전개 및 지원 요청

□ 약 150개의 NGO를 대상으로 BRR 활동계획 안내

2. 다목적사업 승인(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에 의한 기추진 사업 위주)

□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주택, 학교, 병원건립 및 Family grant 종합프로젝트(600백만불)

□ ADB 주택지원 프로젝트(75백만불)

□ USAID 도로건설 프로젝트(245백만불)

□ Intel의 통신 광역사업(30백만불)

□ FAO의 트랙터 545대 지원

3. 재건복구 지연 사항 해소

□ 메단항에 5개월 동안 적채되어 있던 1,500개 긴급구호용 지원물품 수송용 컨테이너 해소

□ 해상운송 및 보급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계약업체

선정(UNJLC)

□ 아체 지역 활동 NGO 관계자들의 비자 연장 조치(30일)

4. 향후 추진계획

□ 60일내 BRR 조직 구축 : 현재는 분야별 간부 임명

□ 공여국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재건복구사업의 가속화

– 공여국별 지원사업 현황자료 지속 보완 요청

5. BRR의 조직 정상화를 위한 공여국 지원사항

□ UNHCR : 사무실 건물 제공(임시 사용용)

□ AusAID : 중요 긴급사안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통신 및 홍보망 구축 자금지원, 컴퓨터 등 사무장비 일체, 차량 및 기본시설 제공 등

□ USAID : 동 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자금 15백만불 지원

Ⅱ. 관찰 및 검토의견

□ BRR은 조직 구축과 병행하여 기존 진행중인 사업을 재분류하고 사업승인 등 필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BRR과 타 정부부처간의 업무이관과 협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공여국들이 지적

□ BRR Kuntoro 의장은 아체의 경우 대부분 피해지역이 초토화되어 모든 생활 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바, 가급적 공여국들이 주택 및 도로 건설, 학교와 병원 등 기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10개의 프로젝트는 학교, 병원 등 시설물 건축과 기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분야의 소규모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3개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므로 사업계획 협의 및 구체화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베트남 중간년도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보고

베트남 중간년도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보고(Informal Mid-Year Consultative Group Meeting for Vietnam)가 2005년 6월 2~3일 25개 주요 원조공여국(브라질 및 남아공은 옵저버로 참석), WB 및 ADB 등 15개 국제기구대표, Oxfam 등 5개 국제 NGO 대표 및 베트남 대표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WB와 베트남 정부의 공동 주관으로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지역인 껀터(Can Tho)시에서 비공식 회의의 형식으로 개최됨.

Ⅰ. 주요 의제별 토의사항

□ 금번 회의는 현재 초안 작성을 준비중인 베트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06~'10년간 SEDP), 반부패 활동 및 각종 분야별 개혁조치(금융, 행정개혁, 사법시스템 개혁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짐.

□ 베트남 정부는 SEDP의 성장목표(2010년 말까지 일인당 GDP 900불 달성)를 제시함.

- 공여국 참석자들은 SEDP 수립시 투명하고 합리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각분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민간, 기업 및 공여국 그룹과의 Consultation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반부패 및 분야별 개혁조치와 관련 베트남 정부는 법치주의(Rule of Law) 원칙의 확산을 비롯하여 제반 개혁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중이며, 이 같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함.

- 개혁의 추진을 위해 선진국들의 경험 전수, 공무원 등 인력 훈련 등 Capacity Building을 위한 공여국들의 지원을 요청함.
- 공여국들은 베트남 정부의 추진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개혁이 지연되는 문제(특히 금융부문)를 지적하고 향후 법치주의 강화, 개혁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조류독감 및 AIDS 예방과 관련, 베트남 정부는 신속예방 및 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공여국들의 지원을 요청함.

- 공여국들은 조류독감 및 AIDS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능한 범위의 지원을 검토키로 함.

□ WTO 가입과 관련, 베트남 정부는 연말가입을 위해 각국정부의 지원을 요망함.

- NGO 단체들은 선진국들이 베트남의 WTO 가입 요구조건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비난하고, WTO 가입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WTO 가입조건의 합리적 완화 등을 요구함.
- 우리 대표단은 6.1 서울에서 한-베 양자협상이 최종타결된 것을 발표하고 한-베 협상타결이 여타국과의 협상추진에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기대함.

※ Vu Khoan 부총리는 수석대표 오찬을 주최한 자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에게 사의를 표하였음.

□ 베트남 정부와 공여국 그룹은 OECD DAC(원조지원 위원회) 채택된 원조조화계획을 베트남에 적용하기 위한 Hanoi Core Statement(HSC)를 발표함.

- 덴마크 등 대부분 참가국들은 금번 회의에서는 HSC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승인할 것을 적극 주장
- 미국, 프랑스 등은 본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HSC 승인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일단 HSC의 평가기준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2010년 목표부분은 추후 협의하는 선에서 합의되었음.

Ⅱ.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에서 공여국들은 베트남 SEDP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베트남 측도 공여국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보임.

- 다만, CG 회의 특성상 경제개발 목표 및 전략, 발전 모델, 투자우선 순위 선정 등 경제적 · 전략적 고려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 행정 개혁, 보건 · 교육, 지역간 균형개발 및 빈곤 감축 등 사회적 이슈에 다소 편향된 것으로 관찰됨.

※ 일본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적하였으나 다른 참가국의 관심을 끌지 못함.

- 특히, 공여국들은 SEDP 수립시 지방정부, 민간부문, 공여국의 참여와 협의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SEDP 형성과정을 강조함.

□ WTO 가입, 반부패 및 각종 개혁조치와 조류독감, AIDS 등 질병통제 분야에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베트남의 제도적 측면과 인적자원 측면, 기초 인프라 등 세 가지 분야에서 Capacity Building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집약됨.

-베트남 정부는 Capacity Building에 필요한 공여국의 원조를 요청하고 공여국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사를 표명함.

□ 금번 회의에 제출되고 공여국들의 승인을 받은 원조 효율성에 관한 Hanoi Core Statement는 베트남뿐 아니라 원조 공여국들의 지원방식과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HCS는 예측 가능성(사전 스케쥴에 입각한 지원) 제고과,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적용, 예산회계 제도 및 감사원칙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 HCS가 우리나라 유무상 원조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본부와 관계부처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함.

□ 한편, CG 회의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 계획과 각종 개혁 등 대상 분야가 넓어지고 폭도 깊어지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NGO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CG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 외에도 각종 실무 그룹회의(WG)가 수시로 개최되는 바, 한-베간 원조 사업 협의뿐 아니라 베트남 각종 정책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베트남 대사는 향후 실무회의 참가 확대 등 적극적인 CG 회의 참가를 추진할 계획임.

[자료:주베트남 KOICA사무소]

스리랑카 개발포럼 2005 결과보고

스리랑카 개발포럼이 스리랑카 Kumaratunga 대통령, Rajapakse 수상, 해외 50개국 150여 명의 대표 및 스리랑카의 각계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5월 16~17일간 스리랑카 Kandy에서 개최되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Ⅰ. 핵심내용

1. 주스리랑카 대사의 발언 요지

□ 주스리랑카 대사는 금번 회의 개최가 지난 4개월여에 걸친 스리랑카의 지진해일피해 구호·복구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한국 정부는 현금(60만불)과 현물(70만불 상당)을 포함한 130만불의 무상원조를 기히 전달하였고, 향후 3개년에 걸쳐 무상원조 1,370만불을 포함한 3,500만불 규모의 구체적인 사업을 현재 스리랑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바, 조만간 결정될 것이며 그 외에도 약 1,000여 명으로 구성된 30여 한국의 NGO들이 7백만불 상당의 구호·복구 지원을 기히 시행하였고,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3개년에 걸쳐 450만불 상당의 재난구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리의 지진해일 피해 지원현황을 설명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또한 스리랑카 정부가 북동부 지역의 지진해일피해 추진 공동조정기구(Joint Mechanism)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동 기구 설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움직임에 동참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스리랑카의 중장기 경제정책 틀(framework) 관련,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강력한 리더쉽과 농촌개혁에 있어서 정신적·사회심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5개년간 6~8%의 고율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지향정책을 후퇴시키지 말 것

을 권고함.

2. 스리랑카측 의의

□ 스리랑카의 복구 · 재건 사업 추진 및 경제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들로부터 20억불 지진해일피해 원조 약속액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공동조정기구 추진에 대해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Kumaratunga 대통령의 동 조정기구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3. 원조공여국측 의의

□ 국정최고 책임자인 Kumaratunga 대통령으로부터 향후 평화과정의 기초가 될 '공동조정기구' 추진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금번 회의의 최대 수확임.

□ 아울러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사업의 '시행(implement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리랑카측에 원조자금 배분상의 공평성,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Ⅱ. 주요내용

1. 회의 개요

1) 동 회의 참석자 : 해외 50개국 150여 명

□ 정부대표 참석국가 :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캐나다,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23개국

□ 국제기구 :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DP, UNICEF, OPEC, 아랍경제 개발을 위한 쿠웨이트 펀드(DFAED), 사우디개발펀드(SFD) 등 17개 기관

□ 스리랑카측 : Kumaratunga 대통령, Rajapakse 수상, Amunugama 재무 · 기획부장관, Kadirgamar 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 · 차관, 국회의원 등 각계 고위인사 다수 참석

2) 회의 내용

□ 개회식

□ 주제 1 :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 2 :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 3 : 평화협상과정 및 향후 방향
(주제발표 및 토론)

2. 회의 결과

1) 개회식 연설요지

가. Chandrika Kumaratunga 대통령

□ Kumaratunga 대통령은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LTTE와 협력하여 북동부 지역의 지진해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공동조정기구(Joint Mechanism)를 진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함.

□ Kumaratunga 대통령은 LTTE측이 주권국가의 틀 내에서 싱할라 및 무슬림 커뮤니티와 동일조건으로 일을 하려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다음 수주 내에 공동조정기구 추진에 합

의하는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동 대통령은 스리랑카의 다수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함.

□ 동 대통령은 공동조정기구가 평화과정의 직접적인 일환은 아니나 종족갈등의 영구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주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밝힘.

나. Sarath Amunugama 재무 · 기획부장관

□ 환영사를 통해 금번회의 주제별 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 관련 향후 3~5년간 약 2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비슷한 액수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약속 받음.
-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 관련 향후 5년간 6~8%의 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전략기업, 인프라, 교육, 보건 및 환경부문 등에 개혁을 추진하고 국내생산성과 투자율을 제고시킬 것임.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평화과정이 필수요건이며 다행히 주요정당들이 예외 없이 전쟁보다는 평화로의 진전 가능성을 믿고 있음.

다. Praful Patel 세계은행 부총재

□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의 향후과제는 '시행(implementation)'이라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시행 관련 다음 4가지 과제를 지적함.

- 이재민에 대한 주택공급관련 택지의 확보 및 배분, 완충지대(buffer zone) 기준의 적용문제 등
- 지역주민과의 협의주선 (consultation arrangement)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조정 (coordination)
- 자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책임성 확보문제

□ Patel 부총재는 또한 스리랑카의 평화과정 관련 지난 3년간의 '정전협정' 유지를 평가하고 북동부 지역의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 지원을 시행할 공동조정기구(Joint Mechanism) 설치를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2) 〈주제 1〉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

가. 국제사회 지원현황

①개요

□ 외국정부, 국제기구 및 NGO를 포함한 스리랑카에 대한 총지원 약속액은 약 22.3억불이며, 그중 7.4억불은 외국정부, 6.3억불은 국제기구, 8.5억불은 NGO 지원 약속액임.

□ 지원약속액의 90% 이상은 무상원조임.

②외국정부 지원

□ 주요 지원국가는 일본(181백만불), 프랑스(104백만불), 캐나다(84백만불), 독일(81백만불), EU(75백만불), 이태리(69백만불), 미국(65백만불), 한국(35백만불), 스페인(25백만불), 인도(23백만불)순임.

□ 국가별 중점지원대상 분야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무상원조는 수산, 도로 및 교량, 교육 분야에 유상원조는 중소기업 지원, 전력, 도로 및 교량,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

음. 프랑스는 도로 및 교량,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주택건설에, 독일은 주택, 수도공급, 전력에, EU는 도로 및 교량에, 이태리는 교육에, 미국은 도로 및 교량, 주택, 중소기업 지원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국제기구지원

□ 주요 국제기구별 지원약속액은 ADB(157백만불), 세계은행(150백만불), EIB(90백만불), UN 기구(69백만불), IFAD(35백만불), WFP(25백만불), UNICEF(21백만불)순임.

□ 중점지원 대상 분야로 ADB는 도로 및 교량, 생계지원,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수산분야에, 세계은행은 주택, 도로 및 교량,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생계지원, 교육, 수산분야에, EIB는 중소기업 지원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음.

④ NGO 지원

□ NGO들의 지원 약속 액은 2005년 3월 현재 약 8.5억불이며 그 중 약 57백만불을 확약함.

⑤ 채무면제 및 상환유예

□ 현재까지 약 42.5백만불의 부채가 면제 또는 상환 연기되었으며, 그밖에 한국의 6백만불을 포함하여 금년중 295백만불이 상환 유예될 것으로 예상됨.

나. 지진해일피해 재건사업 시행원칙

□ 스리랑카 정부는 모든 지진해일피해 재건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Guiding Principles)에 기초를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공평성 확보
- 무차별 원칙(성별, 정치, 종교, 종족등)에 입각한 지원 수요 평가
-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 부여
- 관계자간의 협의 및 의사소통 원활화
- 투명성 확보 및 부패방지
- 책임성 확보 및 관리철저
- 불평등 및 미래 취약성 방지
- 조정의 원활화 및 효율성 제고

다. 토론 요지

□ 주스리랑카 대사는 금번 회의 개최가 지난 4개월여에 걸친 스리랑카의 지진해일피해 구호 · 복구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한국 정부는 현금(60만불)과 현물(70만불 상당)을 포함한 130만불의 무상원조를 기히 전달하였고, 향후 3개년에 걸쳐 무상원조 1,370만불을 포함한 3,500만불 규모의 구체적인 사업을 현재 스리랑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바, 조만간 결정될 것이며 그 외에도 약 1,000여 명으로 구성된 30여 한국의 NGO들이 7백만불 상당의 구호 · 복구 지원을 기히 시행하였고,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3개년에 걸쳐 450만불 상당의 재난구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리의 지진해일피해 지원현황을 설명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또한 스리랑카 정부가 북동부 지역의 지진해일피해 추진 공동조정기구(Joint Mechanism)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동 기구 설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움직임에 동참함.

□ 대부분의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북동부지역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정기구의 설치가 공평한 지원배분 및 신뢰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스리랑카 정부의 추진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또한 복구재건사업에 있어서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참여자들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의 원활화, 무차별 지원, 지방차원의 사업시행능력 구축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그밖에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완충지대' 설정기준의 적용, 피해복구 및 재건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등에 관심을 나타냄.

3) 〈주제 2〉 경제성장과 빈곤완화

가.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틀(Framework)

□ 경제성장율 목표를 현재의 5% 수준에서 6~8%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지역적 불균형 성장 완화 및 빈곤층을 위한 성장전략 추진을 통한 개발효과의 확산

□ 투자 비중을 GDP의 30% 이상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 및 투자환경 개선

□ 국가의 대외보유자산 확충

□ 상기 중장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부문에 대한 개혁 실시

나. 토론 요지

□ 주스리랑카 대사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새마을운동의 예를 들어 농촌개혁에 있어서 정신적 · 사회심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5개년간 6~8%의 고율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지향정책을 후퇴시키지 말 것을 권고함.

□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중장기 종합적인 정책틀(Framework)을 설정한 데 대해 평가하는 한편, 개혁의 추진방법, 시행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의 중요성을 지적함.

4) 〈주제 3〉 평화협상 과정 및 향후 방향

가. 공동조정기구 추진 의의

□ 공동조정기구 설치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6%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 응답자 소속별 지지율 : 싱할라 50.9%, 타밀 93.3%, 무슬림 72.9%, LTTE 100%

□ 현재 논의중인 공동조정기구(안)은 적용지역 및 기간상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기구에 지나지 않을 뿐 평화협상 과정의 일환이 아님.

□ LTTE측이 공동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동 조직을 제도정치권으로 흡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토론 요지

□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공동조정기구 설치 추진에 관한 Kumaratunga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Ⅲ. 관찰 및 평가

□ 현재까지는 해외에서 세계은행 주관 하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스리랑카가 피동적인 입장에서 참가했으나 금번 회의는 스리랑카 국내의 전통적인 옛 고도에서 스리랑카 주관 하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스리랑카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주도하였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킴.

□ Kumaratunga 대통령은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장시간 차분하게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 사업의 과제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동부지역의 재건사업 시행을 위한 공동조정기구 추진 배경, 설치안 및 본인의 강한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회의 참석 대표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이는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약속액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공동조정기구 추진에 대해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Kumaratunga 대통령의 동 조정기구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됨.

□ 원조공여국측은 국정최고책임자인 Kumaratunga 대통령으로부터 향후 평화과정의 기초가 될 '공동조정기구' 추진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지진해일피해 복구 · 재건사업 시행과정상 원조자금 배분의 공평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에 대한 스리랑카의 관심을 환기시킴.

□ 우리 대표단은 토론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들의 지진해일피해 지원 현황과 지원정책 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스리랑카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함.

[자료:주스리랑카 대사관]

Ⅲ. 기타

스리랑카 현황, 쓰나미 원조동향 및 MDG 추진 현황

정 영 선 / 지원사업 3팀

Ⅰ. 스리랑카 현황

1. 정치 및 평화협상(Peace Process) 진행 현황

□ 약 450년간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및 영국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스리랑카는 1948년 Ceylon으로 독립한 이후 여러 정치적 굴곡을 겪어 왔음. 1994년 정권을 잡은 Kumaratunga가 재선을 통해 10여년째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중심제에 수상 중심의 의원내각제 가미로 국정운영을 둘러싼 총리와의 알력관계 심화에 따라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스리랑카 내전은 전체 1,935만 인구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74%)이 소수 힌두계 타밀족(18%)에 대한 차별정책의 반발로 시작되어, 독립국가 수립을 주장하는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 Libertion Tigers of Tamil Eelam)와 정부군과의 내전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2002년 노르웨이의 중재 노력으로 스리랑카 정부와 LTTE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2003년 3월까지 6차에 걸친 회담이 진행됨.

□ 2003년 4월 이후 양측간 평화협상은 중단되었으나 1983년 내전 이후 최초로 현재까지 3년간 휴전상태는 지속되고 있음.

□ 2004년 12월 쓰나미 발생 이후 스리랑카 북동쪽 피해지역에 대한 원조물품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측과 타밀측이 관련 협상을 진행함.

□ 금년 5월 Kumaratunga 대통령이 노르웨이 정부에 평화협상 촉진 역할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노르웨이 협상촉진단이 당사자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협상의제 설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협상당사자간에 이견이 커 협상 재개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임.

〈스리랑카 주요 경제지표추이 및 전망〉

구분	단위	2002	2003	2004(잠정)	2005전망	2006전망
경상 GDP	억 불	165	183	196	NA	NA
인구	십만명	186	188	189	191	193
GDP 실질성장률	%	4.0	5.9	5.2	5.6	6.0
1인당 GDP	불	872	947	1,039	NA	NA
실업률	%	8.7	8.5	8.0	7.4	7.0
수입(FOB)	억불	61	67	72	80	85
수출(FOB)	억불	47	51	54	61	66
재정적자	GDP비중	8.9	8.0	8.6	7.9	7.2
환율(평균)	RS/US$	95.66	96.52	101.18	105.39	109.44

※자료원 : EIU(2004.12), 중앙은행 보고서, World Market Research Centre(2004.12)

2. 경제 현황 및 전망

□ 스리랑카 경제는 2001년 경기침체(-1.5%) 이후 2002부터는 평균 5%의 경제성장률 유지

□ 2001년 2월 평화협정 체결 후 내수경기는 점차 회복 추세임.

- 2001년 2월 스리랑카 정부와 LTTE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약 2년 이상 대규모의 소요사태 없이 평화상태가 유지됨.

□ 실업률은 2002~2005년 통계상 8.8%~8.5%로 과거에 비해 다소 안정화 추세에 있음.

□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001년 14.2%에서 2001년 7.6%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 다시 11%로 상승중임.

□ 2005년 주요 부문별 성장 전망(스리랑카 중앙은행)

- 농업 등 1차산업 2.7%, 제조업 5.3%, 서비스업 6.4% 성장
- 세계시장의 회복과 스리랑카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주요 바이어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미국과 FTA 조속 체결이 관건 (미국시장 비중 70%대)
- 내수시장도 국내수요 호조로 건설분야를 필두로 고성장 전망
- 건설 분야는 인프라, 호텔 등 휴양시설, 아파트, 주택, 오피스 및 상가 등 신규 건축이 활발
- 스리랑카 경제의 55%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별 GDP 성장률 1990~2004〉

	1990~2000 Average	2001	2002	2003	2004
농업분야	2.5	-3.4	2.5	1.6	-0.7
산업분야	6.8	-2.1	1.0	5.5	5.2
제조업	8.1	-4.2	2.1	4.2	5.1
건설	5.2	2.5	0.8	5.5	6.6
서비스업 분야	5.6	-0.5	6.1	7.9	7.6
운송, 저장 , 통신	6.4	3.8	7.6	10.2	13.7
무역	5.5	-6.7	5.6	7.3	5.7
금융, 보험 및 부동산	7.7	7.9	11.1	10.6	6.6
공공행정 및 국방	3.5	1.0	0.0	0.6	2.0
GDP	**5.3**	**-1.5**	**4.0**	**6.0**	**5.4**
국민 저축	19.8	20.3	19.5	21.3	-
총 투자	25.2	22.0	21.3	22.3	25.0
외국인 직접투자 (US$ Mil.)	164	172	197	229	227
민영화 수익	39	90	5.0	30	0

※자료원:스리랑카 중앙은행

부문은 GDP 성장기여도가 70%대로 가장 높고 부문별 성장률에서도 1위를 기록함.

3. 쓰나미 피해 현황

1) 피해 현황

□ 스리랑카 섬을 둘러싼 800마일 해안중 서북쪽 자프나(Jaffna)와 칠로(Chilaw) 사이 100마일의 해안을 제외한 전 해안이 피해를 입음.

- 2004.12.26 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 피해로 스리랑카는 사상 최대의 인적 · 물질적 피해를 입음.

〈쓰나미 피해현황 및 복구 필요예산(단위:백만달러)〉

분야	손실		필요 예산		
	자산 손실	산출물 손실	단기	중기	계
주택	306~341	–	50	387~437	437~487
도로	60	–	25	175	200
물과 위생	42	–	64	53	117
철도	15	–	40	90	130
교육	26	–	13	32	45
보건	60	–	17	67	84
농업	3	–	2	2	4
수산업	97	200	69	49	118
관광업	250	130	130	–	130
전력	10	–	27	40~50	67~77
환경	10	–	6	12	18
복지	–	–	30	–	30
기타	90	–	30	120	150
총계	**970~1,000**	**330**	**500**	**1,100~1,100**	**1,500~1,600**
GDP 비율	**4.4~4.6**	**1.5**			**7.0~7.3**

※자료원 : ADB, JBIC, WORLD BANK(2005)

2) 국민경제상 영향

□ 최대 피해산업인 수산업 및 관광업에 대한 피해는 분석에 따라 GDP의 2~2.5% 또는 GDP의 3.5% 이내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주재국 정부(중앙은행 및 재무부)는 금번 해일피해의 복구 · 재건에 15~16억불(GDP의 7~7.3%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3) 쓰나미 재난복구 추진 중점 전략

□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기본전략은 ①피해 당사자들의 재건복구 참여 유도를 위한 주택 등의 개인사유화 추진 ②실업 및 빈곤 등 극복 지원을 위한 주민생계 지원 ③쓰나미 및 분쟁 피해지역이며 빈곤지역인 스리랑카 북동지역 지원 집중 ④기존시설 복구를 뛰어 넘어 현대적 인프라 구축 지향 ⑤GO 및 NGO간 지원분야 차별화-GO 및 국제기구는 주거행정단지 및 도로, 항만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 NGO는 주택, 병원, 학교 등 건축 지원 ⑥지원 시설물의 향후 유지관리 능력 비용 사전 감안 등

□ 재난복구 추진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

- 재난복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①지역 복구수요 및 우선순위에 의거해 지원 ②중앙정부 및 지방행정조직간 역할 분장 및 보완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③피해지역 및 당사자들과의 대화 ④지원정책 결정 및 실행에 있어 투명성 제고 ⑤향후 자연재해 취약성 사전 예방 ⑥지원사업간 중복 방지를 위한 조정 등

Ⅱ. 스리랑카 국가계발 계획 : 신 개발계획 및 개발과제

□ 스리랑카 정부는 캔디(Kandy)에서 개최된 스리랑카 개발포럼(2005.5.16~18)에서 스리랑카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아래 '신 개발계획(New Development Strategy)' 을 발표함.

□ 신 개발계획의 추진 배경

- 현 수준의 경제성장(5%)으로는 빈곤감축,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실업해소 및 국가부채 경감에 충분치 않음.
- 그간의 시장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정책 등 경제개혁 노력의 성과 부족
- 빈곤지수, 분쟁 및 쓰나미 재건 필요에 따라 전반적인 신 개발 프레임웍이 요구됨.

□ 중기 개발 목표

- 경제성장율 6~8%대 달성
- 지역 개발 불균형 시정을 위한 포괄적 개발 확산
- 국제경쟁력 제고와 GDP의 30% 이상의 투자 유도 등

□ 개발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 전기, 도로, 수송 인프라 부족에 따른 거래비용 및 불확실성 증가
- 정부재정 적자에 따른 공공투자 제한
- 고비용의 자금조달, 시장 불완전 및 부적절한 규제시스템
- 국제 고유가 등 외부 영향에 대한 취약성 등

□ 중기 계획 도전 목표

- 정부 세수를 GDP의 19% 수준까지 증대, 재정흑자 및 공공투자 확대
- 정부부채 비중 점진 축소
- 중기 지출 프레임웍에 따른 공공지출 질적 개선
- 빈곤층에 대한 공공투자, 북동지역 개발, 쓰나미 복구, MDG 목표 달성 등을 위한 집중적 예산 프레임웍 관리 등

□ 정책 실행 계획(Reform Initiative)

- 담당 행정기관의 제도구축 및 역량배양 (Institutional & Capacity Building)
- 거버넌스 및 효율성(Governance & Efficiency)
- 국가 재정부문 개혁
- Business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혁
- 고위험 투자부문의 공공-민간 파트너쉽 제고 등

□ 빈곤감축 실행 정책

- 지역 인프라 구축 및 빈곤층 대상 신용 대출 등
- 유역 및 농촌 관개망 확충
- 지방 도로 복구 및 중소기업 육성
- 신기술, 운영능력 등의 제공을 위해 지방 산업센터 구축
- 지방 전화(electrification) 프로그램 실시
- 지방 상수도 및 위생 사업 착수 등

Ⅲ. 국제사회의 對스리랑카 원조 현황

□ 쓰나미 복구를 위한 필요예산은 총 15억불~16억불로 추정되며 원조공여국(국제기구 및 민간부문 포함)들의 총 공약 규모는 약 24억불로 동 지원규모는 부채탕감분을 제외한 것임.

□ 대부분의 재원은 주택건설, 교통인프라, 농 · 어민 및 중소기업의 활동 정상화에 소모될 것임. 지정학

적으로는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가 총 소요예산의 60%를 차지

□ 원조지원 약속규모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지원 시기와 실제 지원 원조 금액은 불확실한 상태임.

〈쓰나미 복구에 대한 선진국 지원 규모〉

(단위: 백만불)

공여국 & 기관	총공여액	추가예상액	부채탕감 2005	총계
양자원조	**784**	**199**	**339**	**1,322**
프랑스	109		9	118
독일	81		36	117
인도	22	30	5	57
이탈리아	11	149	10	170
일본	180		209	389
미국	62	40	102	
다자기구	**646**	**57**	**0**	**703**
ADB	150			150
World Bank	150			150
UN agency	69	2		71
EU	75	55		130
NGOs/민간분야	**720**			**720**
총계	**2,150**	**256**	**339**	**2,745**

※ 자료원 : External Resource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2005.4.27)

□ 스리랑카 개발계획 및 빈곤감축 관련 원조공여국 공통의견 (스리랑카 개발포럼 논의 내용)

- 스리랑카 정부가 달성한 MDG 개발 성과를 치하하지만 지역간 불균형, 즉 북동지역에서의 소득, 빈곤, 영양부족 부문의 격차는 더욱 벌어짐.
- 금번 쓰나미로 인해 2015년까지의 MDG 달성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답보 상태에 있는 Peace Process는 MDG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 가능
- 또한 금번 개발계획이 공평하고 지속적인 개발계획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절실함.
- 따라서 MDG 달성을 위한 빈곤감축 전략 등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겠음.

※ 한국대표 언급 내용

- 스리랑카 정부가 발표한 중기계획의 목표 달성과 관련, 스리랑카의 당면 현황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사항의 중점적인 추진 필요

①스리랑카의 Peace Process－개발에 있어서 National Consensus 도모 ②스리랑카의 지역발전 불균형－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Development Program 시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③스리랑카의 정부재정 및 세수 확대－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실시 권고

Ⅳ. 한국의 對스리랑카 지원 현황

1. 대 스리랑카 지원실적 ('91~2004)

〈14년간 총 15,039.8천불 지원/연평균 1,074천불〉

(단위: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잠정)
금액	396	398	607	953	1,109	1,741	2,359	673	1,075	743	1,054	1,134	1,443	1,354.9
순위	4/120	6/128	5/133	5/143	4/139	3/140	3/139	12/126	4/128	10/133	10/138	15/123	12/130	-

〈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명	인원/건수	지원액(천불)	세부내역
연수생초청	531명	2,005.2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한의학제도와 전통의학발전, 아시아 폐하수처리시설관리, 관세기법, 산업개발정책과 산업구조조정, 기상예보, 레이더접근관제 등
전문가파견	16명	259.1	농업정책, 컴퓨터, 직업훈련, 도로건설, 경영 등
의료단파견	1명	152.5	한의사
태권도사범	1명	198.6	이기수(2000.4.19~2006.4.18/스리랑카태권도협회)
해외봉사단	169	4,807.6	컴퓨터, 체육교육, 봉제, 용접, 전기공학, 전자, 치과 등
개발조사	4건	1,500.1	열병합발전소건립타당성조사(94-95/150천불) 하튼-누아라엘리야도로개보수타당성조사(00-01/319천불) 푸탈람-트린코말리도로개보수타당성조사(03-04/1,200천불) 도로개보수타당성조사사업(03-04/1,200천불)
물자공여		257.2	서버컴퓨터, 컴퓨터, 서버용 AVR, 방탄복 등
긴급원조		100.4	홍수, 한발피해구호
프로젝트	7건	5,632.2	개방대학 한국어교육 지원사업('93/60천불) 아동복 지원사업 ('93/130천불) 직업훈련원 지원사업('94~'96/2,000천불) 원양어선항법장치 지원('96~'98/2,000천불) 개방대 자동차실습실 지원사업('96~'98/1,000천불) 원양어선 항법장치 지원2차('01~'02/1,000천불) 자프나 기능대학 기능개선사업('04~'05/2,330천불)
NGO지원	2단체	126.9	진각복지재단, 월드비전
계		**15,039.8**	

2. 2005년 사업계획(쓰나미 관련 지원분 제외)

〈2005년 사업계획〉

구분	지원내역	비고
계	**3,650천불**	
연수생	30과정 50명(215천불)	
전문가	1명(25천불) : 수치기상예보(6개월)	신규파견
의료단	1명(75천불) : 한의사	계속파견
태권도사범	1명(62천불)	계속파견
봉사단	100명(1,902천불) - 신규파견인원 40명 : 일반 12, 팀제 20, 협력요원 8	
개발조사	1건(426천불) - 빠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개량 실시설계 ('05-'07/900천불)	
프로젝트	2건 (900천불) : 신규 1, 계속 1 - Zahira College 교사신축 사업 350천불('05-'06/500천불) - 자프나 기능대학 기능개선사업 550천불('04-'05/2,330천불)	
NGO지원	1건(45천불) - 한국복지재단(아동지원사업)	

3. 쓰나미 관련 지원현황

□ 지원액 : 총 15백만불(2005~2007)

□ 내역 : 긴급구호 1.3백만불, 재건지원 13.7백만불

1) 긴급구호 추진현황

- 현금지원 : 60만불 지원완료
- 물자지원 : 70만불 지원완료(담요, 텐트 및 의약품 등 38종)

〈긴급 구호지원내역〉

■ 스리랑카에는 긴급구호차원에서 총 130만불 상당을 기지원
- 긴급구호(130만불) : 현금(60만불), 구호물자(70만불)
- 현지 KOICA봉사단이 재건복구활동 지원에 참여(총 46명)

■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방역 · 방재 봉사단파견 및 긴급구호팀

■ 봉사단파견 : 45명
- 보건의료, 방역 · 방재 봉사단 : 10명/1.12~1.25 (14일)
- 긴급구호팀 파견 : 35명/1.22~2.2 (10일)
 - 경북대학교 19명, 한경대학교 15명, 기자

■ 팀제봉사단 : 18명(3~6개월)

2) 재건지원사업 추진현황

- 지원액 : 13.7백만불
- 추진현황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9가지 사업을 스리랑카에 제시

3) 스리랑카 재건지원 패키지(안)

□ 주스리랑카 대사관은 EDCF 지원사업(2000~2500만불 규모)과 무상지원(1,370만불)을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스리랑카측과 협의 중
- 5.11, 스리랑카, '종합행정단지 건설 프로젝트', 마타라 '도시개발 3개사업(신교량 건설, 화란시대 Fort 유적 보전, 쓰나미 도시공원 조성)'을 최종 선정, 아측에 요청

□ UNDP를 통한 지원액 총 50만불 중 20만불을 스리랑카의(Environment-Sustainable Recovery of Natural Resources) 지원에 배정

〈스리랑카 재건지원 패키지(안)〉

사업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비(천불)
① 피해 어촌지역 재건지원 - 어선항법장치지원사업(250만달러) - 제빙시설지원(100만달러)	Galle, Trincomalee,Hambantota, Kalutara, etc	2005~2007	3,500
② 학교건축사업	〃	〃	5,000
③ 병원건축사업	〃	〃	4,000
④ 피해 어항 복원사업	〃	〃	200
⑤ 물자지원	Little Basses Area, Great Basses Area	〃	300
⑥ 연수생초청	-	〃	100
⑦ 조기 경보체제 구축	Galle Area	6개월	500
⑧ 농업기반시설 복구	Hambantotoa, Ampara	12개월	3,280
⑨ FRP 어선제공			450

Ⅴ. 스리랑카의 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 추진 현황

□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천년개발목표(MDGs)달성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초등교육, 성평등, 영·유아 및 모자 사망률 감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영아사망률 감소성과는 높지만 영양실조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빈곤감소 분야의 실적은 저조한 편임.

〈스리랑카 정부의 MDG 추진 현황〉

MDG 목표	스리랑카의 상황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현재 총 초등학교 입학률 96%
2015년까지, 초·중등교육의 성불균형 철폐	모든 교육수준에서 성평등 달성
1990년~2015년 사이, 영·유아 사망률 2/3 감소	975년~2001년 사이, 출생 1,000명당 영아사망률 45명에서 12명으로 감소, 유아 사망률은 100명에서 17명으로 감소
1990년~2005년 사이, 모자사망률 3/4 감소	모자 사망률(출생 100,000명당 23명), 중간 소득 국가 기준
1990년~2015년 사이, 빈곤률 절반 감소	빈곤은 1990~1991년 26.1%에서 2002년 22.7%로 감소

□ 스리랑카 정부는 MDG Report에서 아래와 같이 빈곤감소 및 균형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제시함.

가. 공공재정 관리

- –GDP의 105%에 이르는 공공부채 감소
- –부가가치세, 소득세증가 및 세무기관 개혁을 통한 세입증대
- –GDP의 4%에 이르는 공무원 임금의 안정적 지불

나. 공공서비스 개선

- –임금 및 고용정책 개혁
- –공공지출의 우선순위 결정 및 빈곤감소전략과의 연계
- –공기업의 역량강화

다. 농업의 활성화

- –토지소유권 및 토지거래권의 보장
- –선진 영농기술 전파 확대
- –무역환경조성 및 관세 삭감을 통한 농산품의 가격왜곡 축소
- –효과적 수자원 정책 수립을 통한 안정적 수자원 활용
- –기본적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

라. 수출주도형 성장 촉진

- –유연한 외환정책 및 낮은 관세정책 유지
- –인도, 미국과의 FTA 교섭 및 확대를 통한 무역자유화 촉진
-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 투자정책 강화
- –전력 및 교통인프라 개선 정책안정성유지 등 자유로운 무역여건 마련 등.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소개 : 스리랑카 사무소 경험을 바탕으로

박 재 현 / 전 UNHCR 스리랑카 사무소 난민구호팀장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된 이래로 난민의 문제는 항상 있어왔다. 근대에 이르러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인해 난민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난민문제의 국제적인 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구가 바로 유엔난민기구이다. 본 원고에서 필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했던 유엔난민기구 스리랑카사무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국제난민문제와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전 세계 난민의 보호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1950년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박해를 받아 자신의 나라를 떠나게 된 120만여 명의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시기구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난민문제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자 그 위임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03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유엔난민기구의 시간적 제한을 없애 난민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하도록 위임받았다.

오늘날 유엔난민기구는 인도적인 구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된 국제기구 중 하나로서 전 세계 116개국에서 6,100여 명의 직원이 17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 숫자는 난민을 비롯하여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자국 혹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보호가 필요한 귀환자(returnees), 정식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전 단계인 난민신청자(asylum-seekers), 난민 발생과 연관성이 많은 무국적자(stateless)들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난민과 특히 스리랑카사무소의 활동과 관련이 많은 실향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난민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1]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난민을 위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주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 하나는 난민의 보호이며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그들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전자를 위한 활동으로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의 강제송환으로부터의 보호[2], 1951년 난민협약 가입국 정부의 이행 감시, 난민캠프나 비호국에서 발생되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가 있다. 후자를 위한 활동으로는 세 가지의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첫째는 귀환이 가능한 조건이 갖추어 졌을때 본국으로의 귀환, 둘째는 비호국에서의 생활정착, 마지막으로는 제3국으로의 재정착이 있다.

2. 실향민

난민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은 자에 국한된다면 난민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단지 국경을 넘지 않은 자들의 경우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들은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인데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에서 2천5백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내전으로 인하여 피난을 떠났으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만 자국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들 중 440만 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실향민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특별히 유엔총회나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아, 국적국이나 관련된 권력집단(반군 등을 포함)의 허가 하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

주요 난민 발생지 (국적지)	2004년 말
아프가니스탄	2,084,200
수단	730,600
부룬디	485,800
콩고민주주의공화국	462,200
소말리아	389,300
팔레스타인[3]	350,600
베트남	349,800
라이베리아	335,500
이라크	311,800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50,600

Global Refugee Trends, UNHCR Geneva, 17 June 2005

주요 실향민 발생지[4]	2004년 말
콜롬비아[5]	2,000,000
수단	662,302
아제르바이잔	578,545
라이베리아	498,566
스리랑카	352,374
러시아	334,796
보스니아	309,240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248,154
그루지아	237,069
아프가니스탄	159,549

Global Refugee Trends, UNHCR Geneva, 17 June 2005

1)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난민의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는 국제법상 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3)유엔난민기구의 위임대상만을 포함.
4)유엔난민기구의 위임대상만을 포함.
5)콜롬비아 정부통계자료에 의함.

Ⅱ. 유엔난민기구의 연혁

1950년 유엔총회에서 난민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설립됨.

1951년 난민문제에 국제법적인 틀이 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

1954년 유엔난민기구가 노벨평화상 수상

1967년 유엔총회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채택으로 1951년 난민협약에서의 시간, 장소의 제한이 사라짐.

1981년 유엔난민기구가 노벨평화상 수상

1994년 유엔난민기구의 대상자가 2천7백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990년 연간 5억9천4백만 달러에서 1990년대 말에는 연간 10억 달러로 예산이 증가함.

Ⅲ. 유엔난민기구의 운영

유엔난민기구의 프로그램, 난민보호체제 등의 정책은 6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승인을 받으며, 실무적인 부분은 주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가 담당한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은 유엔경제사회위원회에 다른 기구와의 협력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유엔총회에는 연간활동 보고를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 주로 각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6]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에 정부간기구, 기업체, 개인도 기여한다. 또한 행정비용을 위한 유엔 정규예산과 운송수단, 의약품, 텐트 등의 현물기여도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기본 프로그램과 긴급사태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연중예산으로 집행되며 연중예산 책정 후에 발생된 긴급한 난민, 귀환 사태를 위해 추가예산을 배정받기도 한다.

Ⅳ. 유엔난민기구 스리랑카사무소의 활동

1. 스리랑카 내전개요와 유엔난민기구

스리랑카의 내전은 다수의 싱할라족과 소수의 타밀족 사이의 민족간 분쟁으로 시작하여 1983년부터는 폭탄테러를 일삼는 반군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iberations Tigers of Tamil Eelam)'와 정부군 사이의 유혈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19년간 주로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었고 일부는 이웃인 인도에서 난민생활을 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스리랑카 내에서만도 수없이 피난을 다녀야 했고 인도에서 난민생활을 하다 귀환한 후에도 재발한 전쟁 때문에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다. 2002년 2월 노르웨이 정부의 중재로 현재는 휴전 상태에 있지만 몇 차례의 평화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2002년 휴전 당시 약 80만 명의

6)가장 큰 기여국은 미국으로, 매년 유엔난민기구 예산의 25% 이상을 기여한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 유럽연합,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주된 기여국이다.

국내 실향민이 있었고 약 8천5백 명의 난민이 인도 남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유엔난민기구는 1987년부터 인도로 피난 간 난민이 스리랑카로 귀환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스리랑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실향민이 증가하자 1991년에는 유엔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와 반군의 허락 하에 실향민에 대한 지원활동도 시작했다. 2002년과 2004년 6월 사이에 약 50%의 실향민(370,000명)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아직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내전에 대한 해결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향민들의 자발적 귀환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유엔난민기구는 수도인 콜롬보에 있는 대표사무소를 비롯하여 주로 전쟁이 일어났던 북부와 동부에 6개의 필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필자가 근무했던 킬리노치사무소는 반군점령지의 수도격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02년 2월 이후 휴전 당시의 양해각서에 따라 반군의 점령지는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 독자적인 사법권, 경찰권,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지만 정치, 행정, 경제권에 있어서는 정부기구와 반군의 기구가 상존하거나 정부의 형식적인 대표가 반군점령지에서 활동을 하는 등 절충적인 모습을 보인다.

2. 스리랑카사무소의 활동

다음으로 스리랑카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은 보호(protection)인데 이는 난민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 인도법에 근거해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의 모든 활동은 '보호'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비물질적인 성격이 강한)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주로 물적인 지원을 일컫는 생계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난민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보자는 시도 중 하나로 구호와 개발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목적으로 시작된 4R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난민, 실향민, 귀환자의 인권 보호

난민, 실향민, 귀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우선 국내적 보호(national protection)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그 국가에서 책임을 갖고 인권 보호를 하도록 하는 일로서 정부나 인권단체, 법률지원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capacity building)이 포함된다.

그러나 필자가 일했던 반군점령지의 경우 상황이 좀 복잡한데 우선 그 곳을 지배하는 반군이 정부와 관련된 인권, 법률단체의 활동을 불허한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반군점령지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정부 관료들이나 반군의 정치부, 사법부, 경찰 관계자들에게 난민과 실향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인권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또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제기구(유니세프, 국제적십자 위원회, Sri Lanka Monitoring Mission[7])와의 정보공유와 케이스 의뢰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난민과 실향민의 기본적인 인권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것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주된 활동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는 우선 반군점령지로 귀환자가 돌아왔을 때에 자발적으로 귀환을 했는지, 또는 귀환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장기간 피난생활로 인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서(출생, 결혼 증명서, 신분증)의 소실이 우선 기본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필자의 근무지에서 기록된 인권문제 중에는 반군에 의한 18세 미만 아동의 징집, (18세 이상의) 강제 징집, 자의적 구속과 구금, 사회적 취약여성에 대한 성폭력, 반군에 의한 재산(집, 토지, 농장) 갈취, 소수민족인 무슬림족에 대한 차별 등이 있다.

이런 개별 케이스가 보고되면 우선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 후 관련 정부나 반군 기관에 의뢰한다. 아동징집의 경우에는 유니세프가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의뢰한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필자의 근무지가 반군 점령지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반군점령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찰이나 사법부 혹은 인권단체를 모두 반군이 운영하고 있어 이들에게 직접 의뢰를 할 경우 반군의 권위를 인정하는가에 관한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반군지도층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해결책보다는 외교적 협상식의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해야 했다.

2) 난민, 실향민, 귀환자 생계지원 프로그램

귀환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당장 필요한 구호물품 중 식량은 세계식량기구가 정부조직을 통해 일정기간 배급하고 그 이외의 품목[8]은 유엔난민기구에서 가족 단위로 한 팩씩 공급한다. 방수포(임시지붕이나 깔개 등 다양한 용도), 모기장, 돗자리, 물통, 대야, 취사도구, 비누, 간단한 의류 등의 품목이 들어 있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품목을 반영하기도 했다.[9]



귀환자들의 마을과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임시시설 확충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우물을 파거나 화장실을 만들거나 기초적인 학교건물이나 병원시설을 건설하고 임시주거지를 만드는 등의 일이 포함된다. 특히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희생된 사회적 취약 여성(과부, 전쟁으로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해 생계 지원과 아울러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 주변에 울타리를 짓고 화장실을 만들었다.

실향민이나 귀환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기구, 어구, 가축을 비롯해서 생계를 위한 직업훈련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지원의 경우 마을단위로 충분한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이

7)휴전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 감시를 위해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파견단
8)NFRI (Non-Food Relief Items)라고 불린다.
9)2003년의 경우를 한 예로 기존 팩의 구성물 중 내구성이 없는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으로 몇 개 품목이 제외되었고 임시주거지를 짓거나 기본적인 농사를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건의 하에 간단한 연장이 추가되었다.

경우 마을단위의 CBO(Community Based Organization)나 현지 NGO의 역할이 크다.

3) 4R 프로그램 – Repatriation, Reintegration, Rehabilitation, Reconstruction(귀환, 사회복귀, 생계복귀, 재건)

보다 근본적으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이나 실향민 사태가 발생하는 국가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구호와 개발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자 2003년에 여러 유엔기구의 공동사업으로 4R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스리랑카를 비롯한 4개국이 파일럿 프로젝트지로 선정되었는데 그 중 스리랑카에서는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 국제노동기구, 세계식량기구가 덴마크 정부(DANIDA)의 재정지원 하에 참여하고 있다.

4R 프로그램에 따라 난민, 실향민 사태 발발 직후에 긴급구호의 성격을 띠고 우선 일을 시작하는 유엔난민기구의 경우 귀환이 진행됨에 따라 단계적 철수(phase-out)를 하고 장기적인 개발을 주로 하는 기구인 유엔개발계획, 국제노동기구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넓히는(phase-in) 형식을 취한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의 경우에는 기구 내 프로그램의 성격을 구호에서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점은 구호에서 개발로 넘어갈 때 틈이 없는 원활한 전환이다.

이를 위해 우선시되는 것은 기구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조체제이며 또한 정부와 현지단체, 수혜자의 지속적인 참여이다. 필자가 참여한 초기단계에서는 각 부문(주거, 위생, 교육, 기술교육, 소득산출)에서 기구별 사업의 단계적 철수와 확장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V. 문제점과 한계

유엔난민기구 스리랑카 사무소의 활동을 통해 본 난민과 실향민 관련 지원 활동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향민을 대상으로 활동할 때의 어려움은 실향민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실향민 발생국 정부나 다른 권력자들이 실향민에 대한 접근조차 제한하여 인권보호나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나 권력자들의 책임의식의 부족으로 국제기구가 어디까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리랑카의 경우 아직 전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반군점령지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반군과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국제기구가 반군을 인정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한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기도 한다.

국제법적으로는 실향민의 보호에 대해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를 채택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실향민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를 규범화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전시에 실향민과 민간인의 보호를 규정한 국제인도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인권법이 존

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향민의 보호를 국제법으로 만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유엔 내에서 실향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펴고 있지만 실향민을 전담하는 유엔기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가 난민문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실향민에 대한 보호 지원 활동을 세계 각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된 국가에서 활동하는 실정이다. 주무기관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난민, 실향민 사태가 발생하는 곳에는 의례 다양한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각국 정부의 개발협력기구, 국제 NGO, 국내 NGO 등이 지원활동을 펴게 되는데 성격도 목적도 이해관계도 다른 이 기구들 간의 활동을 체계화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서로간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지만 때로는 정해진 지원금이나 대상 지역 혹은 주민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무모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기구에 대한 비건설적인 비판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원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국제적인 일이다보니 모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값진 시간과 노력을 쓸데없는 경쟁과 비판에 허비하는 일이 많다.

이와 관련되어 전후 단계(post conflict phase)로 돌입한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구호(relief)와 개발(development) 간의 차에 관한 문제가 있다. 구호가 주 목적인 기구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사태에 개입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임시방편적인 활동을 하는 단점을 갖기 마련이고 또한 개발 기구들은 긴 안목으로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개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상 정부나 권력자, 대상 주민이 더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오고 친숙한 구호 위주의 기구들에게 개발적 성격의 지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구호 위주의 기구들은 개발적 성격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개입속도가 느린 개발기구가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리한 프로젝트를 맡는 경우도 있다.

앞서 소개한 4R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유엔기구들의 시도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앞서 활동을 시작한 구호적 성격의 기구가 갖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개발기구에 전달하고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철수하여 개발기구들이 사업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기구들의 활동을 체계화하는 일(coordination)의 한계와 각 기구의 인력, 자금운용의 차이로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많다.



굿네이버스

안 승 진 / 굿네이버스 국제협력부장

Ⅰ. 개요

굿네이버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코자 1991년 3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국내에서는 전문사회복지기관으로서 아동복지사업, 종합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긴급구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르완다, 케냐,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이집트,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이라크 등 13개국과 2004년 12월 말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 · 해일피해에 총 23진의 긴급구호요원 파견 및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지속적인 구호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총 15개국에서 국제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촌은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 50여 년간의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의 4분의 1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3.6초마다 1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빈곤과 소외, 환경, 인권, 교육, 여성, 보건, 평화문제 등 인류가 함께 풀지 않으면 안되는 전 지구적 문제들은 더욱 심화 · 확대되어 왔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2004년 세계경제규모 12위국으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는 기적을 일구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원조단체에 의해 600여 개의 고아원이 만들어져 불우아동을 돌본 역사로부터 출발하여 1970년대까지 약 130여 개의 외국원조단체들이 국내 활동을 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고도경제성장과 88 올림픽 성공개최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외국원조단체들이 철수하였고, 이후 한국의 자생 국제NGO들이 속속 탄생하게 되었다. 굿네이버스(구 한국이웃사랑회)는 이런 전환점에서 한국의 토종 해외원조 NGO로 태동하였다.

굿네이버스는 르완다 난민구호활동을 위하여 1994년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NGO 등록을 하였으며 한국 최초로 UN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으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았다. 1995년 8월 신의주초등학교 빵급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북한동포 식량 지원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1998년 북한 남포근교 유 ·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우유급식을 위해 젖소 200마리를 북한 대안 및 용강 젖소목장에 지원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우유생산기자재, 사료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질병퇴치를 위해 항생제 생산을 위한 병주사제 공장을 완공하여 생산중이며, 보다 광범위한 주민 보급을 위해 캡슐항생제의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그리고 14개의 육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직항 방북을 통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Ⅱ. 설립목적 및 사업추진방향

1. 설립목적

굿네이버스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의 빈곤문제를 조사 · 연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3대 사업추진 방향

1) 아동권리보호(CRC)

굿네이버스 사업의 주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충실히 이행해나감을 원칙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아동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기획, 추진하는 것이다.

2) 지구촌 네트워크(Network)

굿네이버스의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끌어내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자원봉사자, 파트너 및 지역위원회와 같은 방계조직 등의 조직화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며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로 활용하여 자원개발 전략 포인트가 되게 한다.

3) 사회교육(Advocacy)

굿네이버스의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정부 또는 대중을 향하여 시민사회교육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거나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한다. 캠페인 사업, 대정부사업(Lobbying), 세미나 개최를 통한 사회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Ⅲ. 연혁

1991년 3월	굿네이버스(구 한국이웃사랑회) 창립(회원 128명)
1991년 6월	사단법인 허가 취득(보사 제783호)
	사회복지시설아동 지원사업 및 도시빈곤가정 복지사업 개시
1991년 11월	농촌지역 개발사업 개시(강원도 평창)
1991년 12월	방글라데시 구호 · 개발사업 지원 개시
1992년 5월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제1, 제2복지회관 개관
1993년 6월	6.25 상기 지구촌기근퇴치를 위한 제1회 전국민 사랑의 굶기운동 개시
1993년 10월	소말리아 난민구호활동 전개
1993년 11월	경남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개관
1993년 12월	제1회 전국아동복지지도원 연찬회 개최(연례행사)
1994년 2월	충남 아산시 온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4년 8~11월	국내 최초로 르완다 난민 긴급구호 및 의료봉사단 1차팀 8명 파견 이후 총 8차팀 94명 파견
1994년 8월	자이레 고마 UNHCR(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NGO 등록
1995년 3월	부산지부 등 8개 국내지부 개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NGO 등록
	자이레 고마의 르완다 난민촌내 상설사무소 개설
1995년 5월	미국이웃사랑회 현지법인 등록
1995년 8월	북한 신의주 어린이 급식사업 개시
1995년 12월	이웃사랑회 케냐지부 현지법인 NGO 등록
1996년 3월	창립 5주년 및 UN 제정 세계빈곤퇴치의 해 기념 후원의 밤 실시
	이웃사랑회 국제본부 설립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격 변경(제813호)
	아동학대 상담사업 개시
1996년 7월	이웃사랑회 방글라데시지부 현지법인 NGO 등록
1996년 8월	UN ECOSOC(유엔 경제사회이사회)으로부터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획득
1997년 5월	북한동포지원을 위한 이웃사랑회 대표단 1차 방북(연례 방문)
1997년 6월	제1회 세계아동평화상 개최
1997년 7월	이웃사랑회 이디오피아지부 현지법인 NGO 등록
1998년 8월	이웃사랑회 타지키스탄지부 현지법인 NGO 등록
1998년 9~11월	대북 낙농개발사업 및 어린이 우유급식을 위한 젖소 200마리 지원
1999년 3월	창립 8주년 기념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모금만찬회 실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독자창구'로 지정
1999년 3~12월	우유멸균기, 크림분리기, 수정기기, 사료, 의약품 등 낙농기자재 대북지원
1999년 5월	코소보 난민 긴급구호요원 파견
1999년 5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파란리본달기 캠페인' 시작
1999년 8~9월	터키 지진참사현장 긴급의료봉사단 파견(총 2진 13명 참가)
2000년 2월	일본이웃사랑회 창립

2000년 7월	이웃사랑회 르완다지부 현지법인 NGO 등록
	아동복지법 개정에 참여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강화)
2000년 10월	보건복지부 산하 5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정
2001년 1월	전국 20개 지역복지센터사업 시작
2001년 2월	인도 대지진참사 긴급의료봉사단 5명 파견
2001년 3월	북한 14개 육아원과 평양 제2인민병원 아동병동 지원합의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실시(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참석)
2001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을 위탁받음
2001년 11월	아프간 난민을 위한 긴급의료봉사단 파견
2002년 3월	북한 젖소 100두 지원
2002년 4월	아프간 지부 현지 NGO 등록
2002년 8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 명칭 변경
	평양 안과병원 건립 의향서 작성
2002년 10월	본회 홈페이지 리뉴얼 및 도메인 변경
	북한 삼석, 서포, 사리원 닭목장 지원에 대한 합의서 작성
2002년 11월	네팔 지부 현지 법인 NGO 등록
2003년 1월	전국 12개 지역복지센터 방학교실 운영
2003년 2월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
2003년 3월	북한 젖소 30두 지원
2003년 4월	의정부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정
	이라크 긴급구호의료봉사단 파견
2003년 8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외통부 등록
	국제협력단(KOICA)에 NGO 등록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긴급구호활동 실시(경남, 전남, 강원 수해지역)
2003년 10월	북한어린이 우유급식사업을 위한 젖소 50마리 지원
2004년 1월	북한육아원 아동을 위한 분유 11톤, 신축보수자재 2종 지원
	이란 밤시티 지진참사 현장조사요원 파견 및 지원
2004년 4월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긴급구호 실시
2004년 5월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10개소 지정
	중앙일보 위스타트 운동 첫 캠페인으로 '파란리본 달기 캠페인' 실시
2004년 5월~6월	아동학대예방센터 11개소 추가개소
2004년 6월 3차	남북직항 모니터링 대표단 103명 방북
	굿네이버스 이라크 지부 현지 법인 NGO 등록
2004년 8월	본회 웹진 구독 웹회원 50만 등록
2004년 9월	결식아동지원사업 '우리이웃학교' 5개 지역 실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북)
2004년 11월	경상북도로부터 경북아동학대예방센터 지정 · 운영
2005년 12월~4월	남아시아 지진 · 해일대참사 긴급구호팀 23차 파견(스리랑카, 인도네시아)
2005년 1월~4월	아동보호종합센터 6개소 개관
2005 6월	베트남 지부 현지 법인 NGO 등록

Ⅳ. 사업 소개

1. 해외원조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1) 방글라데시

가. 텔레구 보육원

방글라데시 북동부 차밭 종사자인 텔레구 부족 등 천대받는 아동 600명에게 연중 의식주 제공 및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밧따라 초등학교

수도 다카 내 초등학교 운영을 통해 도시빈민아동 4,800명에게 정규초등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가타일 초등학교

북부 농촌지역 내 초 · 중 · 고등학교와 도서관 운영을 통해 시골빈민아동 4,800명에게 정규교육을 실시하며 보건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아동 4,800명을 진료하고 질병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밀뿔, 굴산 빈민 모자보호센터

수도 다카 빈민지역에 12개 모자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빈민 영 · 유아 400명을 주간 동안 보호 · 양육하고, 빈민 모자 300명에게 보건교육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빈민 임산부 360명에게 태교관련 교육과 상담 및 출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이 없는 빈민모자 60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마. 시라지간지 농업개발사업

북부 시라지간지 농촌지역에서 연간 빈곤영농후계자 1,060명에게 농업훈련, 목축, 양어, 작물 재배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빈민지역 여성 240명에게 봉제훈련을 실시하며 의료보험조합, 대여사업, 청년봉사훈련원 등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케냐

가. 지라니 교육센터

도시 슬럼지역 빈민아동 1,200명에게 초등정규교육과 영양급식을 실시하고 600명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 고로고초 지역보건사업

수도 나이로비 내 거대슬럼인 고로고초 지역의 주민 2,400명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메구아라 지역개발 사업

트랜스마라의 메구아라 농촌지역에 인공저수지를 축조하여 가축들에게 식수를 제공,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3) 에티오피아

가. 멜캄 어린이집

수도 아디스아바바 내 빈민지역에서 학령전 아동 연 1,564명의 양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1,200명의 학생에게 급식지원, 240명의 학생에게 의류지원, 2,040명에게 기초보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12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리데타 가정개발사업장

리데타지역 빈민아동 8,761명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1,365명에게 급식, 1,365명에게 의류 지원, 12,285명에게 의료 서비스 및 20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822명의 부모에게 아동양육기술을 훈련시키고 있다.

4) 르완다

가. 가추리로 탁아센터

학령 전 아동 연인원 1,800명에게 기초교육 및 급식을 실시하고 아동 600명 대상 조기질병발견 및 대처를 위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가추리로 직업훈련사업

대부분이 극빈 가정인 지역 주부 1,200명에게 재봉 기술반을 운영하고 키갈리 도시 빈민 지역 9,600명의 소득 증대 및 자활을 위한 돼지분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 레메라 루꼬마병원 사업장

한국인 또는 현지 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연간 2,400명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레메라 루꼬마 말라리아 예방사업

레메라 루꼬마 병원 인근의 6개 클리닉에서 연간 24,000명에게 말라리아약 지원을 통해 적기치료를 돕고 있다.

5) 타지키스탄

가. 다브로사셋스트바 보육원

전쟁고아 등 연간 372명의 아동에게 교육, 급식 및 의류, 의료지원,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나. 바흐다트 유치원 및 초등학교 사업장

전쟁미망인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운영을 통해 연간 1,296명의 아동에게 급식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 레닌스키 보육원

그룹홈 형식의 농장에서 연인원 96명의 학령전 아동들에게 농장 참여형 친환경적인 교육과 급식, 의류,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라. 물품지원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의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배분하고 있다.

6) 네팔

가. 샹글라 보육원

수도 카트만두 인근 샹글라 지역의 빈민아동 연인원 312명에게 의식주 지원과 교육 및 의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나. 버디켈 보육원

수도 카트만두 인근 버디켈 지역 빈민아동 연인원 312명에게 의식주 지원과 의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다. 버디켈 초등학교

버디켈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 연인원 1,200명에게 양질의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년 4회에 걸쳐 진료 및 예방접종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 40명 대상 연 2회의 문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카트만두 교육센터

수도 카트만두 빈민지역 주민 연간 600명에게 컴퓨터, 영어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 아프가니스탄

가. 자말미나 초 · 중등학교

수도 카불의 자말미나 초 · 중학교 학생 중 700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외부후원자들과 결연, 아동 개인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방학교실 운영 및 연 2회 교사세미나와 연 2회 야외활동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나. 초음파진료센터

연간 10,000명의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진 40명에게 초음파 트레이닝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건축을 완공할 예정이며, 약 45,000명의 아프간 여성들에게 영어, 컴퓨터, 사무행정, 모자보건 교육 등 여성인권증진을 도모하고 여성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및 각종 문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라. 물품지원

의류,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가난한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8) 캄보디아

가. 뱅몽초등학교 급식사업

캄보디아 국경 빈농지역에 위치한 뱅몽초등학교 아동 2,400명에게 매주 5회의 도시락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발육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낙후된 초등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책상 등 학교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나. 뱅몽어린이집

뱅몽 빈농지역 취학 전 아동 50명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연 2회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다. 식수개발사업

뱅몽 빈농주민 560명의 식수확보를 위해 대상 지하수를 개발하고 정수기를 보급하여 양질의 식수를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9) 필리핀

필리핀 민다나오 섬지역 중심으로 빈민조사 ·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10) 베트남

농촌개발 및 소득증대사업 : 베트남 하빙성의 빈농가정 100가구 대상 염소 대부 및 치즈가공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특용작물 재배 및 교육을 통한 영농

개선사업 및 5곳의 우물시설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농촌개발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11) 탄자니아

기생충 퇴치사업 : 4개 지역 초등학생 및 지역주민 3백만 명 대상 기생충 감염실태와 기초 건강상태 조사 및 구충제 투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12) 이집트

카이로, 에즈베트 엘 나클 빈민지역 의료 및 교육개발 사업 : 자발린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공사가 중단된 병원을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지역 클리닉 1개소를 보수하여 기초진료, 보건예방교육,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빈민아동 1,68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방과후 교실을 실시하고 빈민지역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강좌를 개설하여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13) 스리랑카

남아시아 지진해일 참사 피해지역인 스리랑카의 마타라지역에 긴급구호팀을 11차례에 걸쳐 파견하여 긴급구호물품(의약품, 학용품, 교복, 복구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방역사업 및 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빈민아동 대상 방과후 교실을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코마리 지역에서는 보건 및 컴퓨터 교육사업과 생계도구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4)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지진해일 참사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록소마웨와 믈라보 지역에 11차례에 걸쳐 긴급구호팀을 급파하여 긴급구호물품(의약품, 의류, 학용품, 식량,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고 이동진료사업과 방역사업, 아동정서치료사업, 식수개발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장기사업으로 이재민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15) 국제협력사업

가. UN 뉴욕 연락사무소 운영

뉴욕 연락사무소를 통해 뉴욕 UN본부 회의 참석 등의 활동으로 UN과의 업무 · 정보를 교류하고 증진해 나가고 있다.

나. Good Neighbors Volunteer(GNV) 프로그램

연 2회 해외 자원봉사자를 모집 · 훈련시켜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다. 연구개발사업장

국제적 NGO 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제3세계 빈곤욕구 등을 연구,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개발요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시킨다.

라. 국제자원연구개발사업(IRDT)

국제적인 후원기구 또는 모금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2. 대북협력사업

1) 축산개발사업

가. 낙농개발사업

평양시, 남포시, 사리원시에 위치한 4개의 젖소목장을 운영하여 젖소 400마리와 우유생산기자재, 사료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우유를 목장 인근 어린이(연인원 2,270,000명)에게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 양계개발사업

평양과 사리원시에 있는 4개의 닭목장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종란(종자계란) 및 양계설비 개선을 위해 수의약품을 지원하고 양계기술자를 파견하고 있다.

다. 협동농장 지원 및 기술지원

농장시설 및 농기계류, 비닐하우스, 철심, 비료 등의 농장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낙농기술자, 종계장 및 부화장 기술자 등을 10회에 걸쳐 파견, 교육하고 있다.

라. 사료공장 건립사업

개성지역에 사료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료공장을 통해 사료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술증진을 위해 사료전문기술자를 파견,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육아원지원사업

2000년 12월부터 북한 전역의 12개 시 · 도에 있는 14개 육아원 0~4세 어린이 4,700명(연인원 1,715,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원의 원아들에게 분유, 밀가루 등 영양식 및 건강 보조식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영양결핍을 개선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용품, 교육용품, 시설보수물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평양육아원과 남포육아원을 현대식 건물로 준공하였으며, 사리원육아원 신축공사를 추진중이다.

3) 보건의료사업

가. 평양 제2인민병원 아동병원 지원

2001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치료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아동병동의 개보수,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평양어린이심장전문병원 건립사업

2004년도부터 선천성심장병 및 각종 심장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아(연인원 110,000명)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을 건축중이다.

다. 정성제약 병주사 항생제 생산공장 건립사업

절대적으로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인 북한 주민들에게 제약생산 설비를 지원하여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며, 환자들의 보건환경을 개선하고자 항생제 생산을 위한 정성제약 병주사제 생산공장을 2005년 1월 완공하여 지금까지 항생제를 생산하고 있다.

라. 대동강제약 캡슐항생제 생산공장 건립사업

정성제약 연구소 병주사제 공장 완공 이후 필요한 항생제 공급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원으로 판단되는 캡슐항생제 공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10월까지 공장 건립과 시험생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4) 민족화해교육사업

2002년 12월부터 평양 제4소학교 외 북한 전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각 시 · 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북한 교육자재 및 학교 개보수자재를 지원하고 교육교류를 위한 대규모 방북을 추진하며 시민사회교육을 실시한다.

5) 모니터링 방북

1997년 5월 1차 방북한 이래 2005년 6월까지 총 101회, 1,009명의 대표단이 물자지원 확인 및 사업협의를 위해 방북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북지원물자의 투명성을 확인시켰으며, 인적교류 확대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치된 남북관계 속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3. 국내복지사업

1) 아동복지사업

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또는 부모의 가출로 버림받았거나 장애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설로 보내진 아동들을 돕기 위하여 전국 38개의 아동복지시설을 본회 협력시설로 지정하여 교육비, 보건 위생비, 재활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나. 아동학대예방센터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시 · 도 지정 19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아동학대사례를 접수하며 아동전문상담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심리검사 및 치료사업과 아동보호사업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다. 피학대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시설은 피학대아동을 위한 일시격리 및 단기보호를 통해 가정 복귀 또는 타 보호시설 입소를 준비하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굿네이버스는 9개의 쉼터(그룹홈) 운영을 통해 피학대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교육을 실시하여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감소시켜 정서적 ·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가족기능 회복을 통하여 2차적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 지역공부방

3개의 지역아동센터 및 18개의 협력공부방 운영을 통해 결식 · 방임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주간보호 및 학습지도와 특기교육,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문화체험, 캠프 등을 실시한다.

마. 가정위탁지원센터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위탁대상아동을 발굴하여 가정위탁을 실시하고 위탁가정상담 및 사후관리,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바. 아동학대문제연구소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재교구를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어린이 지킴이(지역사회아동권리보호운동) 교재를 개발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아동학대상담사업 연구집 발간과 아동학대관련 전문 홈페이지 운영 또한 연구소가 담당하는 사업이다.

2) 종합복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 2개 종합사회복지관 및 4개 어린이집, 1개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영세가정, 무의탁 노인 및 장애인 독거세대, 청소년 가장 세대 등 저소득 가정에 생활비, 장학금, 무료점심식사 등을 제공하며, 학습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간병인 교육 등을 통해 영세가정의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낮 시간 동안 방임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도시 영세지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3) 재가복지사업

가. 지역복지센터

6개 지역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을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로 이끌어내어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시각장애인 지원사업

삼성 SDI(주)의 지정사업으로 4개 지역(서울, 울산, 수원, 아산) 100세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및 재가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다. 구촌장기질환자 지원사업

음성폐결핵환자 100세대에게 생활안정지원, 의약품 · 진료서비스 · 장학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 긴급구호사업

태풍, 수해 등 재해 발생시 긴급구호를 위해 생필품 키트를 제작, 공급하고 재난복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V. 향후 조직 및 사업운영 방향

1. 해외원조개발 및 국제협력사업의 확장

해외사업 국가를 2004년도 10개국에서 2005년도 15개국으로 확장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배정

하여 국제기구로서 우리 단체의 위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별히 2004년도 후반부터 준비해 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의 굿네이버스 사업현장 파견을 활성화시켜 굿네이버스의 사업이 단순한 원조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제협력 및 민간외교활동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진 · 해일 피해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긴급구호사업에 그치지 않고 피해복구 및 자활 · 자립을 위해 식수개발, 소득증대, 직업훈련사업 등으로 계속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2. UN과의 교류협력 강화

UN총회 참석에만 그치지 않고,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수준을 절반 이상 낮추자는 모토 아래 전 세계가 공동 노력하고 있는 천년개발목표(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s) 홍보 및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UN과의 공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UN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해나갈 것이다.

3.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한 주도적 역할 담당

정부와 민간의 대북인도지원 및 교류가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북지원 민간기관이다. 향후 대북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다.

4. 국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총력화

국내에서는 아동의 인권 향상과 아동이 속한 가정 및 지역사회의 변화와 복지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전국 38개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중 19개의 아동학대예방센터와 9개의 피학대아동 쉼터를 통해 아동의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가정위탁지원사업과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권리보호캠페인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빈곤지역의 결식, 방임아동들을 위한 지역공부방도 전국적으로 확대 · 운영하여 아동보호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다.

〈협력정책 2005-2-12〉

국제협력 동향

발 행	2005년 8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정책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신라애드/(02)3444-0223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10-782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Tel. 740-5114 Fax. 744-1092 http://www.koica.go.kr